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록

- 일 시 : 2016. 12. 1.(목) 15: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신동원, 안창모, 여홍구, 오용섭, 채금석, 한태식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목 차	
<b>【심의사항】</b>	
1	「배화여자고등학교 과학관 및 본관」 문화재 등록
2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문화재 등록
3	「예수성교전서」 문화재 등록
4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문화재 등록
5	「구약전서」 문화재 등록
6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주변 현상변경
7	사적 제277호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현상변경
8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주변 현상변경
9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주변 현상변경
10	등록문화재 제271호 「구 포천성당」 현상변경
11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12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13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14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사적 제443호 「구 도립대구병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15	사적 제31호 「독립문」 외 30개소 사적 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b>【검토사항】</b>	
16	「의정부 망월사 칠성각」 문화재 등록 검토
17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문화재 등록 검토
18	「봉화 적곡교회」 문화재 등록구역 확대 검토
19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문화재 등록구역 확대 검토
20	「관미가」 문화재 등록 검토
21	「관송가」 문화재 등록 검토
22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문화재 등록 검토
<b>【보고사항】</b>	
23	사적 관련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근대 2016-06-01

## 1. 「배화여자고등학교 과학관 및 본관」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배화여자고등학교 과학관 및 본관」의 문화재 등록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검토('16.10.04.)를 거쳐 등록예고('16.10.19.~'16.11.17.)한 「배화여자고등학교 과학관 및 본관」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학교법인 배화학원
- (2) 대상문화재명 : 배화여자고등학교 과학관 및 본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1길 34
  - 소유자 : 학교법인 배화학원
  - 수량 : 2동
  - 실측면적 : 본관 795.4㎡, 과학관 325.6㎡
  - 건립시기 : 과학관-1915년, 본관-1926년
  - 구조 : 연와조, 목조
- (3)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6.10.19.~'16.11.17. (3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심의내용 : 「배화여자고등학교 과학관 및 본관」 등록문화재 등록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 9. 19.)>

- 문화재위원 ○○○
  - 본관은 동시대 조적조 본관과 특별교실 등과 비교할 때 일반적인 조적조 건축의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본관의 경우 밝은 실내공간 구성을 위해 창호를 넓게 구성하고 이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상인방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시대의 새로운 구법을 채택하였음.
  - 과학관 역시 동시대 붉은 벽돌 교육시설과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하면서, 2개의 계단이 진후면에 대칭적으로 위치하여 2방향 피난을 갖추고 있으며,

- 독특한 실내공간구성이 외관 디자인의 표출되어 특징적인 외관을 갖고 있다. 본관과 과학관 모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배화여고 본관은 근대기의 많은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근대건축의 특징적 건축양식과 기법을 구사하였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장래 문화재로서 지속적 보존 및 활용여건도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배화여고 과학관은 생활관과 함께 배화학당 초기인 1915년 완공되어 현재 배화학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배화학원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 교육사, 기독교사, 여성사 등에서도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높은 건물임
- 문화재전문위원 ○○○
  - 과학관과 본관은 우리나라의 근대시기 교육시설로서의 역사성과 소위, 신식건축의 특징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어 등록문화재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이를 통해 배화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한 서촌의 역사적 공간을 재조명하고 개발논리에 밀려 상업화가 되어가는 장소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밖에, 배화여자고등학교 경내에 위치한 다목적 강당 역시 근·현대기 한국건축의 과도기적 특징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별도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문화재 명칭 검토**

- 소유자 의견
  - (본 관) 배화여자고등학교 캠퍼기념관 (사유 : 본관의 정식 명칭)
  - (과학관) 배화 캐틀라이나관 (사유 : 배화학원 시각 명칭)
- 근대문화재과
  - (본 관)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캠퍼기념관
  - (과학관)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캐틀라이나관
  - ※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명칭 부여

**바. 의견사항**

- 원안가결
  - (문화재 등록 명칭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함)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현) 배화여고 본관과 과학관 (구) 캠퍼기념관과 과학관
- 2. 용 도 : (현) 고등학교 본관 및 교실 (원) 교육 및 행정시설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길 34
- 4. 소유자 : 학교법인 배화학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길 34)

**5. 건축물 개요**

- 본관
  - 건축구조 : 조적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 : 1926, 1977년 철근콘크리트조 개보수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795.4㎡
  - 층수(높이) : 3층
- 과학관
  - 건축구조 : 조적조
  - 준공일 : 1915, 1923년 3층 증축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325.6㎡
  - 층수(높이) : 3층

**6. 조사자 의견(2016.09.19.)**

**<문화재위원 ○○○>**

- 1) 개요
  - 본관
    - 배화여고는 감리교 여선교사인 조세핀 펄 캠펠(Josephin Peel Cambelle)이 1898년 내자동에 설립한 학교로, 1926년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조사대상 건물은 배화여고의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78년 고 육영수여사의 모교인 점이 감안되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대대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 과학관
    - 1916년에 건축된 과학관은 배화여고의 이전과 함께 건축된 건물로 배화여고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근대기학교교육시설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본관
    - 미션스쿨의 일반적인 특징인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축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벽돌로 지어진 건물과 달리 창호가 매우 넓다. 이는 교실의 채광을 위한 배려로 보인다. 넓은 개구부를 가진 창호로 인해 창호의 하인방은 화강석이 사용되었으나, 상인방은 시멘트블랫기로 마감된 철근콘크리트조로 추정된다.
    - 본관의 미식쌓기 방식은 3개의 길이쌓기후 1개의 마구리쌓기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희소한 쌓기 방식이다.

- 중양에 현관이 위치해 있으나, 계단은 복도 양단에 위치해 있다.
- 1978년의 개보수 공사에서 목재 마루바닥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붕층을 철골조로 변경하는 공사가 이뤄졌다. 노후된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보수공사였으나 원 건축의 의장적 특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층과 3층 바닥에는 신축 당시의 바닥 복구조가 살아있다.
- 과학관
  -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축이다. 전면과 후면에 출입구와 계단이 배치되고 양쪽으로 교실이 위치한 독특한 공간구성을 갖고 있다. 중양 현관과 후문이 위치한 중앙부가 돌출되었는데, 이는 계단실로 인한 것이다.
  - 3층은 벽체의 두께가 줄어들어 0.5B정도 들어서 쌓아졌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본관
    - 외관은 원 모습을 매우 잘 보존되어 있지만, 내부는 구조보강과정에서 지붕과 바닥 등 일부 구조에 변형이 이루어졌다.
  - 과학관
    - 1916년 신축후 1922년에 3층이 증축되었다. 구조적인 문제로 철골조로 일부 보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원 모습이 구조와 함께 잘 보존되어 있다.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도심안 서편의 안정적인 주거지에 임치해 있고,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보존환경은 물론 학교 측의 보존의지가 강해, 근대유산의 보존에는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학교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을시 기존의 양호한 문화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으므로, 도심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당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도 배화여고와 배화여자대학 전체에 대한 보존과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두 건물의 물리적 상태가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활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는 근대문화유산 보존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며, 충분히 실현가능한 물리적 상태라고 판단됨.
  - 다. 기타사항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본관은 동시대 조적조 본관과 특별교실 등과 비교할 때 일반적인 조적조 건축의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본관의 경우 밝은 실내공간 구성을 위해 창호를 넓게 구성하고 이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상인방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시대의 새로운 구법을 채택하였다.
  - 과학관 역시 동시대 붉은 벽돌 교육시설과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하면서, 2개의 계단이 전후면에 대칭적으로 위치하여 2방향 피난을 갖추고 있으며, 독특한 실내공간구성이 외관 디자인의 표출되어 특징적인 외관을 갖고 있다.
  - 과학관의 2방향 피난계단은 실험 실습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한 계획을 판단된다.
-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관과 과학관 모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본관: 캠프기념관  
 과학관: 배화여고 과학관

<문화재전문위원 ○○○>

- 배화학당은 본래 종로구 내자동 지역에서 1898년 10월 기독교 전파와 여성교육을 목적으로 미국 남감리회(南監理會) 여선교부의 캠프(Josephine P. Campbell) 선교사에 의해 케를라이나 학당(1910년 배화학당으로 개명)으로 최초 설립.
- 1916년 현재 위치한 인왕산 자락의 경사지로 이전을 위해 1915년 교사와 생활관을 완공하였으며, 교사는 현재 과학관으로 활용중이고 선교사주택은 생활관, 동창회관으로 활용하다 2004년 배화여고 생활관(등록문화재 제93호)으로 등록.
- 배화학당은 교육을 위한 시설 및 면적이 부족해지자 1926년 캠프기념관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교사를 건축하였으며, 이 건물이 현재까지 배화여고 본관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배화학원 교내에는 오래된 역사적 건물로서 배화여고 과학관, 생활관 외에 1926년 건축된 배화여고 본관이 현존하고 있으며, 급회 과학관과 본관을 등록문화재로 신청.
- 현재 배화학원은 배화여자대학교, 배화여고, 배화여중, 배화유치원의 4개 교육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건물들이 경사지형 대지에서 복합적으로 배치되며 고밀도로 대지를 이용.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본관>
    - 배화여고 본관은 1926년 교사로 최초 건축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교사로 활용중이며, 배화여고 생활관, 과학관과 함께 배화학당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건물.
    - 본래 건축원형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적벽돌 조적조, 목재마루 바닥, 목조트러스 경사지붕 형식이며, 평면은 전체적으로 H자 형태로 중앙 현관부를 중심으로 대칭형으로 구성.
    - 외관은 중앙 현관부를 중심으로 대칭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적조 건물이지만 창문 상부에 단면이 큰 장스팬(長span)의 철근콘크리트 상인방을 설치함으로써 하부에 수평방향의 긴 매우 넓은 면적의 창문을 형성.
    - 목조트러스와 경사지붕에 의해 지붕층 형식으로 구성된 4층은 넓은 홀 형식의 공간을 형성하고 본래 강당 및 예배실로 활용하였으며, 전후면 지붕 경사면에 각각 대형 돔머(dommer) 창문을 3개씩 설치.
    - 외벽은 지면에 접한 1층 하부는 석조로 구축하였으며, 1층 창문 위, 아래의 수평 돌림띠(cornice)는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장식한 반면에 2층 창문 위쪽의 코니스는 벽돌 내쌓기 기법에 의해 장식.
    - 옥영수 여사 모교로서 박정희 대통령 후원에 의해 1977년 개보수 공사가 대규모로 시행되고 그동안 여러 번의 부분적 개보수 공사가 시행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는 양호.
  - <과학관>
    - 배화여고 과학관은 본래 1915년 배화학당 교사로 최초 건축되었으며, 규모는 1915년 지하 피트(pit)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된 후 1923년 지상 3층과 4층(지붕층 형식)을 증축.

- 전체적 건축형식은 동시기에 건축된 생활관과 유사하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적벽돌 조적 벽체, 목재마루 바닥, 팔작지붕 형식으로 구성.(지붕재료는 현재 아스팔트 성급이나 1929년 앨범사진을 통해 당시 전통기와였음을 추정할 수 있음.)
- 평면은 전체적으로 중(中)자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에서 전후로 돌출되며 대칭형으로 배치된 계단 홀을 중심으로 좌우에 교실들을 배치하며 대칭형으로 단순하게 구성.
- 외부 4방향 입면도 전후, 좌우를 각각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전면은 돌출된 계단 홀을 중심으로 양쪽 대칭형으로 구성하고 후면도 전면과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좌측면은 골뚝을 중심으로 양쪽을 대칭형으로 구성하고 우측면도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
- 외벽에서는 전체적으로 수평성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었으며, 창호에서는 화강석 상인방과 하인방에 의해, 외벽에서는 적벽돌과 다른 회갈색 벽돌을 이용하고 내쌓기 기법으로 구사된 수평돌림띠(cornice)에 의해, 지붕에서는 독특하게 장식된 처마선에 의해 수평성을 시각적으로 강조.
- 지붕은 현재 마감재가 변경되었지만 본래의 팔작지붕 형태와 처마 장식기법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마 하부는 생활관과 마찬가지로 까치발(bracket) 형식의 부재를 이용하여 장식.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본관>

- 1926년 최초 건축된 이후 현재까지 교사로 활용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어 왔으므로 특별히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는 양호.
- 옥영수 이사 모교로 박경희 대통령 후원을 받아 현대건설에 의해 시공된 1977년 대규모 개보수 공사 당시 도면을 학교측에서 보관하고 있어 도면을 통해 당시 변경전, 변경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1977년 공사도면을 통해 당시 4층을 목조트러스에서 철골구조로, 각층 바닥을 목조마루에서 철근콘크리트로, 지붕마감을 천연슬레이트(일부 도면에서는 합성슬레이트 및 석면 슬레이트 기와로도 표기)에서 석면 슬레이트 기와로 각각 변경하고 H법으로 구조체로 일부 보강하였던 것을 확인.

<과학관>

- 1915년 건축된 이후 1923년 3, 4층이 증축되었고 본래의 교사 용도에서 현재 과학관 용도로 변경, 활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는 양호.
- 1층 바닥 및 지하 구조, 지붕 마감재, 창호 등이 변형되고 일부는 개보수되었지만 적벽돌 조적 벽체, 내부 목조 마루바닥 및 계단 등 기본적 구조체는 원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 현재 과학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내부 일부 실습실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3층, 4층 등 사용도가 낮은 일부 공간과 시설은 노후화되어 점차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 건물, 우측면에는 배화유치원 부속동이 1층 규모로 연결, 증축되어 있는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배화학원은 현재 교육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배화여고 과학관, 본관 등 시설이 낙후된 역사적 건물도 적극 활용해야만 하는 상황.

- 졸업생 등 동문들이 과학관, 본관, 생활관 등 역사적 건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보존을 적극적으로 후원.
- 소유주인 배화학원에서 본관과 과학관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문들도 보존에 적극적이므로 등록시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과학관이 활용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주변환경이 열악해졌으며, 후면 석축과 사이공간, 주변 배수로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원형 회복을 위해 건물 우측면의 유치원 부속동은 철거가 필요한 상태.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본관>

- 그동안 배화여고 본관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유지, 관리하여 왔으므로 등록 후 지속적으로 본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건축원형을 크게 훼손하거나 변형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문화재 보존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과학관>

- 배화여중과 배화여고가 공동 사용하는 과학관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건축원형을 크게 훼손하거나 변형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본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활용하였고 또한 현재 보존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상태이므로, 등록 후 문화재로서 기존 용도를 지속할 활용계획은 충분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학관은 그동안 건축원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며 과학관으로 활용되어 왔으므로 등록 후 문화재로서 기존 용도를 지속할 활용계획은 충분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적벽돌 조적조 교사의 지정문화재 사례로는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사적 제282호, 1921년 건축),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사적 제283호, 1923년 건축), 구 대구 의학전문학교 본관(사적 제422호, 1933년 건축), 배화학당역사박물관(서울시 기념물 제16호, 1916년 건축), 구 대구상업고등학교 본관(대구 유형문화재 제48호, 1923년 건축) 등이 있음.
- 적벽돌 조적조 교사의 등록문화재 사례로는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승기념관(등록문화재 제3호, 1915년 건축), 청주 대성고등학교 본관(등록문화재 제6호, 1936년 건축),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 생활관(등록문화재 제93호, 1915년 건축), 부산 구 경남상업고등학교 본관(등록문화재 제328호, 1927년 건축), 서울 경기상업고등학교 본관(등록문화재 제584호, 1926년 건축) 등이 있음.
- 배화여고 본관 및 과학관은 적벽돌 조적조 교사의 등록문화재 기존 사례들을 능가하는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지녔고 또한 양호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본관>

- 1926년 최초 완공된 이후 현재까지 본래 용도 그대로 사용되는 건물로, 배화학

- 원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 교육사, 기독교사, 여성사 등에서도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높은 건물임.
- 본래 건축원형의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적벽돌 조적조, 목재마루 바닥, 목조트러스 경사지붕 형식이며 외관에서는 조적조로서는 매우 넓은 민적의 대형 창문, 지붕 경사면의 대형 도머(dommer) 창문, 창문 상하 인방과 수평돌림띠(cornice)에 의한 수평성의 강조 등이 특징적 기법.
- 육영수 여사 모교로 박정희 대통령 후원에 의한 1977년 대규모 개보수 공사, 그동안 여러 번의 부분적 개보수 등이 시행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며, 1977년 개보수 당시 공사도면을 통해 건축원형의 추정이 가능.

<과학관>

- 배화여고 과학관은 생활관과 함께 배화학당 초기인 1915년 완공되어 현재 배화학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배화학원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 교육사, 기독교사, 여성사 등에서도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높은 건물임.
  - 적벽돌 조적 벽체, 목재마루 내부바닥, 팔각지붕 형식의 기본적인 건축형식과 지붕 처마 장식, 벽돌쌓기, 외벽 수평돌림띠(cornice) 장식 등 특징적 건축기법은, 동시에 건축되었고 이미 등록된 배화여고 생활관(등록문화재 제93호)과 유사.
  - 1915년 최초 건축된 이후 1923년 3, 4층이 증축되었고 이후 1층 바닥 및 지하 구조, 지붕 마감재, 창호 등 일부는 개보수되었지만, 적벽돌 조적 벽체, 내부 목조 마루바닥 및 계단 등 기본적 구조재와 건축원형의 전반적 보존상태는 양호.
- 배화여고 본관 및 과학관은 근대기의 많은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근대건축의 특징적 건축양식과 기법을 구사하였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장래 문화재로서 지속적 보존 및 활용여건도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을 현재 명칭인 배화여고 과학관으로 할 것인지 본래 명칭으로 추정되는 배화학당 교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현재의 배화학원 터는 근대교육의 산실이고 급변에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본관과 과학관, 생활관(등록문화재 제93호) 등 3동의 역사적 근대건축물이 현존하고 있고 이들은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사적 등의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에도 대한 검토도 필요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현재 배화여자고등학교 경내에는 ‘생활관(현재 동창회관으로 사용)’과 ‘과학관’,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대시기에 지어진 3동의 건축물이 남아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1915년 배화여자고등학교가 오늘날의 위치로 이전(移轉)하게 되면서 새롭게 지어진 교사(校舍)이다. 최초 이전할 당시 학교 경내에는 2층의 신식 건축물로 지어진 교실과 선교사 숙소, 한옥으로 지어진 학생 기숙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과학관과 생활관은 각각 교실과 선교사 숙소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며, 기숙사 건물은 소실되어 전해지고 있지 않고 현재 그 자리에 다목적 강당(1977년 건립)이 자리 잡고 있다. 이후, 학교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학생 수의 증가로 부족한 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교실로 사용되었던 현재의 과학관을 2층에서 4층 규모로 증축하였으며(1922년) 또한, 1926년에는 배화여자고등학교의 설립자인 켈

벨 부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신식 건물의 ‘켈벨기념관’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이 곳이 현재 배화여자고등학교의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다. 상술한 3동의 건축물 중 생활관 건물은 역사·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등록문화재 제93호 등록되어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나머지 건물 역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유자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뒤 늦게 등록신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과학관과 본관은 모두 근대시기 지어진 조적조 건물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등록문화재인 생활관과 비교할 때 세부적인 장식을 배제하면 서로 유사한 건축양식을 보이고 있다. 먼저, 과학관은 1915년 건립될 당시 2층이었으나 1922년에 3층과 지붕층을 증축하여 현재는 모두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건물 몸체는 조적조(붉은 벽돌)이며 지붕구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트러스의 목조 지붕틀위에 개관을 깔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지붕면은 형글로 마감하였으나 남아 있는 과거의 사진자료 등을 근거로 할 때 본래는 천연슬레이트로 마감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의 정면과 배면 중앙으로는 출입과 상·하층 연결을 위한 3층 높이의 계단실을 전면으로 돌출시켜 배치하고 그 상부에는 모퉁지붕 형태의 캐노피를 설치하였는데 이때 돌출된 부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평면이 십(十)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돌출된 계단실을 중심으로 우측 외벽면의 지하에는 크지 않은 규모의 보일러실을 설치하였는데 보일러실 내부에는 예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보일러가 남아 있다. 굴뚝은 건물의 양 측면에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으나 연도는 훼손되어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보일러실 내부에서는 건물의 기초부분을 부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별도의 기초시설 없이 바위 위에 그대로 건물을 시공한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배화여고가 산 중턱에 그 터를 자리 잡은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건물 입면의 경우 창호 위, 아래에는 각각 수평방향의 화강석 창대석을 두어 안정감을 더하였고 있으며 1층과 2층의 경계부에는 흠벽돌을 쌓아 경계를 표현하였고 2층과 3층의 경계부와 지붕 박공면에는 돌출된 띠를 연속적으로 만들고 그 하단에 이빨모양(dentil)의 장식을 설치하였다. 1·2층과 3층·지붕층의 경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도 3층과 지붕층이 후에 증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붕에 설치된 서까래와 처마돌림판을 흰색으로 마감함으로써 입면상 붉은벽돌, 흠벽돌과의 색채적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 본관은 1926년 켈벨기념관으로 건립된 이후 한국전쟁 기간 중에 훼손된 것을 일시적으로 복구한 뒤 1977년에 대대적인 중수공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중수과정에서 건물의 외형은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내부의 경우에는 구조의 보강공사 등으로 인해 다소의 변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중수공사 당시의 건축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본래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즉, 전체적인 규모는 지붕층을 포함하여 모두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체는 과학관 건물과 동일한 조적조(붉은 벽돌)이나 지붕은 중수공사 과정에서 보강을 위해 목조트러스에서 철골조(H형강)로 변경하였다. 또한, 현재 지붕 마감재가 과학관과 동일한 형글로 되어 있으나 본래는 천연슬레이트로 마감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실내 바닥(슬라브) 역시 중수공사 과정에서 목조바닥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아스타일로 마감하였는데 1층

천정 슬라브 아래에는 목조바다이 설치되었던 흔적(장선)을 볼 수 있다. 현재 건물의 외관상 정면 1층 부분의 층고가 낮아 반지하층으로 보이는데 이는 교내 도로의 개설 및 경비 등으로 인해 건물 주변의 지형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입면의 경우 과학관 건물에서 볼 수 있듯이 창호 위, 아래에는 각각 수평방향의 화강석 창대석을 두어 안정감을 주었으며 1층과 2층의 경계부에는 화강석을 2층과 3층의 경계부에는 돌출된 띠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각 층의 경계를 표현하고 있다. 본관 역시 과학관 건물에서와 같이 지붕의 처마돌림판을 흰색으로 마감하여 전체적으로 입면상 붉은벽돌, 흑벽돌과의 색채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과학관과 본관 두 건물 모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보수과정을 거쳐지만, 외부는 두 건물 모두 전반적으로 건립 당시 원형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지붕재료(슬레이트→철근) 및 창문틀(목재→금속) 등에서 일부 변형을 보이고 있다. 내부의 경우 본관은 1977년 보강공사를 통해 지붕구조체(목조→철골조) 및 바닥(목재→철근콘크리트 타설 후 아스타일 마감), 계단(목재→테라조 타일 마감) 등 일부 마감재의 변형이 있었고 또 최근 들어 냉난방 개선공사 등을 진행하였지만 당시의 건축기법이 잘 남아있어 원형의 모습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과학관은 건립 당시의 구조체와 마감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두 건물 모두 구조 안전진단 결과 양호한 상태(B등급)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원형의 유지 및 보존상태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기 등록된 생활관(등록문화재 제93호)과 함께 초기 배화학당의 역사적 흔적을 회복하려는 학교 관계자의 노력들로 보아 과학관과 본관을 문화재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향후 우리나라 근대기 교육의 역사적 현장으로 활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과학관과 본관은 모두 근대시기 지어진 조적조 건물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같은 경내에 있는 생활관(등록문화재 제93호) 건물과 서울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등록문화재 제3호)', '배재학당 동관(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6호)' 등과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또한 매우 유사한 건축적 양식 등을 보이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과학관과 본관은 우리나라의 근대시기 교육시설로서의 역사성과 소위, 신식건축의 특징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어 등록문화재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를 통해 배화학당고등학교가 위치한 서촌의 역사적 공간을 재조명하고 개발논리에 밀려 상업화가 되어가는 장소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배화학당고등학교 경내에 위치한 다목적 강당 역시 근·현대기 한국건축의 과도기적 특징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별도로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7)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서울 배화학당고등학교 과학관 및 본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근대 2016-06-02

## 2.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6.10.4.)를 거쳐 등록예고('16.10.20.~'16.11.18.)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판종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1권	세로 235 × 가로 145(cm)	1882년	신원활자본	종이 (중국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3) 추진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5. 3~10월)
  - 개신교 유물 78건 목록화, 등록 기준(안) 마련 등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등록 조사 대상 선정('16. 2. 2.)
  - 목록화 78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0건 선정
-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16. 4~6월)
  - 예수성교성서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4권(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 예수성교성서요안내복음, 예수성교성서제자행적, 예수성교성서마태복음),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2권(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 예수성교성서요안내복음)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문화재 등록 검토 회의('16.9.21.)
  - 예수성교성서 : 로스 번역의 성경들은 날권들이 존재하므로 보존상태 등이 양호하고 최초의 한글 성경인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누가복음」을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16.10.4) / 원안가결

-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누가복음」을 등록 검토 대상으로 결정

(5)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6. 10. 20. ~ '16. 11. 18.(30일간)

○ 예고결과 : 이의 제기

1)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이의 제기('16.11.9)

- 내용 : 등록문화재 명칭 정정 요청(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 사유 : 고본 성경의 가치와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을 고려해 책명과 같은 고어로 명칭 표기가 적함

(6) 심의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4.28./6.23.)>**

○ ○ ○ ○ 위원

-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1880년대 후반에 설립된 교회들은 이 성경들을 전한 권서(勸書)들이 기초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로스의 주도로 낱권 성경은 10여종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시기인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되었다. 이 성서는 최초의 한글성경이라는 점과 이후 성경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이후에 간행된 다른 낱권 성경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최초로 간행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1887년에는 이러한 낱권 성경들을 함께 엮은 『예수성교전서』가 간행된다. 그러므로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한 책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소장기호 OB505)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 ○ 연구위원

- 대한성서공회 소장본은 한글로 번역 인쇄된 최초의 성서 초판본들이고 그 상태도 양호하므로 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가 있다.

○ ○ ○ ○ 교수

- 『예수교성교요안내복음』, 『예수교성교누가복음』, 『예수교성교마가복음』 포함)을 한 묶음으로 하여 “로스역 단편 복음서”로 등록하는 것을 제안한다. 각각의 책이 모두 최초의 번역서라는 점에서 모두 중요하나, 하나하나 등록하기는 수적으로 많으며, 현재 이 3권 모두 '대한성서공회'에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문화재 등록 명칭 :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붙임 :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조사보고서 1부.



#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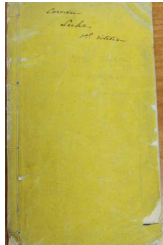
1. 명 칭 :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3. 소유자 : 계단법인 대한성서공회
4. 조사자 의견

## <○○○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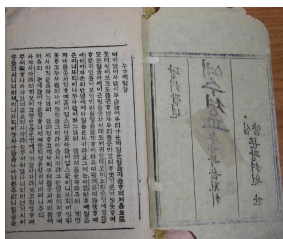
- 1) 현상
  - 앞표지 상하에 약간의 손상이 있으나 나머지는 온전함.
- 2) 내용 및 특징
  -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의 선교사인 존 로스(John Ross, 1842~1915)와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1837~1905) 그리고 한국인 이용찬(李應贊, ?~1883), 백홍준(白鴻俊, 1848~1893), 김진기(金鎭基), 서상륜(徐相崙, 1848~1926) 등이 번역에 참여하여 1882년 3월에 심양(沈陽)의 문광서원에서 발행한 최초의 한글신약성서이다.
  - 번역 책임자인 존 로스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만주 선교 사업에 대해서는 심양 동문밖에 있는 로스목사의 기념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처음 선교를 위해 중국 산둥으로 갔으나 이미 미국 선교사들이 있었으므로 우장(牛庄; Newchwang)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중국보다 한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한국어를 배워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고자 하였다. 마침 의주에서 온 한국인 청년 이용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 네 사람을 만난다. 로스는 한글과 우리역사를 이용찬에게 배웠고, 이어 이들은 동지가 되어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김진기, 백홍준도 함께 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 번역방식은 한국인의 1차 번역, 그리스어 성경을 참고한 로스·이용찬의 2차 번역, 정서(淨書) 후 로스·이용찬의 3차 번역, 끝으로 그리스어 성경과 메이어(Meyer)의 주석 등을 대조하며 어휘를 통일하는 로스의 4차 번역을 거쳤다고 한다. 1878년에 안식년으로 로스목사가 본국으로 귀환하자 그의 동료이자 매제인 매킨타이어가 이 일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매킨타이어는 한국의 역사 문화 풍습에 대한 저술을 1880년에 런던에서 간행할 만큼 지한인(知韓人)이었다.
  - 로스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려고 한 이유는 종교적인 측면과 한글의 우수성 측면에 있었다. 곧 종교적으로는 한국이 쇄국정책에서 개방되면 한글 성경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글 성경의 보급은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 한글은 배우기 쉬운 표음문자인데다 정확한 시제(時制)와 동사의 연결미가 뛰어나므로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 번역한 성서를 인쇄하기 전에 로스는 복음서 2권을 인쇄해 보았다. 이후 그는 소환자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는데 그것은 소환자로 인쇄할 경우 인쇄비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용찬이 그린 원도(原圖·활자 설계도)와 서상륜의 종자(種子) 조각을 일본주재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 릴리(Lilly) 목사에게 보내었고, 이 활자를 어미자로 삼아 1880년 일본 도쿄의 츠키치 활판제 조소에서 신식 한글 3호 활자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35,563개의 한글 활자가 1881년 7월에 일본 요코하마(橫濱)로부터 입수되었다. 또 활판기(인쇄기)도 한번

에 8장을 찍을 수 있는 컬럼비아 테마이(Columbian demy)를 갖추었다. 이 비용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스코틀랜드 교회가 한국의 선교 사업을 지원할 수 있었던 계기는 스코틀랜드가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의 복음화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 장비가 갖추어지자 1882년에는 중국 심양에 최초 개신교 활판소인 문광서원을 설립하였다. 드디어 인쇄경험이 있는 중국인 신자의 도움과 서간도 한인촌 출신의 석자공 김청송(金靑松)의 지원을 받아 1882년 3월 24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성서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누가복음)가 발행되었다. 당시 발행부수는 3,000부였다고 한다. 누가복음 본문은 51장이고, 본문이 끝난 뒤에는 1장 분량의 「강명편(講名編)」을 두어 생소한 단어들을 간단히 설명해 놓았다. 누런 색 표지의 가운데에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라는 서명이 있고, 오른쪽에는 “광세팔년”(1882), 왼쪽에는 “심양 문광서원 간”과 같이 1882년에 심양에 소재한 문광서원에서 간행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1> 대한성서공회 소장(OB505)의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의 앞뒤 표지



<사진 2> 표지 뒷면과 본문 시작면

- 처음 번역문은 “아바니”, “어머니”와 같은 서북지역의 방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간본에서는 서울 표준어로 개정되었다. 이 『누가복음』은 절(節) 표시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하느님”과 “예수님” 앞에는 띄어쓰기를 한 특징이 있다. 이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의 가치에 대해 이만열 교수(전 국사편찬위원

원장)은 “한국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작은 크기의 성경이었으나 한국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된 것보다 훨씬 오래 갈 기념비로 우뚝 솟아났다.”고 하였다. 또 번역의 공헌에 대해 민영진 목사는 “19세기 서북지역의 방언이었으나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서로써 후속 되는 번역의 문장 구조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후 한글 성서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 같은 해 5월에는 『예수성교 요안너복음전서』(요한복음), 1883년에는 개정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신역 『예수성교성서 말료복음』(마가복음)과 『예수성교성서 맞더복음』(마태복음), 1884년에는 누가복음과 데자헝적(제자행적), 사도행전 합본, 1885년에는 로마인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등이 발행되었다. 이들을 로스역본(Ross Version)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10여종이 넘는다. “한국어 성경 서지목록 I (1882-1945)”과 김봉희교수의 조사를 참고하여, 1885년 이전의 로스역본 성경을 발행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885년 이전의 로스 역본 낱권 성경 간행

구분	서명	발행시기	비고
1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51장)	1882.3.24	최초의 한글성경(낱권)
2	예수성교 요안너복음전서(39장)	1882.5.12	
3	예수성교 요안너복음(29장)	1883.1-2	
4	예수성교 누가복음·데자헝적(57+54장)	1883.10	
5	예수성교성서 맞더복음(62장)	1884	
6	예수성교성서 말료복음(40장)	1884	
7	예수성교성서 요안너복음· 어비 초서신(46+9장)	1885	
※	예수성교전서	1887	낱권 성경 종합본

-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1880년대 후반에 설립된 교회들은 이 성경들을 전한 권서(勸書)들이 기초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로스의 주도로 낱권 성경은 10여종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시기인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되었다. 이 성서는 최초의 한글성경이라는 점과 이후 성경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이후에 간행된 다른 낱권 성경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 최초로 간행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1887년에는 이러한 낱권 성경들을 함께 엮은 『예수성교전서』가 간행된다. 그러므로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한 책(소장기호 OB505)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4) 종합의견
  - 로스역본 성서중에서 가장 먼저 발행(1882.3.24)된 한글성서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소장기호 OB505)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연구위원>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 1) 현상
  - 겉표지는 4권 모두 보존처리 시 만들어 넣은 것이며, 종이가 탈수되어 떨어져 나간 부분들은 보수한 상태임.
- 2) 내용 및 특징
  - 1. 『예수성교성서 로가복음』. 19.0x11.6cm, 51장. 이것은 신약성서 누가복음을 번역한 것으로 누가복음은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로스, 매킨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등이 번역에 참여하여 1878년 처음 번역된 이래 몇 번 수정을 거쳐 1882년 3월 24일 만주 심양(봉천) 문광서원에서 활자로 초판 3000부를 간행하였다.
  - 그러나 이 승실대 소장본은 초판본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표지가 온전하게 남아 있어 초판본임이 확실한 대한성서공회 소장본과 명칭(『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크기(23.4x14.1cm)와 신의 명칭(하느님)이 다르기 때문이다.
  - 이 성서는 신의 명칭을 ‘하나님’이라 표기했고, 지금의 성경과 달리 절 표지가 없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한 대두법(擡頭法)을 사용하고 있다. 평안도 사투리와 구어체로 번역하여 국어연구에도 가치가 있다.
  - 2. 『예수성교성서 요안내복음』. 19.3x11.7cm, 54장. 이것은 신약성서 요한복음을 번역한 것으로 요한복음은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로스, 매킨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등이 번역에 참여하여 1878년 처음 번역된 이래 몇 번 수정을 거쳐 1882년 5월 12일 만주 심양(봉천) 문광서원에서 활자로 초판 3000부를 간행하였다.
  - 그러나 이것도 초판본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표지가 온전하게 남아 있어 초판본임이 확실한 대한성서공회 소장본과 명칭(『예수성교 요안내복음전서』), 크기(23.3x14.3cm)와 절 표지(절 표지가 초판본인 대한성서공회본에는 없으나 승실대박물관본에는 있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른바 ‘로스역’ 요한복음은 초판본을 개정하여 이듬해인 1883년 10월 초에도 5,000부를 간행하였는데, 여기에서 초판본에 빠졌던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 사건이 삽입되고, 신의 명칭도 ‘하나님’으로 표기하였으며, ‘이름(名)’을 ‘일음’으로 표기하다가 ‘일흠’으로 고치는 등 몇 가지 표기법을 고쳤다.
  - 3. 『예수성교성서 데자헝적』. 18.7x11.0cm, 53장. 이것은 신약 사도행전을 번역한 것으로 사도행전은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로스, 매킨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등이 번역에 참여하여 1878년 처음 번역된 이래 몇 번 수정을 거쳐 1882년 만주 심양(봉천) 문광서원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어 1883년 만주 심양(봉천)에서 누가복음 개정판과 합본으로 초판 3000부를 간행하였다. 이것은 표지를 비롯한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기는 하지만, 크기와 체계를 보아 초판본 중 한 권인 것 같다. 『예수성교 로가복음』과 동일하게 대두법을 적용해서 ‘예수’와 ‘하나님’ 앞에서 한 칸을 띄워두고, 신의 명칭을 ‘하나님’이라 표기하였다. 장·절 표지가 없으며 지명이나 인명을 원문 그대로 표기하려고 노력했다.

- 4. 『예수성교성서 맛대복음』, 20.5x12.5cm, 47장. 1884년 만주 심양(봉천) 문광서원에서 초간된 『예수성교성서 맛대·복음』을 수정하여 1892년에 간행한 것이다. 이것은 간행 년도가 표기되어 있는 표지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다. 여기에는 대두법을 쓰지 않고, 아직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있으나 절 표기가 되어 있다.
- 참고사항 : 이른바 ‘로스역’ 성서의 출판은 로스의 요청으로 스코틀랜드성서공회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로스는 이 지원금으로 1881년 인쇄기를 상해에서 구입하여 봉천에 설치하고, 한국인 번역자들이 만든 목활자(木活字)를 일본주재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총무 릴리(Lilly) 목사에게 보내 40,000자의 연활자(鉛活字)를 만들어 같은 해 우장을 거쳐 봉천에 가져와 인쇄에 사용하였다.
- 3) 문헌자료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 대한성서공회, 1993.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대한성서공회, 1994.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대한성서공회, 2004.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2권, 대한성서공회, 2006.
- 4) 기타
  - 김양선(金良善) 목사가 해방 전 북한 지역에서 수집하여 해방 직후 아내 한필려 여사가 월남할 때 옮겨와 한국전쟁 때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에 옮겨져 보관되다가 1960년에 되찾아 1967년 숭실대학교 사학과에 교수 있을 때 기증함.
-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같은 종류의 성서가 대한성서공회에 소장되어 있어 이들과 비교하여 출판년도가 앞서고, 보존 상태가 좋은 것을 등록해야 할 것이다.
- 6) 종합의견
  - 초판본에 해당하는 것은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으나 초판본이라도 같은 책이 대한성서공회에도 소장되어 있으므로 그것과 비교하여 보존 상태가 더 나은 것을 등록해야 할 것이다.

####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 1) 현상
  - 누가복음의 경우 앞 표지 상하와 요한복음의 경우 앞 표지 상하 좌우 떨어져 나간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 2) 내용 및 특징
  - 1.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23.3×14.1(cm), 52장, (OB505) 이것은 신약성서 누가복음을 번역한 것으로 누가복음은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로스, 매킨타이어, 이웅찬, 백홍준, 서상륜 등이 번역에 참여하여 1878년 처음 번역된 이래 몇 번 수정을 거쳐 1882년 3월 24일 만주 심양(봉천) 문광서원에서 활자로 초판 3000부를 간행하였다. 이것은 그 초판본 중의 하나이다.
  - 2. 『예수성교 요한노·복음전서』 23.3×14.3(cm), 39장, (OB307)이것은 신약성서 요한복음을 번역한 것으로 요한복음은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로스, 매킨타이어, 이웅찬, 백홍준, 서상륜 등이 번역에 참여하여 1878년 처음 번역된 이래 몇 번 수정을 거쳐 1882년 5월 12일 만주 심양(봉천) 문광서원에서 활자로 초판 3000부를 간행하였다. 이것은 그 초판본 중의 하나이다.
- 3) 문헌자료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 대한성서공회, 1993.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대한성서공회, 1994.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대한성서공회, 2004.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2권, 대한성서공회, 2006.
- 4) 기타
  - 이 자료는 미국성서공회에서 1980년대 초에 대한성서공회가 직접 인수한 것으로 거의 완벽한 향은향습 보존 시설을 갖추고 잘 보존하고 있다. 원자료의 표제는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노·복음전서』이지만, 등록할 때는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내복음전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자료는 한글로 번역 인쇄된 최초의 성서 초판본들이고 그 상태도 양호하므로 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가 있다.
- 6) 종합의견
  - 문화재 등록 가치 있음. 상태도 양호하고 향은향습 시설에서 잘 보존하고 있음.

#### <○○○ 교수>

##### [예수성교성서 누가복음]

- 1) 현상
  - 이 책은 현재 ‘숭실대학교’ 소장본과 ‘대한성서공회’ 소장본이 있다. 숭실본은 보존치리 된 상태로 겉표지는 처리시 새로 추가한 상태이고 속표지는 없으며, 내부는 부분적인 얼룩이 있지만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이에 비해 공회본은 원상태 그대로, 앞표지(하단 좌측)의 우측 상단과 하단이 부분적으로 훼손된 상태이나 표기 내용을 첩범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내부(하단 중앙)와 뒷 표지(하단 우측)는 양호한 편이다.
- 2) 내용 및 특징
  - 『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의 원제목은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번역 단편성서요 최초의 ‘누가복음’ 번역본이다. 조선조 말, 만주의 봉천과 우장에서 활동한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선교사 J. Ross와 J. MacIntyre는, 의주 출신으로 중국을 오가며 상업을 한 서상륜, 이웅찬, 백홍준을 만나 기독교를 소개하고 함께 한글 성경번역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웅찬, 백홍준은 1879년 한국 개신교 최초로 세례를 받았고 서상륜과 함께 Ross 목사가 주관한 총 9종의 한글성서, 즉 ‘로스역 성경’ 번역작업에 동참한 것이다. 이 책은 1878년 서상륜에 의해 처음 번역된 이래 몇 번의 수정을 거쳤다고 하며, 1882년 3월 만주의 봉천(심양) 문광서원에서 간행된 것으로 목활자로 3000부를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성서번역인 동시에 사역성서(私譯聖書) 중 가장 최초의 결실이다.
  - 이 단편 성서는 당시 신의 명칭이 ‘신’, ‘상제’, ‘천주’, 등 아직 그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느님’이라 표기하고, 전체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나 ‘하나님’과 ‘예수님’ 뒤에는 한 칸의 여백을 두었고, 고유명사에는 우측에 선을 그어 표시하고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장, 절 표시도 하지 않았다. 또한 번역 내용 면에서 보면 평안도 사투리와 구어체로 된 점도 있다.
  -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교인들에게 직접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성서중심의 신

양'라 할 만큼 성경이 중요하다. 또한 한글 성경의 탄생 그 자체도 세계교회사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가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는 외국 선교사의 입국 이전에 자발적으로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간행하여 보급한 것으로 자생적인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던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만 나타난 특징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문헌자료

- 한영제, 『한국기독교문서운동100년』 기독교문사, 1987.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기독교문사, 1990.
-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성광문화사, 1990.
-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한국기독교박물관소장 기독교자료해제』 2007.
-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편람』 2015.

### 4) 기타

- 이 책은 한국에서 가장 최초의 한글로 발간된 성서로, 외국 선교사의 입국 이전에 피선교국어로 된 성경을 피선교국 최초의 세례교인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간행한 결과인 만큼 한국 성경의 효시로, 한국 기독교의 자생적 발전에 기여한 의의가 지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실사한 두 권의 '누가복음'을 대조해보면, '숭실본'은 보편 주의 명칭이 '하나님'으로 표기되고, '하나님' 앞에서 띄어쓰기를 하며, 고유명사에 옆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초판본 이후에 이루어진다. 같은 해이나 두 번째 단편 성서로 출간된 『예수교성교요안내복음』에서부터 주의 명칭이 '하나님'으로 표기가 바뀌고, 띄어쓰기도 2장 24절부터 앞쪽으로 바뀐다 (한편 책 말미의 강명편에서는 다시 '하느님'으로 표기 함). 그리고 고유명사의 옆줄이 사라지는 것은 2년 후 출간된 『예수교성교마가복음』부터이다.
- 따라서 숭실본은 최초의 『예수교성서누가복음』과는 다른, 그 이후의 판본으로 판단된다. 그럼으로 표지를 갖추고 내부도 어느 정도 양호한 성서공회 소장본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 \* 아울러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책과 더불어 출간된 최초의 단편 복음서 3종 (『예수교성교요안내복음』과 『예수교성교마가복음』 포함)을 한 묶음으로 하여 "로스역 단편 복음서"로 등록하는 것을 제안한다. 각 각의 책이 모두 최초의 번역서라는 점에서 모두 중요하나, 하나하나 등록하기는 수적으로 많으며, 현재 이 3권 모두 '대한성서공회'에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마태복음'이 빠져있으나, '마태복음'의 양호한 초간본은 아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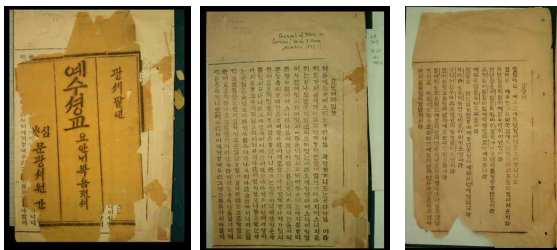
###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또한 '로스역 단편 복음서'로 '요한복음서'와 '마가복음서'를 포함하여 등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예수성교 요안내복음]

### 1) 현상

- 이 책은 현재 '숭실대학' 소장본과 '성서공회' 소장본이 있다. 숭실본은 겉표지는



보존 처리시 새로 추가한 상태이고, 속표지는 원대대로라고 하나 좌측 상단 책의 이름 부분이 훼손되고 "복음"이라는 글자만 보이는데, 이는 1884년 판 '말교복음'의 표기와 같은 유형이다. 이에 비해 공회본은 1882년 판으로 원상태 표지(하단 좌측)는 좌측 상단이 훼손되어 있으나 모든 글자가 남아있고 내부(하단 중앙)는 양호하나 '강명편'(하단 우측)엔 훼손이 있다.

### 2) 내용 및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요한복음"인 『예수성교요안내복음』의 원제목은 『예수성교요안나복음』으로, 1882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번역 단편성서로는 두 번째 출간된 최초의 '요한복음'이다.
- 조선조 말 만주의 봉천과 우장에서 활동한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선교사 J. Ross와 J. MacIntyre는 의주 출신으로 중국을 오가며 상업용 한 서상용, 이용찬, 백홍준을 만나 기독교를 소개하고 함께 한글 성경번역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용찬, 백홍준은 1879년 한국 개신교 최초로 세례를 받았고 서상용과 함께 Ross 목사가 주관한 총 9종의 한글성서, 즉 로스역 성경 번역작업에 동참한 것이다.
- 앞서 출간된 '누가복음'과 본 '요한복음'은 두 책이 같은 해에 출판되었으나 이 책이 두 번째로 출판된 것을 파악하게 이유는 본문 표기에 있다. 즉, 첫 '누가복음'에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명칭이 "하느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 또한 띄어쓰기의 위치도 바뀌는데, 처음에는 "하느님"으로 표기하며 뒤쪽 띄어쓰기로 시작하나 2장 24절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며 앞쪽 띄어쓰기로 본문 전체를 마친다. 그러나 부록 격 단어해설편인 '강명편'에서는 다시 "하느님"으로 표기된다.
- 한편 이 '강명편'의 내용을 보면, 당시 한국어에는 개념과 어휘가 없었던 '밤틸레'(세례), '사맛일'(안식일)을 헬라어 성서의 발음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중국어 성서보다 더 원어발음이 가깝게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표기들은 1895년 서울에서 성서번역위원회가 번역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나올 때까지 사용되었다.
-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교인들에게 직접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성서중심의 신앙'라 할 만큼 성경이 중요하다. 또한 한글 성경의 탄생 그 자체도 세계교회사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가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는 외국 선교사의 입국 이전에 자발적으로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간행하여 보급한 것으로 자생적인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던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만 나타난 특징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문헌자료
- 한영제, 『한국기독교문서운동100년』 기독교문사, 1987.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기독교문사, 1990.
  -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성광문화사, 1990.
  -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한국기독교박물관소장 기독교자료해제』 2007.
  -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편람』 2015.
- 4) 기타
- 이 책은 한국에서 최초의 한글로 발간된 ‘요한복음서’로, 외국 선교사의 입국 이전에 피선교국어로 된 성경을 피선교국 최초의 세례교인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간행된 것이다. 한국 기독교의 자생적 발전에 기여한 의의가 지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실사한 두 권의 ‘요한복음’을 대조해보면, ‘송실본’과 ‘공회본’은 표지 자체가 다르다. 송실본의 표지는 2년 후에 나온 마태복음(말교복음)과 동일한 유형이나 이름 부분이 회손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공회본은 앞에서 언급된 마가복음과 동일한 형태의 표지이다. 이 두 책은 페이지 표기와 번역 내용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송실본의 12쪽이 공회본의 9쪽과 유사하며, 5:25절의 번역에서 송실본에서는 “들은자나· 사나나라”이나 공회본에서는 “들은자나·나·만다시 사나나라”로 “만다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송실본에는 고유명사를 표시한 옆줄도 없다. 따라서 송실본과 공회본과 서로 다른 책으로, 송실본이 나중에 출판된 것으로 사료된다.
  - ‘공회본’은 최초의 ‘요한복음’ 단편성서로, 같은 책에서 “하느님”에서 “하나님”으로 주의 표기가 바뀌고 띄어쓰기도 바뀌는 과정이 담긴 것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회본’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아울러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책과 더불어 출간된 최초의 단편 복음서 3종(『예수교성교누가복음』과 『예수교성교마가복음』 포함)을 한 묶음으로 하여 “로스역 단편 복음서”로 등록하는 것을 제안한다. 각 각의 책이 모두 최초의 번역서라는 점에서 모두 중요하나, 하나하나 등록하기는 수적으로 많으며, 현재 이 3권 모두 ‘대한성서공회’에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마태복음’이 빠져있으나, ‘마태복음’의 양호한 초간본은 아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또한 ‘로스역 단편 복음서’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서’를 포함하여 등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예수성교성서 제자행적】

- 1) 현상
-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이 책은 보존처리시 결표지를 추가하였다. 속표지(하단 좌측)는 책 제목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조각들을 붙여 보존처리하였다. 내부(하단 우측) 역시 상당부분이 훼손되었으나 남은 부분을 잘 보존처리를 한 상태이다.



- 2) 내용 및 특징
- 『예수성교성서제자행적』의 원 제목은 『예수성교성서성서태자 히·ㅇ·적』으로 우리말로 3번째로 출간된 단편성서이며 처음으로 번역된 ‘사도행전’이다. 조선조 말의 주 출신으로 중국을 오가며 상업을 한 서상운, 이용찬, 백홍준이 만주의 봉천과 우장에서 활동한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선교사 J. Ross와 J. MacIntyre를 만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함께 한글 성경번역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용찬, 백홍준은 1879년 한국 개신교 최초로 세례를 받았고 서상문과 함께 Ross 목사가 주관한 총 9종의 한글성서, 즉 로스역 성경 번역작업에 동참하여 출간된 것이다.
  - 이 책이 앞서 출간된 두 권의 복음서(‘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의 차이는 주의 명칭을 “하느님”으로 표기하며, ‘하나님’ 앞에 띄어쓰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두 번째 출간된 ‘요한복음’과 같으면서도 외국어 고유명사에 옆줄을 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초창기 성서를 출판할 때, 같은 해에도 형식을 고쳐가고 그 다음 해에도 부분적으로 바꾸어간 과정을 잘 파악하게 한다(이러한 변화는 다음해에 출간하는 ‘마가복음’에서도 일어난 후 일단락을 짓는다). 또한 이 책으로부터 각 책의 명칭에 “성서”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예수성교성서태자히·ㅇ·적』이라고 부르게 된다.
  -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성경 중심의 교회라 할 만큼 성서가 중요하다. 한글 성경의 탄생은 세계교회사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예수의 직접적인 행적인 ‘복음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복음서 4권을 모두 발간한 후에 ‘사도행전’을 간행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보다 먼저 출간된 것도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 3) 문헌자료
- 한영제, 『한국기독교문서운동100년』 기독교문사, 1987.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기독교문사, 1990.
  -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성광문화사, 1990.
  -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한국기독교박물관소장 기독교자료해제』 2007.
  -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편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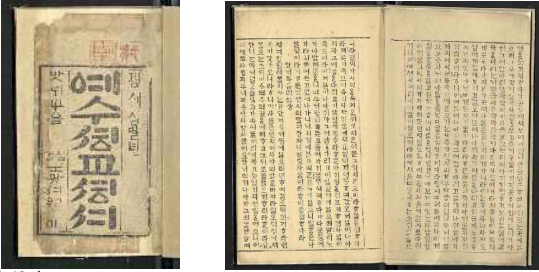
- 4) 기타
- 이 책은 성서를 최 우선시하는 개신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우리말

‘사도행전’이요 초기 성경 번역발간의 변화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책(송실대 소장본)은 너무 많이 훼손되어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따라서 좀 더 온전한 판본을 찾아내어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종합의견
-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너무 훼손이 심함

**[예수성교성서 마태복음]**

- 1) 현상
- 이 책은 현재 송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바, 겉표지는 보존처리시 추가했다. 속표지(하단 좌측)는 가장자리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이 있으나 양호하게 보존 처리 되었고 내부(하단 우측)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 2) 내용 및 특징
- 『예수성교성서마태복음』의 원 제목은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이다. 이 책은 188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된 '마태복음'을 수정하여 1892년에 재판한 것이다.
  - 조선조 말, 만주의 봉천과 우장에서 활동한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선교사 J. Ross와 J. MacIntyre는, 의주 출신으로 중국을 오가며 상업을 한 서상윤, 이용찬, 백홍준을 만나 기독교를 소개하고 함께 한글 성경번역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용찬, 백홍준은 1879년 한국 개신교 최초로 세례를 받았고 서상윤과 함께 Ross 목사가 주관한 총 9종의 한글성서, 즉 '로스역 성경' 번역작업에 동참한 것이다.
  - 이 책의 원전으로 1884년에 초간 된 『예수성교성서맛디-복음』은 '예수성교번역본' 발행의 마지막 단편 복음으로, 본문 뒤에 '강명편'이 붙어 추가되어 당시의 독자들에게 생소한 성경의 어휘들을 해설해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1892년 출판된 본서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 또한 1884년 본에서는 대두법이 한 번 사용되었으나 이 책에는 대두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의 명칭으로 '하나님'으로 표기되었으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 3) 문헌자료
- 한영제, 『한국기독교문서운동100년』 기독교문사, 1987.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기독교문사, 1990.

-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성광문화사, 1990.
- 이만열, 육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한국기독교박물관소장 기독교자료해제』 2007.
-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편람』 2015.

- 4) 기타
- 이 책은 1892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 출간된 '마태복음'의 9년 후 재판(수정판)이다. 현재 1984년에 발간된 '마태복음'이 송실대에 있는데 심하게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다른 곳에서 초판본이 발견되지 않으니 현재 송실대가 소장하고 있는 이 재판본(1892년 판)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자는 제안이다.
  - 그러나 이 책, '마태복음'이 우리나라 최초의 단편 성서가 아닌 이상, '마태복음'의 경우에도 초간본을 찾아 등록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의 재판본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 5) 종합의견
- 등록초간본이 아니므로, 등록하기엔 미흡함.

### 3. 「예수성교전서」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예수성교전서」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6.10.4.)를 거쳐 등록예고('16.10.20.~'16.11.18.)된 「예수성교전서」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 년대	판종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예수성교 전서	1권	세로 19.0 × 가로 13.0(cm)	1887년	신연활 자본	종이 (중국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서울 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 학교 학술정보원	

#### (3) 추진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5. 3~10월)
  - 개신교 유물 78건 목록화, 등록 기준(안) 마련 등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등록 조사 대상 선정('16. 2. 2.)
  - 목록화 78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0건 선정
-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16. 4~6월)
  - 예수성교전서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본,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문화재 등록 검토 회의('16.9.21.)
  - 보존상태 등이 양호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본을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
-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16.10.4) / 원안가결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본 등록 검토 대상으로 결정
- (5)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6. 10. 20. ~ '16. 11. 18.(3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6) 심의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4.28./6.20./6.23.)>

- ○ ○ ○ 위원
  -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1880년대 후반에 설립된 교회들은 이 성경들을 전한 권서(勸書)들이 기초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종합적인 「예수성교전서」의 간행은 이 성경의 완결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는 한국 개신교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번역되고 간행되었다는 점, 번역을 시작한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신약성경을 완역하였다는 점, 상인 출신인 한국인 청년들이 로스를 도와 번역을 주도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19세기 후기 서북지역의 방언을 포함한 한글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다.
  - 그러므로 조사 대상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한 책[청구기호: O(CH) 225 예수성 문=2]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 ○ 연구위원
  - 이 유물은 최초의 한글번역 신약전서로, 1900년 성서번역자회 번역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한글번역 신약전서가 발행되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중요한 판본으로 문화재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같은 판본이 숭실대박물관, 대한성서공회에도 소장하고 있으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의 판본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 ○ ○ ○ 교수
  - <예수성교전서>는 아주 귀중한 한국 근대(정신)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이 책과 함께 1906년에 발간된 <신약전서>도 문화재로 등록해야 완벽한 한 쌍(雙)을 이룰 것으로 본다.
- ○ ○ ○ 교수
  - 존 로스는 『예수성교전서』를 편찬하기에 앞서 한국의 역사와 한국어에 관련된 책을 집필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신약성서'를 출판하기 위해 당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한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연구를 통해 한글 성서를 번역 출판한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붙임 : 「예수성교전서」 조사보고서 1부.

# 「예수성교전서」 조사보고서

- 1. 명 칭 : 예수성교전서
-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3. 소유자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4. 조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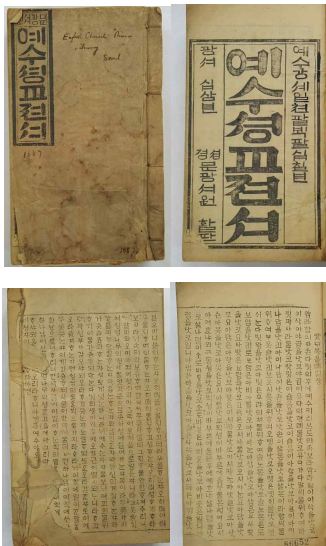
## <○○○ 위원>

- 1) 현상
  - 청구기호[O(CH) 225 예수성 문=2]의 『예수성교전서』는 뒤표지는 결락되었으나 앞표지와 표제지가 완전하며, 본문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온전함.
- 2) 내용 및 특징
  - 『예수성교전서(예수성교전서)』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와 존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그리고 한국인 이응찬(李應贊, ?~1883), 백홍준(白鴻俊, 1848~1893), 김진기(金鎭基), 서상륜(徐相崙, 1848~1926), 이성하(李成夏), 이익세(李益世) 등이 번역에 참여하여 1887년에 만주 성경(盛京, 현재의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발행한 최초의 한글신약전서이다.
  - 번역 책임자인 존 로스는 1941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만주 선교사업에 대해서는 심양 동문밖에 있는 로스목사의 기념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처음 선교를 위해 중국 산둥으로 갔으나 이미 미국 선교사들이 있었으므로 우장(牛庄; Newchwang)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중국보다 한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한국어를 배워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고자 하였다. 마침 의주에서 온 한국인 청년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 네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로스는 한글과 우리역사를 이응찬에게 배웠고, 이어 이들은 동지가 되어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 번역방식은 한국인의 1차 번역, 그리스어 성경을 참고한 로스·이응찬의 2차 번역, 정서(淨書) 후 로스·이응찬의 3차 번역, 끝으로 그리스어 성경과 메이어(Meyer)의 주석 등을 대조하며 어휘를 통일하는 로스의 4차 번역을 거쳤다고 한다. 1878년에 안식년으로 로스목사가 본국으로 귀환하자 그의 동료이자 매제인 매킨타이어가 이 일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매킨타이어는 한국의 역사 문화 풍습에 대한 저술을 1880년에 런던에서 간행한 만큼 지한인(知韓人)이었다.
  - 로스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려고 한 이유는 종교적인 측면과 한글의 우수성 측면에 있었다. 곧 종교적으로는 한국이 채국정책에서 개방되면 한글 성경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글 성경의 보급은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 한글은 배우기 쉬운 표음문자인데다 정확한 시제(時制)와 동사의 연결어미가 뛰어나므로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 번역한 성서를 인쇄하기 전에 로스는 복음서 2권을 인쇄해 보았다. 이후 그는 소활자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는데 그것은 소활자로 인쇄할 경우 인쇄비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서상륜과 백홍준이 만든 목활자를 일본주재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 릴리(Lilly) 목사에게 보내었고, 이 목활자를 바탕으로 제작한 35,563개의 한글 연활자가 1881년 7월에 일본 요코하마(橫濱)로부터 입수되었다. 또 활판기(인쇄기)도 한번에 8장을 찍을 수 있는 컬럼비아 테마

이(Columbian demy)를 갖추었다. 이 비용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스코틀랜드 교회가 한국의 선교 사업을 지원할 수 있었던 계기는 스코틀랜드가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의 복음화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음에 경험이 있는 중국인 신자의 도움과 서간도 한인촌 출신의 석자공 김청송(金靑松)의 지원으로 188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성서인 『예수성교성서 누가복음』(누가복음)을 발행하였다. 1875년에 시작하여 7년 만에 완성된 56매의 연활자본이었다. 같은 해에 『예수성교성서 요한복음』(요한복음), 1883년에는 개정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신약 『예수성교성서 마태복음』(마태복음)과 『예수성교성서 마가복음』(마가복음), 1884년에는 누가복음과 데자헝격(제자행적), 사도행전 합본, 1885년에는 로마인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등이 발행되었다. 이들을 로스역본(Ross Version)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10여종이 넘는다.
- 드디어 1887년에는 이 단편 성서들을 보완한 후 합본하여 『예수성교전서(예수성교전서)』라는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를 발행하였으니 바로 이 책이다. 이 『예수성교전서』는 1900년 5월 성서번역자회의 『신약전서』가 나올 때까지 18년 동안 서간도 한인촌은 물론 한국전역에 보급되었다. 번역과 인쇄에 참여하였던 김청송은 서간도 한인촌, 서상륜은 서울, 백홍준은 의주, 서경주는 황해도 지역을 각기 나누어 맡았다고 한다.
- 『예수성교전서』의 앞표지에는 가로로 “문광서원” 세로로 『예수성교전서』와 같이 서명과 발행자 표시가 있다. 표제지(標題紙)에는 『예수성교전서』라는 서명이 가운데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예수강세일천팔백십칠년”, 왼쪽에는 “광서십삼년 성경 문광서원 활판”이라는 발행사항이 세로로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책은 광서 13년(1887)에 성경(盛京)에 있는 문광서원에서 활자로 인쇄한 책임을 알 수 있다.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는 동일판본의 『예수성교전서』가 3책이 있다. 이 중에서 제1책[청구기호: O(CH) 225 예수성 문=2]은 표지와 표제지가 완전하고, 뒤표지는 손상되었으나 원문은 온전하다. 제2책[청구기호: LGP(O) 225 예수성 문]은 용재(庸齋) 백낙준(白樂濬, 1895~1985) 전 연세대 초대총장이 기증한 용재문고 중의 1책이다. 감청색 하드바운드로 개장되었으며, 표지와 표제지의 일부 뒷쪽 10여장은 아랫부분이 손상되어 있다. 제3책[청구기호: O(CH) 225 예수성 문]은 표지와 표제지는 약간 손상되었으나 뒷쪽 수십 장이 결락되었다.





<사진 1> 등록대상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본 [청구기호: O(CH) 225 예수성 문=2] 위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표지, 표제지, 첫 장, 마지막 장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의 『예수성교전서』는 목사이자 고교학자인 김양선(金良善, 1907-1970) 교수가 기증한 것이다. 과거 그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 「金良善藏書 家寶」라는 장서인이 앞표지에 찍혀 있다. 앞표지의 왼쪽 아래와 표제지의 오른쪽 아래가 찢겨졌으나 배접하여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 3) 문헌자료
  - 이만열, “로스역 성경 간행과 한국 초대교회”, 『존 로스 선교사 한글성경 출간 130주년 기념 강연집』, 2012.
  - 유동식, 『기독교와 한국역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 백낙준, “한국교회의 역사”, 『백낙준집』: 4,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 김재준, “1877-1887년 사이의 한글성경의 번역”,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봉희, “국역성서의 서지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1880년대 후반에 설립된 교회들은 이 성경들을 전한 권서(勸書)들이 기초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종합격인 『예수성교전서』의 간행은 이 성경의 완결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는 한국 개신교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왜곡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번역되고 간행되었다는 점, 번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신약성경을 완역하였다는 점, 상인 출신인 한국인 청년들이 로스를 도와 번역을 주도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19세기 후기 서북지역의 방언을 포함한 한글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다.

- 그러므로 조사 대상 중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한 책[청구기호: O(CH) 225 예수성 문=2]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종합의견
  -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이자 19세기 후기 한글 연구에 도움을 주는 자료이므로 등록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연구위원>

- 1) 내용 및 특징
  - 『예수성교전서』 21.1x13.0cm, 415장. 문광서원, 1887.
  - 『예수성교전서』는 한글로 번역 출판된 최초의 신약전서로 1882년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를 발간한 이래 차례로 발간된 신약성서 단편들을 개정하여 대영성서공회의 출판비 지원을 받아 1887년 만주의 성경(심양, 봉천) 문광서원에서 초판으로 5,000부를 발행한 것이다. 이 성서의 번역은 선교사로는 로스, 매킨 타이어가 주도했고, 이흥관,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김침송, 이익세, 최성균, 서상륜 등이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서상륜은 권서로서 배포과정에서도 크게 공헌하였다. 이후 『예수성교전서』는 한국과 중국의 국경지대와 한국 내지 깊숙하게 전달되어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1900년 성서번역위원회가 새로 번역한 『신약전서』가 발간되기까지 유일한 한글 신약전서였을뿐만 아니라 성서번역위원회 신약전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 참고사항 : 이른바 ‘로스역’ 성서의 출판은 로스의 요청으로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로스는 이 지원금으로 1881년 인쇄기를 상해에서 구입하여 봉천에 설치하고, 한국인 번역자들이 만든 목활자(木活字)를 일본주재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총무 릴리(Lilly) 목사에게 보내 40,000자의 연활자(鉛活字)를 만들어 같은 해 우장을 거쳐 봉천에 가져와 인쇄에 사용하였다.
- 2) 문헌자료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 대한성서공회, 1993.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대한성서공회, 1994.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대한성서공회, 2004.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2권, 대한성서공회, 2006.
- 3) 기타
  - 일제강점기 연희전문학교 시절부터 계속 보존하여 오던 것.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유물은 최초의 한글번역 신약전서로, 1900년 성서번역자회 번역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한글번역 신약전서가 발행되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중요한 판본으로 문화재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같은 판본이 숭실대학박물관, 대한성서공회에도 소장하고 있으나, 이 판본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 5) 종합의견
  - 문화재 등록 가치 있음.

<○○○ 교수>

- 1) 현상
  - <예수성교전서>는 1887년 중국 심양 문광서원에서 발간된 최초의 한글 신약성경이다. 그로부터 약 130년이 지났으나,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원 귀중본실에 보관중인 이 책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또 인쇄 활자상태도 아주 또렷하다.
- 2) 내용 및 특징
  - <예수성교전서>는 외국(스코틀랜드) 선교사와 한국인들이 함께 번역한 최초의 한글 기독교 경전(성경)이다. 한글이 맞춤법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한글' 신약성경은 국어발달 연구에 매우 중요한 문헌자료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성교전서>는 당시의 서북지역(평안도 북부) 방언으로 번역되었으므로, 이 책은 19세기 말 서북지역 방언연구에도 귀중한 문헌이다.
-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예수성교전서>는 한국 최초의 기독교(개신교) 경전(신약성경)이기에 한국 기독교에게 주는 그 역사성과 상징성이 매우 크다. 또 이 책이 한글로 발간된 최초의 신약성경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하였고, 그러나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한글이 제대로 사용조차 되지 않았던 19세기 말에, <예수성교전서>의 발간은 한글의 부활(재발견)이었다고 본다. 또한 번역자 대다수가 한국인(서북지역 출신)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예수성교전서>는 19세기 후반 한국 서북지역에서 사용된 한글(방언)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서북지역(평안도) 언어에 담겨있는 지리적 문화적 배경에 관하여 무언(無言)의 설명을 해준다. 그러나 서북지역의 방언으로 발간된 <예수성교전서>이었기에 전국적인 독자층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이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내한(來韓) 선교사들이(1890년대) 표준어(서울) 한글성경을 다시 번역하여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00년에 표준 한글로 번역된 <신약전서>가 발간되었고, 1906년에 그 완성본이 발간되었다.
  - <예수성교전서>는 중국 심양 문광서원에서 발간되었으며, 인쇄를 위한 식자제 기술자는 한국인이었다. 책을 만드는 종이재로는 아마도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라 본다.
  - 종합: <예수성교전서>는 위에서 서술한 대로 -기독교의 차원을 넘어- 대단히 귀중한 한국 근대(정신)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이 책과 더불어 1906년에 발간된 <신약전서>도 함께 보존해야 완벽한 한 쌍(雙)을 이룰 것으로 본다.
-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1.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 인쇄술(서양, 중국, 한국의 인쇄술 비교), 19세말의 한글

- 2. 국어 발달 연구(19세기 말 한글연구)

- 5) 종합의견
  - <예수성교전서>는 아주 귀중한 한국 근대(정신)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이 책과 함께 1906년에 발간된 <신약전서>도 문화재로 등록해야 완벽한 한 쌍(雙)을 이룰 것으로 본다.

<○○○ 교수>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소장본]

- 1) 현상
  - 이 책은 현재 숭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숭실대 소장본은 겉표지(하단 좌측)와 내부(하단 우측)는 양호한 상태이다. 속표지(하단 중앙)는 아래쪽 2부분이 훼손되었으나 글자는 파손되지 않은 상태이다. 내부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연세대 소장본은 필자의 소속대학으로 실사에 참여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 2) 내용 및 특징
  - 『예수성교(신약)전서』의 원제목은 『예수성교전서』이다. 이 책은 1882년 이래 출간된 단권 성서, 『예수성교성서누가복음』, 『예수성교성서요안내복음』, 『예수성교성서마가복음』, 등 그동안 펴낸 책들을 한 권에 모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신약성서'이다.
  - 제작자인 존 로스(John Ross, 羅約翰, 1842-1915)는 스코틀랜드 연합교회의 목사로 중국선교사였다. 한글 성서의 번역은 이용환,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이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서상륜, 서경조 형제 등이 한글 성서의 배포 과정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의 국경지대와 한국 내지 깊숙하게 전달되어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였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 성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부분 만을 한 책으로 묶어 출판하면서 『예수성교전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특이하다. 세로쓰기에 "하나님" 앞이나 뒤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고유명사에 옆줄을 치지 않은 이 책은, 그동안 단권 성서가 발간될 때 마다 부분적으로 수정되던 형식들이 완전히 정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1900년 '성서번역위원회'의 새로운 번역에 의한 『신약전서』가 발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으며, 이후 오늘날에 이어지는 신약성서 번역 과정 전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지대하였다.
- 3) 문헌자료
  - 한영제, 『한국기독교문서운동100년』 기독교문사, 1987.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기독교문사, 1990.
  -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성광문화사, 1990.
  -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한국기독교박물관소장 기독교자료해제』 2007.
  -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편람』 2015.
- 4) 기타

- 존 로스는 『예수성경전서』를 편찬하기에 앞서 한국의 역사와 한국어에 관련된 책을 집필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신약성서'를 출판하기 위해 당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한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연구를 통해 한글 성서를 번역 출판한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이 책은 한국 개신교의 출발과 그 존재성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하게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 현재 이 책은 '송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각각 소장되어 있는 바, 서로 비교하여 양호한 상태의 책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필자는 연세대 소속으로, '연세대 소장본' 실사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상호 비교가 불가능 함).
-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단 송실대와 연세대 비교 후 양호한 것으로 선택.

안건번호 근대 2016-06-04

#### 4.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6.10.4.)를 거쳐 등록예고('16.10.20.~'16.11.18.)된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 년대	판종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1권	세로 21.5 × 가로 15.0(cm)	1885년	신연환 자본	종이 (양지)	재단법인 대한성서 공회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 (3) 추진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5. 3~10월)
    - 개신교 유물 78건 목록화, 등록 기준(안) 마련 등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등록 조사 대상 선정('16. 2. 2.)
    - 목록화 78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0건 선정
  -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16. 4~6월)
    -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문화재 등록 검토 회의('16.9.21.)
    - 보존상태 등이 양호한 '대한성서공회' 소장본을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
-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16.10.4) / 원안가결
- '대한성서공회' 소장본(고본실본)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를 등록 검토 대상으로 결정
- (5)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6. 10. 20. ~ '16. 11. 18.(30일간)

○ 예고결과 : 이의 제기

1)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이의 제기('16.11.9)

- 내용 : 등록문화재 명칭 정정 요청(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 신약마가전 복음서언해)
- 사유 : 고본 성경의 가치와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을 고려해 책명과 같은 고어로 명칭 표기가 적합

(6) 심의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4.28./6.23.)>

○ ○ ○ ○ 위원

- 이수정이 번역하여 일본에서 출판된 한글과 한자 혼용의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한글 성서이다. 후일 선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세계 기독교 선교사상 선교사가 선교지의 말로 된 성서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이것이 최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하였다.
- 또 로스 역 성서보다도 번역이 우수하여 한국 최초의 『신약전서』의 출판에 기초가 되는 등 후대의 성경 번역에도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기의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국내에는 대한성서공회 외에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등에 소장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보존상태가 가장 좋은 대한성서공회 소장의 2부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 ○ 연구위원

- 이 자료는 이수정이 일본에서 한문성경을 대본으로 국한문 혼용체로 번역한 마가복음 초판본으로 최초의 한국인 독자적인 단독의 성서번역이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이 '성서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서울 표준말로 한글성서번역을 하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자료로 등록 보존할 가치가 있다.

○ ○ ○ ○ 교수

- 이 책은 '로스역 성서'와 함께 개화기 한글 번역의 독특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즉 한국인의 자발적인 성경번역이라는 점과, 기독교 수용에 배타적이었던 조선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외국에서 번역되어 국내에 유입되었던 점 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 반면에 이 책은 '로스역'이 순전한 우리말로 번역한데 반하여, 한문을 아는 식자층을 포함하여 폭넓게 기독교를 이해시키고 전도하기 위해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며 한자를 언해한 점도 한글화 과정에 특이하고 중요한 변화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 현재 3권의 책 가운데 '대한성서공회'의 '전시본'이 가장 양호한 상태를 감안하여 이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문화재 등록 명칭 :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붙임 :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조사보고서 1부.

#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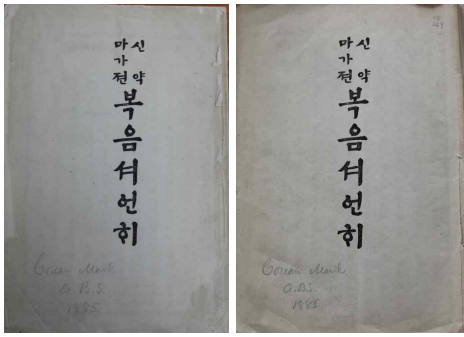
- 1. 명 칭 :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 3. 소유자 : 대한성서공회
- 4. 조사자 의견

## <○○○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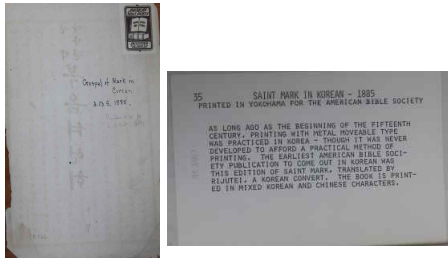
- 1) 현상
  - 표지와 내용 모두 온전함
- 2) 내용 및 특징
  -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일본에 체류하던 이수정(李樹廷, 1842~1887?)이 「마가복음」을 국한문으로 번역하여, 1885년 2월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판한 성경이다. 그가 번역한 언해(譯解)형식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로스 역 성경과는 달리 양반 지식인층을 염두에 둔 번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번역자인 이수정은 민영익(閔泳翊)의 서생으로 있다가 1882년에 박영효(朴泳孝)의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이자 감리교도였던 쓰다센(津田仙, 1837~1908)과 교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수정은 그에게서 근대적인 농법 뿐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다. 1883년 4월에는 동경 로게츠초(露月町)교회에서 야스카와 도오루(安川亭)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이로써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 신자가 되었다. 이후 일본에 있던 미국성서공회 총무 루미스(Henry Loomis, 1839~1920)는 이수정의 신앙이 두터운 것을 알고 “성경번역이야말로 한국 선교의 지름길”이라며 번역을 권유하자 먼저 한문성경에 이두식 토(吐)를 단 『현도한한신약전서(懸吐韓漢新約全書)』를 완성한데 이어서 이 책을 번역한 것이었다.
  - 이수정은 1883년 12월 13일에 발행된 『세계선교평론지(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에 Loomis와 Knox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선교를 호소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이 글을 통해 그는 “한국에서 온 마케도니아인(a Macedonian from Korea)”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1885년 1월에는 일본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간단한 한국말을 가르치는 등 한국의 개신교 수용에서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1886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 박준우(朴準禹)가 일본에 가서 유학생을 인솔하고 돌아올 때 귀국하였다. 사망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1887년 중반부터 1889년 11월 사이로 추정된다. 그의 가계(家系) 역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1884년 일본에서 간행된 『금오신화(金鰲新話)』의 발문에 “大朝鮮開國四百九十三年甲申(1884)之秋 漢陽李樹廷識”라고 하였고, 다음 행에는 「荃欸」이라는 인장이 각인되어 있다. 이를 보아 그는 한양 이씨이며, 자호가 「전제(荃欸)」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한편 루미스 목사는 이 책의 번역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와 방법을 취하였다. 먼저 이수정에게 한문 『마가복음』을 주어 정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번역에 착수하게 되었을 때는 일본어성서, 영어성서는 물론이고, 헬라어 원문까지 도움을 받아 대조해가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번역을 진행시킨 것이다. 물론

문 이수정의 개인적인 어학 능력으로 본다면, 번역 대본은 한문성서를 주 대본으로 하고 일본어 성서를 참고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그러나 번역에 있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기였다. 당시 일본성서에는 “카미(神)”, 한문성서에는 “상제(上帝)”로 되어 있었다. 또 로스 목사가 주도해 간행한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느님”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일본의 표기를 따라 “신(神)”으로 정하였다. 그밖에도 “세례”, “그리스도”와 같은 용어도 한글로 표기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고유명사는 모두 헬라어 원문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세례는 “밧테슈마”, 그리스도는 “크리슈도스”, 예수는 “예수스”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 그러나 한글로 번역하면서 관료나 지식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중요한 단어는 한자로 표기하고, 그 오른 쪽에 한글로 토를 달았으니 이것이 로스 역과는 다른 점이다. 또한 서명에 언해를 붙인 것은 세종 이후의 유희와 불서의 한글번역은 “언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번역을 시작한 지 불과 수개월 후인 1884년 말에는 『마가복음』의 번역을 끝내었다. 미국성서공회의 기록에 따르면 1885년 2월에 요코하마에서 6,000부(영국성서공회의 기록에는 1,000부)를 인쇄하였다고 한다. 이 성경은 만주 봉천에서 1882년에 간행된 『누가복음』에 이어 한글로 번역된 두 번째의 성서이며,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한글 성서이다. 이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에 조선에 입국할 때 가져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파송(派送)된 선교사가 파송지에 입국하기 전에 그 나라 사람이 번역한 성서를 가지고 입국한 일은 세계선교사에서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이 책은 1887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개정하여 『마가의 견본 복음서언해』라는 서명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 1885년에 출판된 초판본의 표제(標題, Title page)는 『신약마가전 복음서언해』, 권수제는 『마가(馬可)의 전(傳)한 복음서언해(福音書譯解)』, 난의제는 『마가전복음서』이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보편적인 서명은 『신약마가전 복음서언해』이므로 이 서명을 문화재의 명칭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 대한성서공회에는 1885년에 출판된 『신약마가전 복음서언해』 2부가 소장되어 있다. 둘 다 미국성서협회의 옛 소장본으로 보인다. 한 부(소장기호: OB269)는 제33-36면(2장)이 제42면과 제43면 사이에 잘못 들어가 있으나 결락된 장이 없이 상태 또한 매우 온전하다. “American Bible Society”의 레이블이 앞표지 뒷면 뒷부분에 붙어 있는 또 다른 한 부(소장기호: OB526) 역시 내용이 온전하다. 특히 이 책에는 초기의 종이목록 카드가 남아 있는데 “SAINT MARK IN KOREAN-1895” printed in Yokohama for the American Bible Society”라는 표목 아래에 “한국에서는 15세기 초에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으나 실용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지 못하였다. … 개종한 RIJUTE(이수정의 일본어 발음 표기)가 번역하였고, 한글과 한자를 섞어 인쇄하였다.”는 내용이 영문으로 타이핑되어 있다. 미국인들이 우리의 인쇄문화를 제법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다. 이에 비해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의 초판본은 내용은 온전하나 4점으로 개장되고, 매집되어 있는 등 대한성서박물관 소장본에 비해 보존상태가 떨어진다.



<사진 1>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 (1885) 표지[왼쪽은 고본실본(OB526), 오른쪽은 전시설본(OB269)]



<사진 2> OB526의 표지 뒷면과 종이목록 카드

- 3) 문헌자료
  - 김봉희, “국역성서의 서지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이원순, “성서국역사논고”, 『민족문화』 제3집, 1978.
  - 전승민, “이수정의 『新約聖書馬可傳』과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의 대조 연구 : 구결의 현도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4.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수정이 번역하여 일본에서 출판된 한글과 한자 혼용의 『신약마가전 복음서 언해』는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한글 성서이다. 후일 선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세계기독교 선교사상 선교사가 선교지의 말로

된 성서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이것이 최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하였다.

- 또 로스 역 성서보다도 번역이 우수하여 한국 최초의 『신약전서』의 출판에 기초가 되는 등 후대의 성경 번역에도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기의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국내에는 대한성서공회 외에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등에 소장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보존상태가 가장 좋은 대한성서공회 소장의 2부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종합의견
  - 보존상태가 거의 온전한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2부를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 1) 현상
  - 표지는 테이프 자국 등 훼손이 심해 보존처리를 하였으나, 본문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 2) 기타
  - 김양선(金良善) 목사가 해방 전 북한 지역에서 수집하여 해방 직후 아내 한필려 여사가 월남할 때 옮겨와 한국전쟁 때 일시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에 옮겨져 보관되다가 1960년에 되찾아 1967년 숭실대학교 사학과의 교수 있을 때 기증함.
-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유물 자체로는 최초의 한국인 독자적인 단독의 성서번역이며, 언더우드와 아펜켈러 등이 ‘성서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서울 표준말로 한글성서번역을 하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자료로 등록 보존할 가치가 있으나 대한성서공회의 소장본과 비교하여 더 보존 상태가 나은 판본을 등록해야 할 것이다.
- 4) 종합의견
  - 유물 자체로는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으나 같은 책을 대한성서공회에도 소장하고 있으므로 그것과 비교하여 더 보존 상태가 좋은 것으로 등록해야 할 것이다.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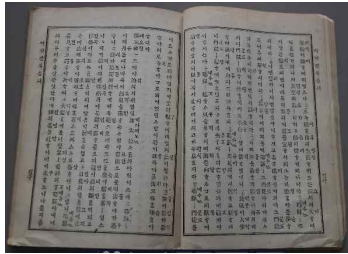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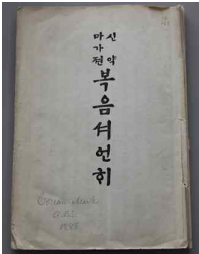
- 1) 현상
  - 앞 표지 하단에 펜글씨 필기체로 “Corean Mark, A. B. S. 1885”라고 기록된 것을 제외하면 보존상태가 거의 완벽하다. 여기서 “A. B. S.”는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의 이니셜이다.
- 2) 내용 및 특징
  -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 21.3×15.5(cm), 87면, 1885년,
  - 이수정(李樹廷, 1842~1886)이 미국성서공회 일본 지역 총무 루미스(Henry Loomis)의 지원을 받아 중국 한문성서를 대본으로 한글로 번역한 마가복음서이다. 이 책은 미국성서공회의 지원으로 1885년 2월에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6,000부를 간행했다. 사주쌍변에 반엽 11행 29자로, 식자층 정도를 고려하여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였으나,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자어의 음을 우첨자로 병기하였다. 고유명사의 경우 원음을 따르려 했고, 예수를 ‘예수쓰’, 하

나눔을 '神(신)'으로 표기하였다. 아펜켈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제물포를 통해서 입국할 때 가져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한성서공회에는 이 책을 등록번호 OB269, OB526 두 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OB269의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 같은 책이 숭실대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으나, 성서공회 소장본 보다는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

- 3) 문헌자료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 대한성서공회, 1993.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대한성서공회, 1994.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대한성서공회, 2004.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2권, 대한성서공회, 2006.
- 4) 기타
  - 이 자료는 미국성서공회에서 1980년대 초에 대한성서공회가 직접 인수한 것으로 거의 완벽한 향은향습 보존 시설을 갖추고 잘 보존하고 있다. 원자료의 표제는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Ⅱ」이지만, 등록할 때는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자료는 이수정이 일본에서 한문성경을 대본으로 국한문 혼용체로 번역한 마가복음 초판본으로, 최초의 한국인 독자적인 단독의 성서번역이며, 언더우드와 아펜켈러 등이 '성서상업위원회'를 조직하여 서울 표준말로 한글성서번역을 하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자료로 등록 보존할 가치가 있다.
- 6) 종합의견
  -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음.

<○○○ 교수>

- 1) 현상
  - 이 책은 '숭실대'에 1권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에 2권이 있다. 숭실대본은 표지가 보존처리된 상태로 제목,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Ⅱ」 중 4글자(신, 가, 권)가 훼손 혹은 망실된 상태이나, 내부는 양호한 상태이다. 성서공회본 2권은 모두 원래의 상태로, 표지와 제목의 글자가 온전하며 내부도 온전한데, 두 권중 '전시본'이 표지(하단 좌측) 나 내부(하단 우측)가 좀 더 양호한 편이다.



- 2) 내용 및 특징
  - 『마가전복음서언해』의 원제목은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Ⅱ』로 우리나라 최초의

의 '마가전 복음서언해본'이다.

- 이 책은 1885년 이수정(李樹廷, 1842~1886)과 Henry Loomis의 공역으로 일본에서 발간되었다. 당시 개화파의 일원인 이수정은 임오군란(1882) 당시 민비를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다. 그는 도쿄에서 농학자 쓰다 겐(津田 仙)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한문성경을 선사받고 성경을 공부한 후 세례를 받았다. 또한 그는 요코하마에 있는 '미국성서공회'의 루이스(H. Loomis) 목사의 권유로 성경을 번역하고 조선에 올 선교사 초청운동을 전개했다.
- 이수정은 성경공부를 하면서 먼저 한문성경에 이두로 토를 달아 1884년에 『新約聖書 馬太傳』(마태복음), 『新約聖書 馬可傳』(마가복음), 『新約聖書 路加傳』(누가복음), 『新約聖書 約翰傳』(요한복음), 『新約聖書 使徒行傳』(사도행전)을 출간한 후, 이들을 묶은 『원도한한신약전서(懸吐韓漢新約全書)』를 출간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한글번역에 착수하여 1885년 2월에 이 책, 『마가전 복음서언해』를 요코하마의 '미국성서공회'에서 6,000부 간행했다.
- 사주쌍변에 반엽 11행 29자로, 식자층 전도를 고려하여 국한문용체를 사용한 이 책은 고유명사의 경우 원음을 따르려 했고, 예수를 '예수쓰', 주의 명칭을 '신'으로 표기하였다. 아펜켈러,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서 선교활동에 사용하려고 이 책을 가지고 제물포 항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 3) 문헌자료
  -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한국기독교박물관소장 기독교 자료 해제』 2007.
  -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편람」 2015.
- 4) 기타
  - 이 책은 '로스역 성서'와 함께 개화기 한글 번역의 독특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즉 한국인의 자발적인 성경번역이라는 점과, 기독교 수용에 배타적이었던 조선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외국에서 번역되어 국내에 유입되었던 점 등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 반면에 이 책은, '로스역'이 순전한 우리말로 번역한데 반하여, 한문을 아는 식자층을 포함하여 폭넓게 기독교를 이해시키고 전도하기 위해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며 한자를 언해한 점도 한글화 과정에 특이하고 중요한 변화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 현재 3권의 책 가운데 '대한성서공회'의 '전시본'이 가장 양호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이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종합의견
  - 대한 성서공회 소장본으로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5. 「구약전서」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구약전서」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6.10.4.)를 거쳐 등록예고('16.10.20.~'16.11.18.)된 「구약전서」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판종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구약전서	2권(1절)	세로 18.7 × 가로 13.6(cm)	1911년	신활자본	종이(양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3) 추진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5. 3~10월)
  - 개신교 유물 78건 목록화, 등록 기준(안) 마련 등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등록 조사 대상 선정('16. 2. 2.)
  - 목록화 78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0건 선정
-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16. 4~6월)
  - 구약전서 : '최용신 기념관' 소장본,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문화재 등록 검토 회의('16.9.21.)
  - 보존상태 등이 양호한 '대한성서공회' 소장본을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
-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16.10.4) / 원안가결
  -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구약전서」를 등록 검토 대상으로 결정
- (5)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6. 10. 20. ~ '16. 11. 18.(30일간)
  - 예고결과 : 이의 제기

- 1)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이의 제기
  - 내용 : 등록문화재 명칭 정정 요청(구약전서 → 구약전서)
  - 사유 : 고본 성경의 가치와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을 고려해 책명과 같은 고어로 명칭 표기가 적합
- (6) 심의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6.2./6.23.)>

- ○ ○ ○ 위원
  - 『구약전서』는 비록 일본에서 발행되었지만 한글로 발행된 최초의 구약전서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등도 관련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전본 중에서 보존상태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구약전서』 1절(2책)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 ○ 연구위원
  - 이 자료는 최초의 구약전서 한글 완역본이고, 더욱이 초판본이고, 그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 ○ ○ 교수
  -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구약성서'로, '신약성서'(1900)을 발간 한 후 11년 만에 이 책이 발간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성서가 완전히 번역된 것이다. 이는 한국 개신교의 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된다고 하겠다. 이 책은 발행 당시 불과 6개월 만에 6,500여 권이 판매되었는데, 이는 구약성경에 대한 갈증과 한국교회 특유의 성경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 이 책은 일반적으로 구역(舊譯)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구역', '개역',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새번역', 그리고 '개역개정판'에 이르는 우리 말 성서번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크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실사를 통해 살펴본 바, '최용신 기념관'의 소장품은 제1권의 표의 가장 자리에 손상이 있으며 황변이 심화고 2권은 앞부분 40여 쪽이 유실된 상태이다. 반면에 '대한성서공회'의 소장품은 표지, 내부, 그리고 뒤표지까지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대한성서공회' 소장본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문화재 등록 명칭 : 구약전서)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붙임 : 「구약전서」 조사보고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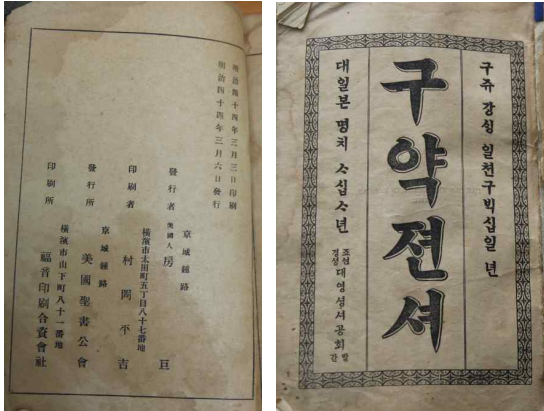
### 「구약전서」 조사보고서

- 1. 명 칭 : 구약전서
-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 3. 소유자 : 대한성서공회
- 4. 조사자 의견

<○○○ 위원>

- 1) 현상
  - 2책 모두 표지와 내용이 온전함.
- 2) 내용 및 특징
  - 구약성경은 1887년에 구성된 성서번역자회가 신약성경의 개정과 함께 1900년부터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아펜젤러가 창세기, 언더우드가 시편, 게일이 사무엘, 트롤로프가 잠언, 스크랜튼이 이사야, 레널즈가 여호수아와 사사기 등으로 나누어 번역하기로 하였으나 순조롭지 않았다. 1906년 이후 크랩, 피에르트 두 선교사가 번역위원으로 보선되고, 1907년에 한국인 김정삼 등이 정식 번역자회 위원이 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후 전주 선교회의 전도 업무와 번역을 병행하던 레이놀즈와 김정삼, 이승두가 함께 이 일에 건넌 하여 1910년 4월 2일에 번역을 완료하였다. 이 번역은 이듬해인 1911년 3월 6일에 일본 요코하마의 후쿠인(福音) 인쇄합자회사에서 「구약전서」라는 서명으로 발행되었다. 총 면수는 2,650면이며, 두 책으로 분책되었다. 데일권(제1책)은 창세기에서 역대 하(1,350면), 데이권(제2책)은 에스라에서 말라기(1,300면)까지 수록되어 있다.
  - 대한성서공회의 「구약전서」 1질(2책)중에서 제1책은 대영성서공회 발행본(소장기호 OB75)이고, 제2책은 미국성서공회 발행본(소장기호 OB105)이다. 대영성서공회 발행본은 감청색 표지이며, 표제지에는 「구약전서」라는 서명의 왼쪽 아래에 “조선 경성 대영성서공회 발간”, 그 뒷면 아래 부분에는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라는 발행자 표시가 있다. 미국성서공회 발행본은 흑회색 표지이며, 표제지에는 「구약전서」라는 서명의 왼쪽 아래에 “미국성서공회”, 그 뒷면 아래 부분에는 “AMERICAN BIBLE SOCIETY”라는 발행자 표시가 있다. 이렇게 두 본은 발행자는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만 일본 요코하마의 후쿠인(福音) 인쇄합자회사에서 인쇄된 동일한 판본이다. 당시 미국과 영국의 성서공회에서는 각각 10,000부씩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구분은 표제지(Title page) 왼쪽에 있는 발행처 표시와 표지 색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두 본의 판권기에는 조선 경성에 있었던 대영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는 각각 민휴(閔休, H. Miller)와 방기(房居, D. A. Bunker)를 발행자로 명기해 놓았다.
  - 맨 처음 나오는 「창세기」에는 “모세의 첫재경”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시편 119편의 히브리어 이합체시(離合體詩, Acrostic Poem)에는 히브리어 자음의 명칭이 알렘, 벵 등으로 음역 표기가 있다. 이 책은 비록 일본에서 간행되었지만 우리말로 발행된 최초의 합본 구약성경이라는 점에서 한국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 『구약전서』는 처음 20,000부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전본이 더러 있기는 하나 보존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최용신 기념관 소장본 2책은 모두 종이의 황변현상이 있는 등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다. 더욱이 제2책은 앞의 20장(1351-1390면)과 맨 뒷면의 판권지가 결락되어 있다.
- 이에 비해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2책은 원래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다. 다만 제1책은 대영성서공회, 제2책은 미국성서공회 발행본이라는 점이 아쉽다. 그러나 이 두 책은 동일한 판으로 발행 당시 발행(보급)의 주체가 달랐을 뿐이다. 혹 동일한 판의 『구약전서』를 미국과 영국의 성서공회가 각각 발행하여 우리나라에 선교용으로 보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는 합력이 오히려 역사적 의미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사진 1> 대한성서공회 소장의 『구약전서』.

오른쪽은 표제지(제1책, 영국)와 왼쪽은 판권지(제2책, 미국)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구약전서』는 비록 일본에서 발행되었지만 한글로 발행된 최초의 구약 전서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등도 관련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전본 중에서 보존상태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대한성서공회 소장의 『구약전서』 1질(2책)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종합의견

- 대한성서공회 소장의 1질(2책)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연구위원>

[최용신 기념관 소장본]

- 1) 현상
  - 제1권은 온전하나 제2권은 뒷부분이 학개서이하 훼손 낙장.
- 2) 내용 및 특징
  - 『구약전서』 18.7x13.6(cm).
  - 『구약전서』는 1911년 3월 일본 요코하마에 있던 복음인쇄합자회사(福音印刷合資會社)에서 '조선 경성 대영성서공회'와 '조선 경성 미국성서공회'의 '영국인 민휴'(H. Miller, 閔休)와 '미국인 방거'(D. A. Bunker, 房居)를 발행자로 하여 각각 10,000부와 20,000부를 초판으로 발행하였다. 이 책은 내 표지에 "구주 강생 일천구백십일 년 구약전서 대일본 명치 卍·십 卍·년 미국성서공회"라고 되어 있고, 그 뒷면에 영어로 "THE OLD TESTAMENT IN KOREAN, 1911, AMERICAN BIBLE SOCIETY"라고 표기되어 있어 미국성서공회가 발행한 20,000부 중의 한부임을 알 수 있다.
- 3) 기타
  - 이 자료는 최용신기념관을 개관할 때 안산지역 감리교 목사님이 기증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최초의 구약전서의 한역본이요 초판본이어서 유물 자체로는 등록 가치가 있으나, 이 판본은 낙장과 훼손이 있으므로 더 보존 상태가 나은 판본을 찾아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
- 5) 종합의견
  - 1911년에 간행된 구약성서 초판본이기는 하지만, 낙장이 있고, 보존 상태가 불량하여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부적합함.

[대한성서공회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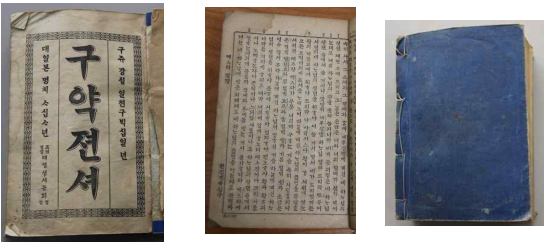
- 1) 현상
  - 제1권 제2권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향온향습 시설을 갖추고 잘 보존되고 있다.
- 2) 내용 및 특징
  - 『구약전서』 18.7x13.6(cm), 대일권(1350면)(소장번호 OB75), 대이권(1300면)(OB105),
  - 『구약전서』는 1911년 3월 일본 요코하마에 있던 복음인쇄합자회사(福音印刷合資會社)에서 '조선 경성 대영성서공회'와 '조선 경성 미국성서공회'의 '영국인 민휴'(H. Miller, 閔休)와 '미국인 방거'(D. A. Bunker, 房居)를 발행자로 하여 각각 10,000부와 20,000부를 초판으로 발행하였다. 이 책은 내 표지에 "구주 강생 일천구백십일 년 구약전서 대일본 명치 卍·십 卍·년 조선 경성 대영성서공회 발간"라고 되어 있고, 그 뒷면에 영어로 "THE OLD TESTAMENT IN KOREAN, 1911,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라고 표기되어 있어 영국성서공회가 발행한 10,000부 중의 한 부임을 알 수 있다.
  - 목차는 상하 2단 세로로 조판되고 본문은 1단 세로로 조판되었다. 제1권은 창세기1장 1페이지부터 역대하 36장까지 1350페이지이고, 제2권은 에스라 1장 1351

페이지부터 말라기 4장 2649페이지까지 편집되어 있다. 2650페이지는 빈페이지이고, 마지막 출판사항에는 “명치 44년 3월 3일 인쇄, 명치 44년 3월 6일 발행, 발행자 경성 종로 미국인 房巨, 인쇄자 橫濱市 太田町 5丁目 87번지 村岡平吉, 발행소 경성종로 미국성서공회, 인쇄소 橫濱市 山下町 81번지 福音印刷合資會社”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제본시 잘못 편집된 것인지, 아니면 제1권은 영국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것이고 제2권은 미국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것이 섞였는지 추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3) 문헌자료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 대한성서공회, 1993.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대한성서공회, 1994.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대한성서공회, 2004.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2권, 대한성서공회, 2006.
- 4) 기타
  - 이 자료는 영국성서공회에서 1980년대 초에 대한성서공회가 직접 인수한 것으로 거의 완벽한 향온향습 보존 시설을 갖추고 잘 보존하고 있다.
-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자료는 최초의 구약전서 한글 완역본이고, 더욱이 초판본이고, 그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6) 종합의견
  - 문화재 등록 가치 있음. 상태도 양호하고 향온향습 시설에서 잘 보존하고 있음.

<○○○ 교수>

- 1) 현상
  - 이 책은 현재 <최용신기념관>과 (재)대한성서공회에 있다. ‘기념관 본’은 원상태로, 1권은 장식용 끈이 떨어져 있고 표지 가장자리에 손상이 있으며 황변이 심하고, 2권은 겉표지 앞장과 내용이 20여장이 분실된 상태로 일부 오염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황변이 심하다. ‘공회본’은 원상태로 1권 표지(하단 좌측), 내부(하단 중앙) 그리고 2권 내부 및 뒷 겉표지(하단 우측) 모두 훼손된 부분은 없다.



- 2) 내용 및 특징
  - 『구약전서』의 원제목은 『구약전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한글 완역본 ‘구약성서’이다.

- 이 책의 번역은 당시 내한 선교사들이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아펜젤라(H. G. Appenzeller),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레이놀즈(W. D. Reynolds), ‘시편’은 언더우드(H. G. Underwood), ‘잠언’은 트롤로프(M. N. Trollop), ‘사무엘서’는 게일(J. S. Gale), 그리고 ‘이사야서’는 스크랜톤(W. B. Scranton) 등이 각각 담당하였고, ‘조선경성 대영성서공회 발간’으로 되어 있다.
- 2권으로 발간된 이 책은 제1권에는 ‘창세기’에서 ‘역대기 하’까지(1,350쪽), 제2권에는 ‘에스라’에서 ‘말라기’까지(1,300쪽) 수록되어, 모두 2,650쪽으로 총 2만부가 발간되었다. 많은 분량임에도 4호의 큰 활자로 인쇄한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고려한 것이다.
- ‘창세기’에만 ‘모세의 첫째 경’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네모가 처진 각쪽의 맨 위에는 각 줄에서 시작되는 절수를 한자로 표시하였다. 본문은 세로쓰기로 찍어쓰기를 하고 아래아“-” 모음을 사용하며, 절 수 표시와 더불어 세 문단이 시작될 때 마다 “○”표를 넣었다. 사람 이름에는 한 줄“-”을 그어 표시하였고 장소 이름에는 두 줄“=”을 그어 사람 이름과 구별하였다. 주의 명칭은 “하느님”으로 표기하였다.

- 3) 문헌자료
  - 한영제, 『한국기독교문서운동100년』 기독교문사, 1987.
  -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기독교문사, 1990.
  -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성광문화사, 1990.
  -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한국기독교박물관소장 기독교 자료 해제』 2007.
  - 대한성서공회 편,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편람』 2015.
- 4) 기타
  -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간된 ‘구약성서’로, ‘신약성서’(1900)을 발간한 후 11년 만에 이 책이 발간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 성서가 완전히 번역된 것이다. 이는 한국 개신교의 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된다고 하겠다. 이 책은 발행 당시 불과 6개월 만에 6,500여 권이 판매되었는데, 이는 구약성경에 대한 갈증과 한국교회 특유의 성경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 이 책은 일반적으로 구역(舊譯)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구역’, ‘개역’, ‘공동번역’, ‘새번역’, ‘표준새번역’, 그리고 ‘개역개정판’에 이르는 우리 말 성서번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크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실사를 통해 살펴본 바로, ‘최용신기념관’의 소장품은 제1권의 표의 가장자리에 손상이 있으며 황변이 심하고 2권은 앞부분 40여 쪽이 유실된 상태이다. 반면에 ‘대한성서공회’의 소장품은 표지, 내부, 그리고 뒤표지까지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대한성서공회’ 소장본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대한성서공회 소장본)

**6.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주변에서 외부승강기 증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약현성당」 주변에 외부 승강기 증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 본건은 이전에 다음과 같은 현상변경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이력 있음
  - 근대문화재분과 2016년 5차회의('16.10.04) 심의 : 보류
  - 보류의견 : 문화재위원(근대문화재분과)의 자문을 받아 증축 엘리베이터 높이를 낮춘 계획안을 제출받아 문화재위원회에서 재검토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약현성당 (사적 제252호, '77.11.22 지정)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중림동 149-2번지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시 중구 중림동 149-2번지 (문화재 주변 : 1구역/21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심의구역)
  - 신청내용 : 외부 승강기 증축(교회음악 대학원 최양업홀)
    - 구조 : 철골조 + 적벽돌 치장쌓기
    - 용도 : 승강기
    - 증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11.83㎡, 연면적:47.32㎡(높이:6.86m)

**< 변경 전후 비교 >**

항목	당초 (2016년 5차 안건)	변경(금회) (2016년 6차 안건)	비고
구조	철골조+ 판넬 위 스타코	철골조 + 적벽돌 치장쌓기	
용도	승강기	승강기	
규모	운행 층수	지하1층~지상층	지상층 사용 제외
	건축면적	11.69㎡	11.83㎡
	연면적	46.76㎡	47.32㎡
	최고높이	9.42m (기초면 기준 24.06m)	6.86m (기초면 기준 21.5m)

(4) 신청인 의견

- 장애 학생과 노인 이용자 등의 이동권 편의성과 권리 확보를 위하여 시설하는 사업이며, 문화재인 약현성당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므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검토 의견('16.11.11) / 문화재전문위원 ○○○, ○○○>**

- 신축되는 승강기 타워 높이를 기존 계획안 보다 2.56m 낮게 계획함으로써 첨탑 등 당해 문화재 경관 및 주변환경을 개선
- 신축되는 승강기 타워 외부 마감재를 기존 계획안의 샌드위치 패널에서 현재 건물 외벽과 동일한 적벽돌 치장쌓기로 변경함으로써 현재 건물 외관과 조화되도록 계획
- 신축되는 승강기 타워의 높이와 외부 마감기법을 변경, 조정함으로써 당해 문화재 및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계획안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 7. 사적 제277호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현상변경

###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제277호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내에서 냉난방시스템 개선과 강의실 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에서 냉난방시스템 개선과 강의실 인테리어 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세대학교 총장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사적 제277호, '81.09.25 지정)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냉난방시스템 개선 및 강의실 인테리어
    - < 냉난방시스템 개선 >
      - 당초 : 패키지 에어컨 31EA(벽걸이형17, 스탠드형14), 증기식방열기 40EA
      - 변경 : EHP냉난방시스템(천정형) 40EA
    - < 강의실 인테리어 >
      - 인테리어 : 2개실 129.7㎡ (108호-84.8㎡ / 109호-44.9㎡)

###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장조사 의견('16.11.11) / 문화재전문위원 ○○○, ○○○>

#### < 냉난방시스템 개선 >

- 실별로 설치되었던 에어컨 31대와 증기방열기 40대를 제거하고 실별로 천정 마감면(대부분 압면흡음텍스)과 일체화시켜 천정형 냉난방기 40대 설치하는 공사
- 장점
  - 건물 외부에 노출되어 외관을 해쳤던 에어컨 배관과 실외기 정비로 외관 개선
  - 실 내부에 있던 벽걸이형 또는 스탠드형의 에어컨과 외벽면의 방열기 제거로 실 내부 환경 개선

#### ○ 단점

- 증기방열기로 제거로 난방 설비시스템의 원형과 흔적 상실

#### ○ 조사 의견

- 전체적으로 외관보존 및 내부환경의 개선 효과가 있으나 증기방열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 증기방열기 시스템은 일부 실에서만 부분적으로 존치하여 원형과 흔적을 보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 강의실 인테리어 >

- 지상1층 계단형 강의실 2개소에서 바닥은 테라조물갈기로 원형 복원하고 벽면과 천정은 기존에 설치된 마감재료를 변경, 시공하는 공사
- 조사 의견
  - 금번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바닥은 원형으로 복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벽면은 창문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마감재료로 감싸 원형 기법이 보여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강의실 내부 일부 벽면에서 원형 마감기법을 보여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마. 의결사항

- 보류
  -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함
- 출석 7명, 보류 7명

## 8.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주변 현상변경

###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주변에서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구 서울대학교 본관」 주변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구 서울대학교 본관 (사적 제278호, '81.09.25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87-11 ( 1구역 / 85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 (심의구역)
  - 신청내용 : 건축물 신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투브
    - 용도 : 근린생활시설(공연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사무실) 및 다가구주택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면적157.25㎡, 연면적705.10㎡ (최고높이19.8m)

###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검토 의견('16.11.11) / 문화재전문위원 ○○○, ○○○>
- 사적 제278호인 '구 서울대학교 본관'으로부터 약 85m 이격된 위치에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5층 / 철근콘크리트조, 스투브지붕)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대상지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심의대상임.
  -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최고높이 19.8m) 주위로 기존 3~5층 높이의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으므로 당해 문화재로부터의 시선 차단이 없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보류
  - 주변 문화재와의 영향성 파악을 위해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함
- 출석 7명, 보류 7명

**9.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주변에 병원시설 증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경교장」 주변 병원시설 증축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장
- (2) 대상문화재명 : 구 경교장 (사적 제465호, '2005.06.13 지정)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평동 1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일원 ( 1구역 / 22m 이격)
  - ※ 현상변경허용 기준 : 1구역(심의구역)
  - 신청내용 : 병원시설(외래동, 복지동, 주차장등) 증축 및 조정

- <건축물 증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 용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 규모 등 >**

	기존(증축 전)	증축 후	전후 비교
규 모	지하3층, 지상15층	지하4층, 지상15층	증) 지하1층
건축면적	7,555.65㎡	8,512.88㎡	증) 957.23㎡
연 면 적	56,639.86㎡	71,961.56㎡	증) 15,321.70㎡
최고높이	61.2m	61.2m	

- <광장조성 : 1,233.37㎡>
  - 잔디식재 542.97㎡
  - 보도블럭포장 : 690.40㎡

- <조경수 식재 : 2,249.73㎡>
  - 교목류(520주) : 소나무 100주, 꽃복숭아 55주, 매화나무 50주, 산수유 150주, 왕벚나무 80주, 이팝나무 35주, 청단풍 50주
  - 관목류(3000주) : 남천 500주, 수수꽃다리 300주, 앵두나무 100주, 사철나무 600주, 철쭉류 1,500주
  - 지피류(6,600본) : 감국 1,000본, 돌단풍 500본, 맥문동 2,000본, 별개미취 1,500본, 부처꽃 600본, 수크령 1,000본

- <휴게공간 시설 : 272.35㎡>
  - 목재데크 231.61㎡, 회랑 1개소(36m)
  - 등벤치 20개소, 통석벤치 12개소, 화강석플랜터 35m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장조사 의견('16.11.16.) / 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현 사업계획안은 철거 건축물과 신축건물 외에 외부공간의 변화와 자동차 동선 등에서 종합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국가사적인 경교장 주변의 문화재 경관 보존과 경관 향상 측면에서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복잡한 건물 배치 현황은 제해 시 피난의 문제가 문화재 보호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버퍼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기타 참고의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관련 문화재보존 영향성 의견)**

- < 보존정책과('16.11.17.) >
  - '경희궁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의 범위에 있는 병원 '복지동' 증축(1층->2층) 건물은 이미 바로 옆에 9층 높이의 본관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희궁지의 경관에 저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사업시행자가 경교장 훼손부분 복구 및 주변의 경관 복원·보호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요
  - 차수계획 등 시공시 안전 검토 필요
- 출석 7명, 부결 6명, 제척 1명

### 10. 등록문화재 제271호 「구 포천성당」 현상변경

#### 가. 제안사항

- 경기도 포천시 소재 등록문화재 제271호 「구 포천성당」의 보호각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구 포천성당」에 대한 1차레 부결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본건은 이전에 다음과 같은 현상변경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이력 있음
  - 근대문화재분과 2016년 4차회의('16.07.26) 심의 : 부결
  - 부결의견 : 원래의 형태에 가깝게 원래의 전면 종탑 지붕도 포함하여 지붕을 재현하여 보호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포천시청
- (2) 대상문화재명 : 구 포천성당 (등록문화재 제271호, '06.09.19 등록)
  - 소 재 지 : 경기 포천시 왕방로 191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경기 포천시 왕방로 191 (당해문화재)
  - 사업내용 : 구 성당 지붕설치 등 정비 (1식)
    - < 지붕설치 >
      - 구조 : 목조 트러스 위 동판 마감
      - 면적 : 198.98㎡ (종탑 복원 포함)
    - < 창호 설치 등 >
      - 원형복원 : 정면 출입문 1개소, 측면 출입문 1개소, 종탑 도머창 5개소
      - 기존 폐창호 공간 차폐막이 :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12개소
    - < 벽체하부 기초보강 >
      - 지피콘(GPCON) 주입 89공
    - < 출입구 균열 인방식 보강 >
      - 구조 보강용 H형강 설치 1개소

#### < (참고) 2016년 4차 위원회 검토 시 신청된 사업계획 - 부결 >

- 구 성당 보호각 신설 (1동)
  - 면적 : 198.98㎡
  - 구조 : 철골기둥 20개소,
  - 지붕 : 목재 지붕틀 위 동판+폴리카보네이트 마감
  - ※ 특이사항 : 건물 내부바닥 일부 철거 후 철근기초 타설
- 구 성당 기초보강(89공)
  - 연약지반 하부에 1.5m 간격 지피콘(GPCON) 주입

####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검토 의견('16.11.14.) / 문화재전문위원 ○○○>
- 지붕 양력을 줄이기 위해 좌우벽체에 투명판넬을 설치하되 창호 복원이 너무 장기화되는 경우 밀폐된 환경으로 인하여 지붕 트러스 목재의 부식 등 우려가 있으므로 평상 시 적절한 통풍, 환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다공판넬 적용 또는 지붕부 환기구 설치 등)
  - 인방재 균열 보강 시 기존 목재부재에 비교해 형태와 춤이 상이한 H-형 부재 대신 각재 또는 채널 등의 부재 사용을 검토 바람.
  - 지붕 재료는 사진자료에서 확보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원재료인 합석을 이용하여 복원할 것을 권면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벽체 창호는 태풍시 풍압에 의한 지붕 양력을 줄이면서 밀폐로 인한 부식 우려 없도록 방안 마련토록 함
  - 인방재 균열 보강을 위한 하부 지지재는 H형 부재 대신 문화재 경관과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함
  - 지붕 재료는 고층 등을 통하여 원재료로 재현토록 함
  - 관련분야 위원(전문위원) 자문을 받아 추진하며, 추후 문화재 및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복구는 지양함
- 출석 7명, 조건부가결 7명



**11.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 전남 목포 소재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목적으로 검토 요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목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사적 제289호, '81.09.25 지정)
  -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대의동2가 1-5
- (3) 신청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조정 관련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신축불가			개별심의		
2구역	심의대상	최고높이 7m 이하 (1층)	일부 최고 고도지구 적용 (최고높이 6m이하)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최고높이 10m 이하 (2층)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최고높이 13m 이하 (3층)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한다.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제축은 허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철·성토를 수반하면서, 높이 3m 이상의 절단, 석축, 유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경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계정장 사전 협의함</li> </ul>
-----------------------------	--

- 허용기준구역 변경 조정에 관한 사항 : 별첨 설명자료 참고

**(4) 신청인 의견 (대구시 중구)**

- 문화재 좌우측 2구역(평지붕 : 심의대상, 경사지붕 : 최고높이 7m이하 (1층)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건물이 들어서있으므로 2구역(평지붕 : 최고높이 5m이하, 경사지붕 : 7.5m이하)으로 완화 하여도 문화재 주변 현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 북쪽 지역은 산 정상 부분으로 강화된 부분이지만, 국유지로서 민원발생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6.10.19) / 문화재전문위원 ○○○, ○○○〉

- 문화재의 좌측 3구역(평지붕 : 최고높이 8m이하(2층), 경사지붕 : 최고높이 10m이하(2층))을 기존 2구역(평지붕 : 최고높이 5m이하, 경사지붕 : 최고높이 7.5m이하)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 전면(200m) 도로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 1구역(개별심의구역)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2구역 허용기준(높이)조정
  -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건물들이 들어서있어 평지붕을 심의대상에서 5m로, 경사지붕을 7m에서 7.5m로 조정하여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 남동측에 위치한 전남 문화재자료 제137호 목포진지 주변지역은 도 허용기준(안)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위원 윤인석, 여홍구, 안창모)를 구성하여 검토함
- 출석 7명, 조건부가결 7명

안건번호 근대 2016-06-12

**12.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 대구 중구 소재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목적으로 검토 요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 중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계산동성당 (사적 제290호, '81.09.25 지정)
  - ※ 소재지 : 대구 중구 서성로 20
- (3) 신청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조정 관련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원지형 보존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8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30m 이하 (8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30m 이하	
4구역	관련법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초과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진 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	---

○ 허용기준구역 변경 조정에 관한 사항 : 별첨 설명자료 참고

(4) 신청인 의견 (대구시 중구)

- 조정대상 영역은 이미 고층 아파트, 집합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상문화재는 주변 건물에 의해 일부 차폐되어 있으므로 문화재의 경관 및 조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조정대상 영역은 대구시 도시계획상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주변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이 중복되지 않는 곳으로 완화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6.10.14) / 문화재전문위원 ○○○, ○○○>

- 본 건물은 기 고시된 대구 계산동 성당(사적 제290호)이 「문화재보호법」, 「대구시 문화재보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범위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 5에 대구 계산동 성당은 100m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대구 계산동 성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대구 계산동 성당은 주변에 대구광역시 지정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지 않고 조망성이 미미한 북쪽 일부에 대하여 기존 3구역(평지붕 26m, 경사지붕 30m)에서 4구역(대구광역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대구광역시 지정 문화재와 중복되는 구역은 추후에 대구광역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 시 통합으로 조정 검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위원 ○○○, ○○○, ○○○)를 구성하여 검토함
- 출석 7명, 조건부가결 7명

**13.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 전북 익산시 소재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목적으로 검토 요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익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나바위성당 (사적 제318호, '87.07.18 지정)
  -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 (3) 신청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조정 관련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5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동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제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함
--	--	---

○ 허용기준구역 변경 조정에 관한 사항 : 별첨 설명자료 참고

(4) 신청인 의견

- 나바위성당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확대에 기존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성당의 남측은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대부분이며, 동·서·북편은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음(2009년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당시 여건과 변경된 사항 없음)
- 기존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준용하고 외곽으로 확대되는 지역은 익산시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가능한 3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1구역은 성당 남측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구획하였고, 현 건축물의 높이를 감안하여 최고 2층 높이까지 허용하고자 하며, 2구역은 문화재구역(보호구역)으로부터 100~300m이내 지역으로 구획하였으며, 5층 이하까지 건축을 허용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근대문화재과>**

-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의 보호구역이 추가적으로 지정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6-63호/2016.8.17) 됨에 따라 후속적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 확대와 허용기준 구역의 범위 등 제조정은 필수적인 사항임 (허용기준구역도 관련)
- 보호구역 신설과 관련하여 면적이 증가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허용기준구역은 대부분이 경지 정리된 농지이며 3구역(관련법 적용 지역)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하며 적절한 조정안 인 것으로 사료됨 (허용기준 관련)
- 현행 허용기준 상 1구역 및 2구역에 있던 높이 기준과 층수 기준 중 층수 기준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준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적정한 조정안 인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위원 ○○○, ○○○, ○○○)를 구성하여 검토함
- 출석 7명, 조건부가결 7명

안전번호 근대 2016-06-14

**14.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사적 제443호 「구 도립대구병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 대구 중구 소재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사적 제443호 「구 도립대구병원」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목적으로 검토 요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및 「구 도립대구병원」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 중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사적 제442호, '03.01.28 지정)
    - ※ 소재지 :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 670
  - 구 도립대구병원 (사적 제443호, '03.01.28 지정)
    - ※ 소재지 : 대구 중구 동덕로 130
- (3) 신청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조정 관련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 건축물허용용도 : 학교(대학교), 의료시설(종합병원)		○ 개별심의 ○ 허용용도 : 학교(대학교), 의료시설(종합병원), 공공용시설	
2구역	○ 건축물최고높이 : 25m 이하, 양각 7°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		○ 건축물최고높이 : 25m 이하, 양각 7° 이하 ○ 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	
3구역	○ 심의구역 ○ 건축물허용용도 : 공공용시설		○ 개별심의 ○ 허용용도 : 공공용시설	

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최고높이 : 50m 이하</li> <li>○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최고높이 : 50m 이하</li> <li>○ 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li> </ul>
5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최고높이 : 37m 이하</li> <li>○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최고높이 : 37m 이하</li> <li>○ 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li> </ul>
6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최고높이 : 40m 이하</li> <li>○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숙박시설, 위탁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최고높이 : 40m 이하</li> <li>○ 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숙박시설, 위탁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li> </ul>
7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최고높이 : 66m 이하</li> <li>○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최고높이 : 66m 이하</li> <li>○ 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li> </ul>
8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최고높이 : 66m 이하</li> <li>○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li> </ul>	< 구역 통합 8구역 → 7구역 >
9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최고높이 : 65m 이하</li> <li>○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li> </ul>	< 구역 통합 9구역 → 7구역 >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li> <li>○ <b>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단지개발의 경우 개별 심의</b></li> <li>○ <b>의장제는 반사되는 재료의 사용을 금함</b></li> <li>○ <b>옥상 플랫폼(F.R.P)는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b></li> <li>○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건축 허용</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규모 내에서 개·건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b>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b></li> <li>○ <b>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b></li> <li>○ <b>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파 사전 협의함</b></li> </ul>

○ 허용기준구역 변경 조정에 관한 사항 : 별첨 설명자료 참고

(4) 신청인 의견 (대구시 중구)

- 조정대상 영역(기존 8구역, 기존 9구역)은 이미 고층 아파트, 집합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상문화제는 수목에 의해 차폐되어 있으므로 문화제의 경관 및 조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6.09.02) / 문화재전문위원 ○○○, ○○○>

- 전반적으로 조정취지(도심 평지형 근대건축의 입지특성 고려, 지역 개발 현황 및 가능성 고려, 개정된 지침의 준용여부 등) 부합도 양호.
- 문화재보호조례(반경),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던 지침(별표5), 그리고, 도심 평지형 입지여건(도시계획 및 개발가능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반경 100m 주변으로 허용기준 작성 고려.(기존 도곽 준용 및 100m단위 경계표현 바람직, 변화경도 비교분석 고려)
- 별도의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단위 근대건축의 장소성(상징성) 확보 및 훼손화 방지를 위한 완충공간 및 주 조망축 확보 필요(1구역 개별심의구역 설정 양호), 마루선 확보(배경보존)를 위한 우측면 2구역 최고고도제한 양호.(단, 최고높이는 여타 사례, 양각, 스카이라인 등 추가 고려 요망)
- 지침에 의거, 도로(대로)이면 지역의 경우 타 법령에 따른 처리구역으로 조정가능(단, 도로포함여부 등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추가 검토 필요)
- 공통사항은 최대한 직접적 적용이 이루어지는 항목만 반영하고, 용도 및 디자인관련 사항은 적용한계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양(개별심의구역 및 허용기준 초과 대상은 별도 허가심의과정에서 검토가능)함.
- 가독성 및 관리효율성을 고려하여 도로를 포함하여 구역을 설정하며, 표현은 최대한 관계 법령(건축법 등) 및 지침(경사지붕, 공통사항 등)을 준용하여 적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위원 ○○○, ○○○, ○○○)를 구성하여 검토함
- 출석 7명, 조건부가결 7명

**15. 사적 제31호 「독립문」의 30개소 사적 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사적 제32호 「독립문」의 30개소 사적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목적으로 검토 요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독립문」의 30개소 사적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독립문 (사적 제32호, '63.01.21 지정) 등 31개소 사적 (세부내역 : 붙임 1참조)
- (3) 신청내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별 세부내역 : 붙임 2참조)

**< 문 구 조 정 (공 통 ) >**

- 국보, 보물, 사적 등 타 부서 운용기준 용어와 통일 (**문화재청 용어기준 통일**)
  - 기존) 신축금지, 심의구역, 원지형보존 등 → 변경) “개별심의”
  - 기존) 관련법규, 관련법규 준용 → 변경) “○○○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구역별 ‘높이’ 및 ‘층수’ 제한기준 중 **실효성이 부족한 ‘층수’ 기준 삭제**
  - 기존사례) 건물높이 8m (2층 이하) → 변경사례) 건물높이 8m
- 허용기준 중 공동사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상 적용 대상 내용을 반영
  - 반영)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반영)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반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반영)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반영)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개별심의 구역 내)
- 반영)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검토의견**

**< 근대문화재과 >**

- 국가지정문화재를 관할하는 각 부서(국보,보물-유형문화재과, 사적-보존정책과,근대문화재과,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과)별로 운용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용어가 달라 지자체나 민원인들이 혼선이 있으므로 부서별 용어기준을 통일하고, 이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층수 기준을 삭제시키고 높이 기준만으로 통일하여 대국민 편의성과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지침에서 제시되는 문구 등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 사항들은 용어 통일과 실효성 없는 기준을 삭제하며, 지침 상 준용하여야 하는 내용들의 반영 등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검토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위원 ○○○, ○○○, ○○○)를 구성하여 검토함
- 출석 7명, 조건부가결 7명

[ 붙임 1 ]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대상 문화재 내역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시·도	시·군·구	비고
1	32	서울 독립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157	환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3	171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4	213	서울 우정총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5	248	서울 대한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6	252	서울 약현성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7	253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8	254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9	256	서울 정동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10	258	서울 명동성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11	275	서울 연세대학교 스텝스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2	276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3	277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4	278	구 서울대학교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5	279	구공업전습소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6	280	서울 한국은행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7	281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8	282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9	283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	284	구 서울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21	285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2	286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3	287	인천 답동성당	인천광역시	종로구	
24	288	전주 전동성당	전라북도	전주시	
25	291	창원 진해유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26	324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7	438	안국동윤보신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28	465	서울 경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29	497	서울 이화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30	520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31	521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 붙임 2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3) ]

【허용기준 공통사항】

※ 공통사항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한다.

※ 별표( \* ) 표시는 거리 또는 구역단위로 선택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기존 건축물의 허용범위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전체 유형
최고높이 기준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전체 유형
시설제한*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 (동굴, 번식지, 서식지 등)
절·성토 범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벌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풍수적 관계 및 지형과의 관계 등을 중시하여 원지형 유지가 필요한 문화재
건축규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건축규모 제한 또는 저층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전체 유형
매장문화재 보호*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임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
건설공사 및 토목시설물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전체 유형
도시계획 변경시*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기타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지역/ 도시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한 경우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대상 문화재 내역**

<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신축금지	기존 건축물 규모 내재·개축 허용	기존 건축물 규모 내재·개축 허용	개별심의 (원지형보존)		
2구역	심의구역			개별심의		
3구역	관련법규 준용			서울시(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동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개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사적 제157호 환구단 / 사적 제253호 서울 구 리시아공사관 /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신축금지	기존 건축물 규모 내재·개축 허용	기존 건축물 규모 내재·개축 허용	개별심의 (원지형보존)		
2구역	심의구역			개별심의		
3구역	관련법규 준용			서울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동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개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	--	--	--	--	--

<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어극40년청경기념비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원지형보존	기존 건축물 규모 내재·개축 허용	기존 건축물 규모 내재·개축 허용	개별심의		
2구역	관련법규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동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개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사적 제213호 서울 우정총국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개별심의		
2구역	관련법규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개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원지형 보존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개별심의 (원지형 보존)		
2구역	심의구역			개별심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개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	--	--	--	--	---

<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개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사적 제254호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심의구역			개별심의		
2구역	양각적용(양각 27° 적용)			양각적용(양각 27° 적용)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5구역	관련법규			서울시(관악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판연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li>○ 양각 적용기준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를 참조</li> </ul>		

< 사적 제256호 서울 정동교회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원지형 보존			개별심의 (원지형 보존)		
2구역	심의구역			개별심의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층 이하)	재·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판연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사적 제258호 서울 명동성당 /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심의구역			개별심의		
2구역	관련법규 준용			서울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판연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ul>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사적 제275호 서울 연세대학교스튜던스관 / 사적 제276호 서울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사적 제277호 서울 연세대학교아펜젤러관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개별심의		
2구역	관련법규			서울시(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li> <li>○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제축을 허용함 (1구역)</li> <li>○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 사적 제279호 구 공업전습소 본관  
사적 제497호 서울 이화장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개별심의		
2구역	관련법규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li> <li>○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제축을 허용함 (1구역)</li> <li>○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	--	--	--	--	--

< 사적 제281~283호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관, 동관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신축금지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0m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4구역	관련법규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li> <li>○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li>○기존 건축물 규모 내의 재·개축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제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li> <li>○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li> </ul>		

		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 사적 제285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 사적 제286호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개별심의		
2구역	관련법규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원지형보존, 심의구역		기존 건축물 규모 내의 재·개축 허용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그외 지역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인천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원지형보존, 신축불가		기존 건축물 규모 내의 재·개축 허용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사적 제339호 등 타 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사적 제339호 등 타 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5구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준함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보호 구역	신축불가			개별심의		
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2층 이하)	기존 건축물 규모 내의 재·개축 허용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2구역	최고높이 16m 이하 (4층 이하)	최고높이 19m 이하 (4층 이하)		최고높이 16m 이하	최고높이 19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24m 이하 (6층 이하)	최고높이 27m 이하 (6층 이하)		최고높이 24m 이하	최고높이 27m 이하	
4구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처리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li> <li>○ 건축물의 일부가 구역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보호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	---

<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신축금지		기존 건축물 규모 내 재·개축 허용	개별심의		
2구역	관련법규			서울시(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사적 제438호 안국동 윤보선가 >

구분	허용 기준 (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신축금지		복촌지구 단위계획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별심의		
2구역	1층 이하 최고높이 4m 이하	1층 이하 최고높이 6m 이하		최고높이 4m 이하	최고높이 6m 이하	

3구역	2층 이하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제·개축 허용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2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표고 30m 이상 - 2층이하, 최고높이 8m 이하 표고 50m 미만 - 3층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표고 30m 이상 - 최고높이 8m 이하 표고 50m 미만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층지구단위계획,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

구분	허용 기준(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심의구역			개별심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	--	--

<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

구분	허용 기준(현행)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슬라브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비고
1구역	건축행위 시 관계기관과 협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제·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개별심의 구역 내)</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근대 2016-06-16

## 16. 「망월사 칠성각」 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망월사 칠성각」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망월사 칠성각」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의정부 망월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망월사 칠성각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211-500 망월사
  - 소유자 : ○○○
  - 수량 및 면적 : 1동 / 20.17㎡
  - 건립시기 : 초창 1818년, 중건 1879년
  - 구조 : 전통한식 목구조
- (3) 신청내용 : 망월사 칠성각 문화재 등록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 9. 21.)>

- 문화재전문위원 ○○○
  - 망월사 칠성각은 전통건축물로 근대적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며,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유산으로 등록하기에는 맞지 않음. 따라서 지방문화재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전문위원 ○○○
  - 망월사의 칠성각은 1818년 초창되고, 60여년이 지난 1880년 중건되었고, 부분적으로 전통 한식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기존의 구조형식을 따르지 않는 특이함이 보이기는 하지만 칠성각 건축으로서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망월사에 있는 하나의 건물에 대한 특징으로 볼 수 있음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크게 건축물 자체의 건축적 특성과 근대시기의 역사적, 지역적 특성 또는 인물, 사건 등과의 연관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는데, 본 건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



- 문화재전문위원 ○○○
  - 칠성각이 비록 1879년(상량문)에 증건되었다고는 하나 건물의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 근대적인 요소와 특징이 반영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
  - 다만, 부재의 치목과 결구방법 등 전체적인 목구조 구성방식과 보수과정에서 상량문과 함께 발견된 '시주질'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기 증창불사되었던 사찰의 정황을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어 등록문화재 보다는 시·도지정문화재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등록가치 미흡
- 출석 7명, 부결 7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현) 망월사 칠성각 (구) 망월사 칠성각
- 2. 용 도 : (현) 칠성각 (원) 칠성각
- 3.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211-500
- 4. 소유자 :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211-500 망월사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전통한식 목구조
- 준 공 일 : 1818년(嘉慶戊寅) 신축 / 1879(상량문) 중수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20.17㎡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6. 9.21.)**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211-500 망월사 경내에 위치하며 정면3칸, 측면 1칸 맞배지붕 건축물이다. 건물은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2012년 해체보수한 이력이 있다. 해체보수 시 상량문 상궁 시주질이 발견되어 왕실과 관련된 건물로 추정되었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정면3칸, 측면 1칸 맞배지붕 건축물로 칠성각으로서는 규모가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노후화는 거의 없다.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존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다. 기타사항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망월사 칠성각은 전통건축물로 그 건립시기가 1818년이다. 이는 근대적 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며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유산으로 등록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만하다. 따라서 지방문화재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망월사 칠성각 사진>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 등록신청한 칠성각은 의정부시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망월사 안에 자리잡고 있는 전각으로 망월사는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의 말사이다. 기록에 따르면 망월사는 17세기말 숙종대에 중건되었다고 하며, 18세기 이후 몇차례의 중수를 통하여 꾸준히 사세를 유지하고 근세에 들어 1901년의 영산전과 대방에 단청불사, 1906년 불상개금과 탱화를 조성하였다.
    - 1950년 한국전쟁 망월사가 모두 불에 타는 재난을 겪었으나 칠성각은 화계를 피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몇 차례의 중창이 있었고, 1987년 현 선원장 능엄스님에 의하여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통하여 현재와 같은 규모가 되었다.
    - 칠성각의 초창은 칠성각 동쪽 큰바위에 음각으로 새겨진 “嘉慶戊寅 建此星閣”이라는 명문을 참조하면 순조 18년(1818) 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봉은본말사지망월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 2012년 허담스님이 칠성각을 해체보수하는 과정에서 종도리 장려에서 상량문과 상공의 시주질이 함께 발견되었다. 상량문에는 칠성각이 처음 건축된 것은 위의 음각명문과 같이 ‘嘉慶戊寅年(1818)’이라 하였으며, 이후 60여년이 지난 ‘光緒乙卯年(1879)’에 중건하였다고 하였다.
  
  - 당시 함께 발견된 상공시주질에는 다음과 같이 상공 5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 ‘尙宮 戊寅生 金氏 華嚴滋’
    - ‘尙宮 庚寅生 黃氏 華嚴日’
    - ‘尙宮 乙亥生 高氏 淸淨慧’
    - ‘尙宮 壬寅生 金氏 直淨行’
    - ‘尙宮 甲戌生 千氏’
  - 현재 망월사에는 망월사 해거국사 부도 등 8점의 문화재가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데, 3점의 석조물은 1985년 지정되었고 나머지 문화재는 2012년에 지정되었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9세기말 중건된 칠성각은 전통 한식 목구조 건물로 정면 3칸 × 측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양 측면에는 풍관을 달았다.
    - 전면 지붕은 겹치마에 초익공으로 치마를 구성하였고, 후면 지붕은 홑치마에 무익공으로 치마를 구성하여 전후 치마를 달리 구성하고,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건물의 중심에서부터 시가래의 내민 정도는 전면이 길게 되어 있어 특이하다. 이는 전면 외벽체의 설정 위치가 후면보다 짧기 때문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전면 치마를 높게 구성하고 햇볕을 잘 들게 할 수 있고 후면은 서가래를 길게 내밀어 우수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전면 평주의 높이가 후면 평주보다 높게 하였다. 전면 평주는 원주이고 후면 평주는 각주인 것도 전후면 위계차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 내부공간의 경우 대들보 측면 높이에 우물천정이 시설되어 지붕구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측도면을 참고하면 단순한 3량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초익공 내부 보아지는 단순한 관형으로 보를 받치고 있다.
    - 양측면 풍관 아래에는 화방벽을 쌓아 화재나 우수에 대한 침해를 막고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818년 초창된 건물로 1880년 완송선사가 중건하였다고 기록으로 전한다.
    - 초창 당시 어떠한 형식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건물은 1880년 중건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12년 해체보수 공사를 통하여 노후화되거나 부식되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부재를 전면적으로 교체하였다.(공사비 2억 2500만원)
    - 당시 보수공사는 시가래 이상의 부재와 창방 등 부재와 함께 일부 기둥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로 마루를 새로 깔고 장호를 새로 다는 등 거의 중건공사에 준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 이에 따라 현재 건물의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고, 단청도 새로이 칠하여 세건물과 같이 외관으로 보아서는 그 이력을 알기 어렵다.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주지스님이 부임한 이래 문화재 지정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찰 신도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따라서 관리 여건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 또한 도봉산 산중 등산로변에 위치하여 신자들과 등산객 외의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으므로 주변환경은 매우 좋다.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규모가 작은 사찰내의 한 건물로 사찰에서 치르는 행사에 본 칠성각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 복두성상(독성)을 모시는 칠성각의 건물의 성격상 용도 자체를 바꾸어 다른 건물로 전용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건물의 활용계획 자체가 사찰 전체의 활용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필요로 한다.
- 다. 기타사항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칠성각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은 없다.
  - 다만, 지방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2동의 건물이 있을 뿐이다.
  - 원효암 칠성각 : 경남 문화재자료 제15호
  - 진관사 칠성각 : 서울 문화재자료 제33호
  - 위 두 건물중 원효암은 원효대사(의상대사)가 수도한 곳으로 창건시기는 알 수 없지만 건물 형식은 전면 3칸 × 측면 2칸 팔작지붕으로 2억공 건물로 조선후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 진관사 칠성각은 근대기인 대한제국(1907)에 건축된 것으로 전하는데, 전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으로 본 건물과 유사한 모습이다.
-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등록문화재 신청한 망월사의 칠성각 건물은 한식 목구조 건물로서 바위에 음각된 명문과 상량문을 통하여 1818년 조창되고, 60여년이 지난 1880년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크게 건축물 자체의 건축적 특성과 근대시대의 역사적 지역적 특성 혹은 인물 / 사건 등과의 연관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는데, 본 건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 부분적으로 전통 한식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기존의 구조형식을 따르지 않는 특이함이 보이는 하지만 칠성각 건축으로서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망월사에 있는 하나의 건물에 대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전후면 벽체의 위치를 대칭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전면 벽체를 안쪽으로 들여쌓아 높게 하고, 겹처마로 처리함으로써 전면의 개방감을 확보한 것은 특이하다.
  - 본 건물과 같이 전통사찰에서 주요 전각 외 부속 건물에 대한 등록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웅전 등의 불전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승격된 이후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 전국적으로 산재한 많은 전통사찰에는 건축된 지 50년이 경과한 꽤 많은 부속 건물이 있는 까닭에 이러한 방식으로 등록신청한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직접 조사 이전에 지자체의 자체 조사가 우선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적으로 50년이 경과한 것에 더하여 역사적 사실/사건 혹은 인물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와 소유자가 함께 신청하는 방식 등)
-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 망월사(望月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本寺)인 봉선사(奉先寺)의 말사(末寺)로 경기도 의정부시 도봉산의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망월사는 639년(신덕여왕 8년)에 신라 왕실의 용성을 기리고자 해호화상(海浩和尙)이 건립하였으며, 신라의 도성(都城)인 경주 월성(月城)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여 사명(寺名)을 '望月寺'라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망월사는 중창(重創)과 중건(重建)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져 오고 있으나 경내에 현존하는 전각(殿閣) 중 칠성각(七星神)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한국전쟁때 훼손되어 그 이후에 새롭게 건립된 것들이다. 칠성각은 도교에서 유래한 칠성신(七星神)을 모신 전각으로 칠성신은 민간에서 재물과 재능을 주고 수명을 늘려주며 비를 내려 풍년이 들게 해주는 신으로 믿어왔다. 칠성각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몇몇 기록을 근거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칠성각 오른쪽 바위에 새겨진 '嘉慶戊寅建此星閣'의 내용과 2012년 해체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의 '此七星閣也 初建於嘉慶戊寅年' 기록에 의하면 '가경년(嘉慶年間, 1796~1820)의 무인년(戊寅年)인 1818년에 창건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이는 「奉恩寺本末寺誌」에 기록된 '純祖十八年戊寅寺僧建七星閣' 중 순조18년(1818년)의 연도와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奉恩寺本末寺誌」의 기록 중 '高宗十七年庚辰八月松禪師重建七星閣'에 의하면 고종17년 즉, 1880년에 칠성각에 대한 중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상량문(重建於光緒己卯年)에는 중건 연도를 1879년으로 기록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체수리 과정에서 상량문과 함께 시주질(施主秩)이 발견되었는데 칠성각 중건에 5명의 상궁(尙宮)이 등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칠성각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정면은 겹처마, 배면은 홑처마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가구는 3량가(梁架)로 정면에는 원주(圓柱), 배면에는 각주(角柱)를 사용하였으며 원주 상부에는 사괘를 만들어 초익공 형태의 처마와 창방을 결구하고 그 위에 주두를 놓아 대들보로 하여금 처마도리(골도리)를 받게 하였는데, 이와 달리 배면은 비교적 단순하게 각주 위에서 직접 처마도리(납도리)와 대들보를 결구시켰다. 또한, 2칸으로 구성된 측면 주간의 경우 후면이 전면에 비해 크게 구획되어 있지만 전면은 겹처마, 후면이 홑처마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지붕의 길이는 후면에 비해 전면이 길게 처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축조방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면과 배면에서 서로 다른 가구축조 방식과 외장 수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중수과정에서 변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전언(傳言)에 의하면, 1879년(상량문) 중건 당시 칠성각 건물은 모두 훼손되어 초석만이 남아 있어 초석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현재의 건물을 세웠다고 한다. 초석은 모두 방형으로 다듬어 사용하였는데 그 상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지게 구배를 주어 초석에 빗물이 떨어지게 되면 밖으로 흐르게 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정은 연등천정으로 구성하였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칠성각이 1818년 창건된 이후 어느 시기에 훼손된 것을 1879년(상량문)에 중건하였던 것으로 보아 현재의 모습이 창건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또한, 중건 당시 남아 있었던 초석 위에 건물을 건립하였다고는 하나 당시의 기록이 현존하고 있지 않아 현재의 칠성각 모습을 통해 중건 당시의 원형유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칠성각에 대한 원형보존 및 변형 문제는 건축물의 내력과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진 후에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2012년에 개·보수공사를 거쳐 현재 건물의 보존, 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칠성각은 망월사 경내에 현존하는 시설물 중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건물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려는 소유주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고 또한, 지리적 위치로 보아도 개발 압력 등 외부의 부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관리 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칠성각은 도교에서 유래한 칠성신을 모신 전각으로 현재 전통 사찰의 칠성각이 등록 문화재로서 등록된 사례는 없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칠성각이 비록 우리나라의 개항 시점 이후인 1879년(상량문)에 증건되었다고는 하나 건물의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 근대적인 요소와 특징이 반영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부재의 치목과 결구방법 등 전체적인 목구조 구성방식과 보수과정에서 상량문과 함께 발견된 '시주필'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기 중창물사 되었던 사찰의 경황을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어 등록문화재 보다는 시·도지정문화재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안건번호 근대 2016-06-17

## 17.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해병대사령부
- (2) 대상문화재명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가 2-18번지
  - 소유자 : 국방부
  - 수량 및 면적 : 1동 / 250.80㎡
  - 건립시기 : 1959년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3) 신청내용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문화재 등록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 9. 6.)>

- 문화재위원 ○○○
  - 한국전쟁기에 발족한 군대 내의 교회 조직에 필요한 건축물을 세웠던 상징성과 강군건설의 원동력이었던 신앙의 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1959년 건축된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소규모 교회로 해병대의 군중사적 발원지라는 의미와 해병대의 역사, 흔적이 배어있는 장소적, 공간적 가치를 지닌 건물임
  - 현재 일부 내·외부 마감 재료가 변경되었지만 신축 당시의 구조, 규모, 형태 등을 유지하며 건축 원형의 보존 및 활용여건도 양호하므로 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한국전쟁 중에 창립된 해병대사령부 최초 교회로서의 상징성과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군인교회로서 군중사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어 등 록문화재로서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구)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2. 용 도 :** (현) 교회 (원) 교회

**3.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용산대로 2가 2-18 일대

**4. 소유자 :** 국방부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 준공일 : 1959년 12월 31일
- 수량 및 면적 : 1동, 면적 250.8㎡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016.09.06)**

**<문화재위원 ○○○>**

**1) 개요**

한국전쟁 중에 진해에서 창설된 해병대 사령부 교회가 부산에서 임시로 지어 사용하던 장막교회, 흰색교회를 거쳐, 사령부가 서울로 옮겨 오게 됨에 따라 현재의 건물을 건설하여 오늘에 이른다. 다만 1973년 10월에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교회의 기능마저 끊겨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2001년 4월에 교회역사를 조사하던 한국기독교회 신교회에서 원위치에 옛 모습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 철차를 밟아 2003년 중수공사 후 교회로서 기능을 회복하였다. 2010년에는 건물의 안전도를 검사를 통하여 원형을 보존한 채 중수보강하여 그해 11월 9일에 중수현당예배를 올렸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해병대 공병감실에서 설계하여 당시의 군부대 내의 시설물로 간단히 건축할 수 있는 수준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주요 구조는 시멘트 블록으로 벽체를 축조하고 부속 기능을 설치하여 구조보강을 하였다. 목조트러스로 지붕을 구성하고 있고 창은 뽕쪽 아치로 설치하여 군부대 내에서 기독교 건축임을 외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중수공사에서 내부 마감재료를 바꾸었고 구조보강을 위하여 외관의 일부(부속벽, 처마의 테두리 등)에 마감이 덧붙여져 있으나 신축준공 당시의 구조와 규모,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한국 해병신교회에서 교회관리와 종교행위를 전담하고 있고 교회역사 자료수집, 정리, 전시하고 있어 보존관리는 지속적,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인접대지에 위치한 두 채의 건물인 “해병대 구 본청사”(1956년 건축, 현 방위사업청), “해병대 기념관”(1975년 4월 15일 준공)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해병대 초대교회와 함께 세 건물을 일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병대 구 본청사는 1955년 부산에서 서울 남산으로 이동한 해병대 사령부가 1956년에 용산으로 다시 이동하여 갖게 된 청사로서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될 때 까지 한국 해병대의 얼이 깃든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해병대 기념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와 해병대의 모금으로 건립된 것으로 1970년대 초반의 모더니즘 계열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건물 주변의 조정 또한 함께 등록하여 구 본청사 전면의 국기계양대, 기념관 주변의 전적비, 장갑차 등을 함께 등록보존 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보존관리 계획이 본 유구와 부합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향구적인 종교행위와 그에 관련 있는 인사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같은 경내 인근 건물에 해병대 역사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관람동선 유치와 관리로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한국 전쟁 복구에 민간에서 군대의 도움을 받아 축조된 교회, 성당 등은 쉽게 볼 수 있으나, 군부대 내에 설치된 교회건축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사례가 드문데, 해병대 공병감실의 설계로 상전기업 주식회사라는 건축관련자들이 밝혀져 있고 보존 상태가 좋은 상태로 현존하고 있는 근대기 자료이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한국전쟁기에 발족한 군대 내의 교회조직에 필요한 건축물을 세웠던 상징성과 강군 건설의 원동력이었던 신앙의 근거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1)안)구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

2)안)구 해병대 사령부 구 청사 및 부속건물군(구 청사, 기념관, 초대교회)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해병대사령부 교회는 1949년 4월 진해에서 해병대가 창설된 후 한국전쟁 중 1951년 3월 12일 창립되었으며, 이후 해병대사령부와 함께 1951년 5월 부산으로 이전.
- 해병대사령부가 1955년 3월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서 1956년 6월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를 현 위치에 쉼터 건물로 건축.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임시용 쉼터 건물을 헐고 영구적 건물을 신축하여 1956년 12월 31일 헌당하였으며, 이 건물이 현존.
-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다 2001년 한국기독교병신교회에서 건물 존재를 발견하고 기념비를 건립.
- 2003년 내외부 복원, 중수공사를 거쳐 교회 용도로 복원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용 중.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1949년 해병대 창설 직후 한국전쟁 당시 1951년 종교를 통한 정신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창립된 교회로, 이후 신앙전력화의 근원지 역할을 하였다는 군중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

- 해병대 공병감실이 설계하고 공사비 14,098,353환(換) 규모로 상전기업주식회사(대표 김덕준)이 시공하였으며 1959년 11월 14일 착공하여 1959년 12월 31일 준공. (해군 군중사 제1집 44쪽 기록 참조)
- 장축 19m, 단축 17.4m의 소규모 교회로 바실리카(basilica)식 장축형 십(十)자형 평면을 구성하였으며 내부는 예배실을 중심으로 양측에 목사실과 준비실을 각각 돌출시켜 형성하고 예배실은 신앙과 축랑의 구분이 없는 통간(通間)형 공간을 형성.
-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식 구조로 기둥과 보를 철근콘크리트로 구성하고 외벽은 시멘트 블록으로 채웠으며 지붕은 목조트러스로 가설.
- 기본적으로 고딕양식을 추구한 교회이지만 당시 일반적인 적벽돌 조적조가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라멘식 구조체와 시멘트 블록조 외벽에 의해 고딕양식을 구현.
- 시멘트 블록조 외벽체는 출입구 및 창문을 일반적인 상인방(上引枋) 기법에 의해 형성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 접두형 아치 형태로 형성함으로써 고딕적 분위기와 종교적 상징성을 강조.
- 특히 정면 주출입구는 대형 접두형 아치 구조체를 여러 겹 중첩시킨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진입성과 상징성을 더욱 강조.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방치, 훼손되었던 건물을 2003년 내외부 복원공사를 통해 원형을 회복하고 활용하였으며, 2010년 기둥 구조보강, 지붕보수 등의 공사를 시행.
- 외관은 지붕, 기둥 등에서 일부 마감재료가 변형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는 전체적으로 마감재가 변경되었지만 교회의 공간적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
- 2003년 이후 교회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며 유지, 관리되고 있으므로 일부 재료가 변경된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후화, 훼손된 부분이 없이 원형 유지 및 보존상태가 양호.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해병대 측에서 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등록시 문화재로서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건물 입지는 현 방위사업청 부지내에서 주변 건물들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등록시 문화재 보존관리를 저해할만한 주변환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해병대측에서는 교회로서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로 보존하며 본래 용도 그대로 활용하는 매우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해병대측에서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 보존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장래 문화재로서 활용계획은 충분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해병대 관련 등록문화재로는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등록문화재 제410호, 한국전쟁 당시 건축)의 사례가 있고 군 종교 관련 등록문화재로는 남제주 강병대교

회(등록문화재 제38호, 1952년 건축)의 사례가 있음.

-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식 구조체와 시멘트 블럭조 외벽에 의해 고덕양식을 구현하며 1959년 건축된 소규모 교회로 현재 일부 내외부 마감재료가 변경되었지만 신축 당시의 구조, 규모, 형태 등을 유지하며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해병대 창설 직후 한국전쟁 중 창립된 교회로 신앙전력화의 근원지 역할을 하였다는 군중사적 가치와 해병대 사령부의 역사와 흔적이 배어있는 장소적, 공간적 가치를 지닌 건물.
  -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해병대의 역사, 흔적을 보여주는 장소 및 공간이자 군중사적 발원지라는 의미를 지닌 건물이고 또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장래 문화재로서 지속적 보존 및 활용여건도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병대사령부가 위치한 장소는 과거 해병대사령부였지만 현재 방위사업청으로 활용중이며, 과거 해병대사령부 유적으로는 초대교회 이외에도 당시 본관(현재 방위사업청 본관, 1956년 건축), 해병대박물관(1975년 건축) 등이 남아 있음.
  - 현 방위사업청 본관은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해병대박물관은 내부에 다수의 군사유물과 주변에 장갑차, 전투기기념비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등록문화재로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등록신청 관련서류에는 명칭이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와 해병대 초대교회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데, 등록시에는 공식적 명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해군 군중사 44쪽 내용에 보면 건평 60여평 규모로 최초 건축된 것으로 기록된 반면에 첨부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250.8㎡(76평) 규모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동 교회건물은 1959년 현재의 위치에 건립된 해병대 교회로서 해병대사령부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49년 4월 15일 해병대가 진해 덕산 비행장에 창설됨에 따라 1951년 3월 12일 '해병대 초대교회'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전쟁 직후 해병대사령부가 현재 방위사업청 부지로의 이전에 맞춰 '장막교회'와 '핀셋교회' 등을 거쳐 1959년 12월 31일 영구적인 건물로 오늘날의 모습으로 건립되었다. 당시 교회건물의 설계는 해병대 공병감설, 시공은 상진기업주식회사 맡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으나, 오늘날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 후,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됨과 동시에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오랜 세월 동안 기무사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 2003년 4월 7일 해병대 창설 제54주년을 기념하여 훼손, 변형된 교회건물을 중수하여 예배당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 시기 교회 명칭은 '방패교회'로 불렸으나 2005년에 이르러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의 명칭을 회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전언(傳言)에 의하면, 해병대사령부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할 당시 부지 내 제일 높은 곳에 교회 터를 마련하고 그 주변으로 다수의 시설물을 배치하였다고 하는데 오늘날

에도 시계(視界)가 양호한 경우에는 멀리 인천 앞 바다도 조망할 수 있다고 한다. 교회건물은 일반적인 장방형의 평면에 내부는 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의 강론대를 중심으로 좌·우측면에 별도의 공간인 목양실이 덧붙여져 있어 소위, 바실리카식의 십자형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다. 건물의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지붕가구는 목조지붕틀(천정이 설치되어 정확한 형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트러스 구조로 보인다)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개관을 깔고 형상을 덮었으며 벽체는 시멘트 블럭으로 마감 처리하였다. 외벽의 양 측면에는 벽돌로 부속벽을 만들어 시각적인 안정감을 더하고 있는데 건물의 네 모서리 부분에서는 철근콘크리트의 기둥 외부에 벽돌을 쌓아 마감하였다. 또한, 중앙의 출입문과 창문은 절두아치 형태로 장식하였으며 북쪽 벽면에는 수직창을 내어 실내로의 자연스러운 채광을 유도하였다. 교회 내부에는 700여명의 전·사상자를 낸 도솔산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서 자란 고로쇠나무로 만든 기념비적인 십자가가 모셔져 있어 군 교회로서의 상징성을 더 해 주고 있으며, 출입문쪽 외벽 하단부에는 건물 준공일(1959년12월31일)에 맞춰 해병대사령부 제2대 사령관 김석범 중장이 쓴 머리돌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동 교회 건물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1973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차례(2003년, 2005년, 2010년)의 크고 작은 중수(重修)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마감의 변형(바닥, 벽체, 천정 등)이 있었고 구조보강을 위해 외관 일부(부속벽 및 지붕, 처마 등)에 마감이 첨가되었으며 또한, 출입문 상부에 차양시설인 캐노피를 설치하는 등 교회 입구와 계단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였으나 기본적으로 1959년 신축당시의 구조와 규모,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교회의 기능이 상실된 이후 30여년 시간동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일부 변형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원형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려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노력들로 보아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한 오늘날에도 해병을 양성한 신앙전력화의 근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해병대사령부의 초대 교회로서 상징성이 크며 군 기독교 종교유산이라는 측면에서 기타 교회와 비교되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군 기독교 종교유산으로는 등록문화재 제38호로 등록된 '남제주 강병대 교회'의 사례가 있다.
- 6)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동 교회는 한국전쟁 중에 창립된 해병대사령부 최초 교회로서의 상징성과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군인교회로서 군중사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어 등록문화재로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동 교회와 인접해 있는 '구 해병대사령부 본부(1956년 건립)'와 '해병대기념관(1975년 건립)' 역시 해병대 교회와 함께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별도로 등록문화재로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7)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서울 해병대 초대교회'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18. 「봉화 척곡교회」 등록문화재 등록구역 확대**

**가. 제안사항**

-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등록문화재 제257호 「봉화 척곡교회」(2006.06.19. 등록)의 등록구역 확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등록문화재 제257호 「봉화 척곡교회」의 등록구역 확대 신청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등록문화재 등록구역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봉화군
- (2) 대상문화재명 : 봉화 척곡교회 (등록문화재 제257호)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833-1, 833-3번지
  - 소유자 : ○○○
  - 확대면적 : 763.62㎡
    - \* 「봉화 척곡교회」 등록문화재 등록현황
      - 건립시기 : 1909년
      - 등록일자 : 2006. 6. 19.
      - 등록현황 : 2동(예배당, 명동서숙), 연면적 113.38㎡
- (3) 신청내용 : 봉화 척곡교회 등록문화재 등록구역 확대
- (4) 신청사유 : 2006.06.19.에 등록문화재 제257호로 등록되었으나, 등록 당시 문화재구역이 예배당과 명동서숙의 건물면적만 등록되어 소중한 문화자산의 보존·관리에 한계가 있어 교회 마당을 문화재구역으로 확대, 편입하여 초기 교회의 원형을 되찾고 문화재 보존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하고자 함.
  - 활용계획 : 옛 담장 복원 등을 통한 원형 회복,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 등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 8. 31.)>**

- 문화재위원 ○○○
  - 척곡교회의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들을 사후에 받아 본 결과 담장의 정확한 위치를 확정할 수 없으며, 그 유구 또한 남아 있지 않음.
- 문화재의 소유자는 그간 심하게 변형된 교회 주변을 옛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뜻에서 인접건물을 재현하고 담장 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원래대로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등록문화재의 보호구역 설정 방법(대상건축물, 구조물 중심의 지정 혹은 이를 포함하는 필지 중심의 지정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봉화 척곡교회의 문화재 구역 확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보호대상물(담장 등)의 가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현재 대상지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구조물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임. 따라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자료 및 현황 확인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척곡교회의 초기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지가 확고하나 1909년 건립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마당을 포함한 주변지형에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소유자의 주장대로 건립 당시 축조되었던 보이는 예배당의 담장은 대지의 경계를 구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부속시설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만 현지점에서 담장의 규모 및 공간적 범위를 알 수 없어 초기 모습으로의 회복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므로 등록범위 확대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등록문화재 진정성 및 활용성을 고려한 등록구역 확대 기준안 마련 후 재검토함
- 출석 7명, 보류 7명



# 문화재 등록구역 확대 조사보고서

- 1. 명 칭 : (현) 봉화 적곡교회 (구) 봉화 적곡교회
- 2. 용 도 : (현) 종교시설(교회) (원) 종교시설(교회)
- 3.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적곡리 833-1, 833-2
- 4. 소유자 : ○○○

## 5. 건축물 개요

- 등록구역 신청 면적 : 763.62㎡
- ※ 등록문화재 제257호 「봉화 적곡교회」 등록 현황
  - 건축구조 : 목조 기와(예배당) 목조 초가(명동서숙)
  - 준공일 : 1909년
  - 수량 및 면적 : 예배당 1동(면적 113.38㎡), 명동서숙 1동(면적 40.6㎡)

## 6. 조사자 의견(2016. 8. 31.)

### <문화재위원 ○○○>

- 본 검토 건은, 이미 등록문화재 제257호로 등록된 적곡교회 건물 주변에 원래 설치되어 있었다는 담장을 재현하기 위하여 건물만 등록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해당 대지까지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 건조물 문화재 등록은 당해 건축물만을 등록하여 왔으며 문화재 보수, 수리에서 예산 지급 등에서도 건축물에 한해서만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왔다.
- 적곡교회의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들을 사후에 받아 본 결과 담장의 정확한 위치를 확정할 수 없으며 그 유구 또한 남아 있지 않아 원래대로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재의 소유자는 그간 심하게 변형된 교회 주변을 옛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뜻에서 인접건물을 재현하고 담장 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문화재 등록법위를 변경하면서까지 국가의 수리예산이 지급될 조건으로 변경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 봉화 적곡교회는 2006년 6월 19일 등록문화재 제 257호로 등록되었으나 해당 건축물(예배당, 명동서숙)만을 등록문화재(97.38㎡)로 지정한 바 있음. 이에 건축주는 문화재 보존 및 관리상의 문제를 이유로 기존문화재에 대한 보호대상 구역확대(97.38+763.62=861㎡)를 요청함.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2006년 6월 19일 등록문화재 제257호로 등록시 자료 참고
  -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신청의 이유로 833-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예배당과 이와 함께 존치했던 담장에 대한 가치와 이를 근거로 보호구역 확대를 요청.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예배당 관련 담장자료(사진 등) 참고.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2006년 6월 19일 등록문화재 제 257호 지정 이후 2009년 명동서숙에 대한 원형보수 공사(초가)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예배당 복원공사를 완료하면서 지형 평탄작업 등 토목공사를 통한 주변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임.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봉화 적곡교회는 건립 당시 예배당 건물 주위에 토석 담장과 출입문(숯을대문)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담장 등에 대한 원형 복원계획을 갖고 있음.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상기 (담장)복원계획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해당 문화재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주변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담장은 주변지형과 건축물과의 관계(환경, 공간적 성격)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원지형 및 담장에 대한 자료의 확보가 필히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자료의 경우 이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며, 2009년, 2015년 명동서숙, 예배당 복원공사 때 원지형과 무관하게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원형을 확인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 따라서 담장 복원계획의 경우 원지형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담장 원형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기타사항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철도 역사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등록문화재는 대상 건축물, 구조물을 중심으로 보호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화 적곡교회의 경우 단순히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있는 건축물, 구조물에 대한 가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보호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상기 6)의 내용과 같이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등록문화재의 보호구역설정 방법(대상건축물, 구조물 중심의 지정 혹은 이를 포함하는 필지 중심의 지정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봉화 적곡교회의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보호대상물(담장 등)의 가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현재 대상지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구조물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자료 및 현황 확인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 동 문화재는 2006.06.19. 등록문화재 제257호로 기 등록된 문화재로 등록 구역은 예배당과 명동서숙 등 당해 문화재의 건축면적에 한정되어 있다. 최근 소유주가 동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건립 초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교회 마당을 중심으로 등록 구역을 확대 신청한 상황이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전언(傳言) 및 소유자 측에서 제시한 관련자료(사진)에 의하면 1909년 최초 건립 당시에는 예배당 외곽의 네 면에 걸쳐 기와담장이 존재하였고 또 중앙의 강론대를 중심으로 남·서·북측의 담장에 각 1개소의 협문을 설치하여 목사와 남·여 신도들의 출입을 달리 하는 등의 매우 독특한 건축형태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립 초기 예배당을 둘러싼 담장과 협문은 해방이후 어느 시기에 훼손되어 소실된 것으로 보여 지나 정확한 시기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또한, 소유자가 주장하는 협문의 문짝 일부는 확인되었으나 담장의 원형과 규모를 알 수 있는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관련자료(사진)를 통해 담장이 훼손되기 전·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담장이 훼손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마당을 포함한 주변지형에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건립 초기의 모습으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록문화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 범위를 당해 문화재에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사례에서와 같이 초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등록 범위를 확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천곡교회의 초기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지가 확고하나 1909년 건립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마당을 포함한 주변지형에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유자의 주장대로 건립 당시 축조되었던 보이는 예배당의 담장은 대지의 경계를 구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부속시설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만 현지점에서 담장의 규모 및 공간적 범위를 알 수 없어 초기 모습으로의 회복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므로 등록범위 확대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7)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안건번호 근대 2016-06-19

## 19.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등록문화재 등록구역 확대

### 가. 제안사항

-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등록문화재 제330호 「봉화 천곡교회」(2007.07.03. 등록)의 등록구역 확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등록문화재 제330호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의 등록구역 확대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등록문화재 등록구역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유산국민신탁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등록문화재 제330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10
  - 소유자 : 문화재청
  - 신청면적 : 455.21㎡ (등록문화재 포함 총면적 660㎡)
    - ※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등록문화재 등록현황
      - 건립시기 : 1943년
      - 등록일자 : 2007. 7. 3.
      - 등록현황 : 2동, 연면적 345.16㎡[주건물(2층) 332.76㎡, 창고(1층) 12.4㎡]
- (3) 신청내용 :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등록문화재 등록구역 확대
- (4) 신청사유 : 축대 안전시설 확보, 편의시설 확충 등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함
  - 활용계획 : 축대 안전시설 확보,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확충 등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11.10.)>

- 문화재위원 ○○○
  - 지금까지 등록문화재의 등록범위를 해당건물에만 국한해 왔던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만드는 것으로, 소유자인 문화재청의 이러한 전례가 모든 소유주에게 등록범위 확대를 통한 국가예산 수혜의 기대감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현장을 점검한 결과, 축대의 보강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한 사항으

로 별도의 등록확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아울러 일본식 가옥을 “고급 게스트 하우스”로 계획하고 내부의 쾌적함을 위하여 별도의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가옥 전체의 배치와 분위기를 헤아리지 않고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게 일본인 가옥(내거티브 헤리티지)을 문화재로 등록한 목적을 다시 한 번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함.
- 문화재전문위원 ○○○
  - 부산 수정동 일본식가옥 후면 축대부분의 경우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축대 붕괴의 경우 문화재에 직접적인 피해 위험이 있어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임.
  - 현재 부산 수정동 일본식가옥의 경우 이바구길 골목길 여행의 문화유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역사문화체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향후 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관광객 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구역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문화재전문위원 ○○○
  - 당해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원형(정원) 회복과 안전시설(축대) 및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확충을 위해 등록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에 대한 유사사례가 없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보류
  - 등록문화재 진정성 및 활용성을 고려한 등록구역 확대 기준안 마련 후 재검토함
- 출석 7명, 보류 7명

## 문화재 등록구역 확대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부산 수정동 일본식가옥 (구) 정란각

2. 용 도 : (현) 숙박, 체험시설 (원) 주거시설

3. 소 제 지 : 부산시 동구 수정동 1010

4. 소 유 자 : 문화재청(관리단체 : 문화유산국민신탁)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일식목조
- 준 공 일 : 1943년
- 건축면적 : 204.79㎡ (연면적 332.76㎡ : 1층(204.79㎡), 2층(127.97㎡))
- 신청면적 : 455.21㎡

#### 6. 조사자 의견(2016.11.11)

##### <문화재위원 ○○○>

- 본 건물, 이미 등록되어 있는 등록문화재 제330호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정란각)의 부속대지까지 등록범위를 확대하여 부실한 축대의 보강공사와 뒤편 마당에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데에 소유자(문화재청)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 현장을 점검한 결과, 축대의 보강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한 사항으로 별도의 등록확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뒤편 마당 부속시설 신축도 별도의 등록범위 확대 조치 없이도 예산반영은 가능한 것이라 여겨져 등록범위 확대는 불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물, 지금까지 등록문화재의 등록범위를 해당건물에만 국한해 왔던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만드는 것으로, 소유자인 문화재청의 이러한 전례가 모든 소유주에게 등록범위 확대를 통한 국가예산 수혜의 기대감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아울러 일본식 가옥을 “고급 게스트 하우스”로 계획하고 내부의 쾌적함을 위하여 별도의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가옥 전체의 배치와 분위기를 헤아리지 않고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게 일본인 가옥(내거티브 헤리티지)을 문화재로 등록한 목적을 다시 한 번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 현재의 실내환경으로도 충분히 쾌적한 활용을 할 수 있으며, 건물신축 보다는 주변환경 정리와 조정정비(반드시 일본식 정원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를 통하여 내실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건물경계선에서 대지 경계선까지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를 신청함.

2) 현황 및 주요 특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현 및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성공적 모델 구축(MOU 체결, 2014 6. 24)
- 부산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이바구길 이바구충전소(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하되 테마 카페 및 차별화 된 고급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 있음.

3)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 환경

- 현재 부산 동구청에서 운영 중인 부산역에서 망양로까지 세월과 사람이 남긴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이바구길 골목길 여행의 문화유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일제강점기 부산 동구 지역 중심으로 수집한 생활사 유물들을 전시하는 한편, 1-3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역사문화체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4) 문화재 확대 구역 활용방안

- 1구역 : 축대 안전시설 확보
- 2구역 : 문화유산 가치증진을 위한 조경 공간 확보
- 3구역 : 관광객 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화장실 및 샤워시설 증축)



5) 문화재 구역확대 의견

- 1구역: 구역확대 지정

부산 수정동 일본식가옥 후면 축대부분의 경우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축대 붕괴의 경우 문화재에 직접적인 피해 위험이 있어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구역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2구역: 구역확대 지정

부산 수정동 일본식가옥 전면에 위치한 진입공간으로 당시 조경수, 조형물 등이 정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음. 따라서 부산 수정동 일본식가옥의 문화유산 가치증진을 위한 조경 공간 정리 및 확보를 위해 구역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3구역: 구역확대 지정

현재 부산 수정동 일본식가옥의 경우 이바구길 골목길 여행의 문화유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역사문화체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향후 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관광객 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구역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동 문화재는 2007.07.03. 등록문화재 제330호로 기 등록된 문화재로 등록 구역은 당해 문화재의 건축면적에 한정되어 있다. 최근 관리단체가 동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당해 문화재를 중심으로 현재의 대지 경계에 따라 등록 구역을 확대 신청한 상황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현재 당해 문화재 남쪽인 앞마당에는 조경수 일부가 식재되어 있으나 본래는 이곳을 포함하여 서측면 일대에 정원이 넓게 꾸며져 있었다고 한다. 이에, 당해 문화재의 원형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대지 경계선에 따라 앞마당 일대를 등록구역에 포함시켜 부분적으로나마 본래 정원의 모습을 찾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당해 문화재의 뒤편인 북서쪽으로는 석축이 있어 인접 대지와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석축 일부 구간에서 배부를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당해 문화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대지 경계선에 따라 서북쪽의 석축부분을 등록구역에 포함시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본래 당해 문화재의 뒤편 북동쪽에는 부속채 건물이 있었으나, 본래의 원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철거된 후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어 이 일대를 등록구역에 포함시켜 관광객 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화장실, 샤워시설 등의 서비스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여건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등록문화재의 경우 제도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등록 범위를 당해 문화재에 한정하고 있으며, 동 사례에서와 같이 당해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등록 범위를 확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당해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원형(정원) 회복과 안전시설(축대) 및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확충을 위해 등록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에 대한 유사사례가 없어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7)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안전번호 근대 2016-06-20

## 20. 「찬미가」 문화재 등록 검토

### 가. 제안사항

- 「찬미가」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찬미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6.20.)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판종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찬미가	1권	세로 17.0 × 가로 11.0(cm)	1895년	신활자본	종이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3) 추진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5. 3~10월)
    - 개신교 유물 목록화(78건), 등록 기준(안) 마련 등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등록 조사 대상 선정('16.2.2.)
    - 목록화 78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0건 선정
  -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16.6.20.)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문화재 등록 검토 회의('16.9.21.)
    - 검토의견 : 해당 본은 초판본이 아니며 추후 초판본이 향후 나올 수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6.20.)>

- ○ ○ ○ 위원
  - 감리교에서 1892년에 출판한 『찬미가』는 곡조가 없기는 하나 최초의 한글 번역 찬송가집으로서 독보적 위상을 지닌다. 현재 이 초판본 『찬

미가』는 국내에는 전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1895년에 출판된 재판본 『찬미가』를 그 대안으로 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련 인사들의 의견이다.

- 물론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재판본 『찬미가』는 초기 찬송가로서 문화계적 가치는 있다. 그러나 문헌자료의 경우, 초판본을 등록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재판본을 등록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나진규는 최근 연구에서는 “한국 최초의 찬송가집인 『찬미가』(1892) 초판본은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고, 조숙자도 “소장자나 소장처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관련 학계에서는 국내에 초판본이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본인 1895년 간행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을 등록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추후 초판본이 공개될 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 ○ ○ 연구위원

- 제작 연도나 보존 상태, 그리고 이 유물의 중요성으로 보아 충분히 문화재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 ○ ○ 교수

-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원이 보존하고 있는 <찬미가>는 보존상태가 완벽하다. <찬미가>는 서양 기독교 음악이 한국에 전래된 것이며, 서양의 악보와 악기 그리고 음악이론이 국내에 소개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한다.

○ ○ ○ ○ 교수

- 조선 말기 외국어 번역사에 참고할 만하며 특히 시가(詩歌) 부분의 번역에 참고할 만한 사료이다. 본 사료를 한국근대음악사의 문화재로 등록함이 타당하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재판본으로 등록가치 미흡
- 출석 6명, 부결 6명

붙임 : 「찬미가」 조사보고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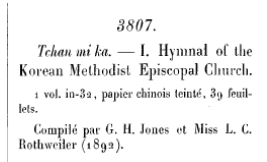
## 「찬미가」 조사보고서

1. 명 칭 : 찬미가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3. 소유자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4. 조사자 의견

<○ ○ ○ ○ 위원>

- 1) 현상
  - 대체로 온전함
- 2) 내용 및 특징
  - 우리나라 최초로 찬송가집인 『찬미가(Tchan mi ka)』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이자 배제학당의 교사인 존스(George H. Jones; 조원시, 1867~1919)와 이화학당의 교사인 로드와일러(Louis G. Rothweiler; 노웰나, 1853~1921)가 편찬하고,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도움으로 1892년에 출판되었다. 이 『찬미가』는 곡조가 없는 가사집 찬송가이며, 모두 27편이 수록된 감리교 전용 찬송가집이다. 특히 이 『찬미가』에는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의 학생들이 작사한 한국 창작찬송 3편이 수록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현재 초판본은 공개되어 전하는 것이 없으므로 초판본에 대한 개략은 1895년에 출판된 재판본의 서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서문에서는 “한국 최초의 찬송가인 『찬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간행된 첫 번째 찬송가이다. 27편의 번역 찬송을 수록하고 있는 불완전한 찬송가 소책자이며, 1892년에 발행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 서문 외에 초판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구한말 프랑스공사관 통역관이었던 모리스 쿠우랑(Maurice Courant, 1865~1935)이 편찬한 『조선 서지(Bibliographie Coréenne)』(제1-3책은 1894~1896년, 보유권 1책은 1901년에 파리에서 출판)의 보유권이 있다. 곧 이 책의 제8부 교문부(敎門部) 4장 야소교류(耶穌教類)에는 『찬미가』 초판본과 재판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함께 기술해 놓았다.

<초판본(1892)>



[국역] 찬미가(Tchan mi ka). \_ I. 한국 감리교회의 찬송가.

\*1책, 32절판, 물들인 중국지, 39장. G.H.존스(Jones)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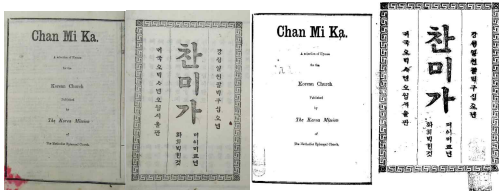
<재판본(1895)>

H. Chan mi ka. A selection of hymns for the Korean Church, published by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 vol. petit in-8; papier coréen, 66 feuillets.  
(L. O. V.)  
Au début, titre en grands caractères coréens. A la fin, titre, préface, index en anglais. 81 hymnes en coréen, de mesures diverses, adaptées à des airs indiqués en anglais pour chaque hymne. La préface est par les auteurs (1895).

[국역] II. 찬미가(Chan mi ka). 한국교회물 위 한 다양한 찬송가. 감리교 한국선교부 발행.

1책. 소8절판. 한지. 46장. 앞에는 대자로 된 한글제목. 마지막에는 제목, 서문, 영어색인이 있다. 각 찬송가마다 영어로 표시된 곡조에 맞춰 개작한 다양한 소절의 한글로 된 81곡의 찬송가. 서문은 저자의 것이다(1895).

- 재판본은 초판본이 간행된 지 3년이 지난 1895년에 “운율과 관용어의 사용이 문제가 되어 감리교 선교부의 연례회의 명에 따라” 81편의 찬송가를 수록하여 출판된 것이었다. 이후 『찬미가』는 1897년(3판)에는 90편, 1900년(5판)에는 176편, 1902년(6판)에는 205편 그리고 최종판인 제8판이 나오는 1905년까지 계속 증보되면서 출판되었다.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찬미가』는 1892년에 간행된 초판본이 아니고, 1895년에 간행된 재판본이다. 앞쪽의 표제지에는 <사진 1>에서 보듯이 가운데에 『찬미가』라는 서명이 있고, 오른쪽에는 “강성일권발행구심오년”, 왼쪽에는 “미국오백스년오월서울판”이라는 발행사항이 새로로 표시되어 있다. 서명아래에는 “미이미교년” 화회빅힌것”이라고 되어 있다. 미이미란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의 약자인 “MEM(Methodist Episcopal Mission)”을 중국어 “美以美(메이이메이)”로 표기한 것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 재판본 『찬미가』는 1895년 5월에 서울에서 출판된 책이다. 뒤쪽의 영문 Title page에는 “『Chan Mi Ka』: A selection of Hymns for the Korean Church”라고 되어 있다.
- 재판본 『찬미가』 역시 초판본을 편찬했던 존스와 로드와일러가 수정, 증보한 것이며, 1895년 1월에 열린 감리교 선교부의 연차모임에서 출판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5월에 발행된 것이다. 현재 공개되어 전하는 재판본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C18/27,古제2545호) 되어 있다.



<사진 1> 재판본 『찬미가』의 한글(앞)과 영문(뒤) 표제지(Title page)  
왼쪽(연세대 소장본), 오른쪽(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 한편 1892년 초판본과 1895년 재판본 찬미가를 모리스 꾸우랑이 『조선 서지』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찬미가』 초판본과 재판본의 대비

구분	초판본(1892년)	재판본(1895년) <sup>1)</sup>
영문서명	Tchan Mi Ka	Chan Mi Ka
종이(발행지)	중국종이([중국])	한국종이(서울)
분량	39장	46장
찬송가 수	[27편]	81편
국내소장	미발견	연세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 문헌자료
  - 민경배, 『한국교회 찬송가사』,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7.
  - 모리스 꾸우랑, 『조선 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부록, 파리, 1901.
  - 나진규, 최초의 한국찬송가집들의 번역자, 작사자들에 대한 연구1, 『음악과민족』 제50호(2015. 10).
  - 조숙자, “한국 최초의 감리교 찬송가 [찬미가] 연구”, 『장신논단』 제17집 (2001).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감리교에서 1892년에 출판한 『찬미가』는 곡조가 없기는 하나 최초의 한글 번역 찬송가집으로서 독보적 위상을 지닌다. 현재 이 초판본 『찬미가』는 국내에는 전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1895년에 출판된 재판본 『찬미가』를 그 대안으로 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련 인사들의 의견이다.
  - 물론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의 재판본 『찬미가』는 초기 찬송가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문헌자료의 경우, 초판본을 등록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1)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에는 모리스 꾸우랑이 소장하던 재판본 『찬미가』가 소장되어 있다. (청구기호: COR-1539)

제판본을 등록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나진규는 최근 연구에서는 “한국 최초의 찬송가집인 『찬미가』(1892) 초판본은 소설”된 것으로 보고 있고, 조숙자도 “소장자나 소장처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관련 학계에서는 국내에 초판본이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제판본인 1895년 간행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을 등록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추후 초판본이 공개될 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5) 종합의견

- 개신교(감리교)의 초기 찬송가로 문화제적 가치가 있음. 다만 초판본이 아니므로 논의가 필요함.

<○○○ 연구위원>

1) 현상

- 안쪽 표지에 “강생 일천팔백구십오년, 찬미가, 미이미교회년화회백년것, 개국 오백스·년오월 서울판”이라고 되어 있고, 책 말미에 영문 INDEX(색인)와 PREFACE(서문)가 붙어있다.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2) 내용 및 특징

- 편역자 : George Heber Jones(趙元時, 1867-1919), Louisa C. Rothwieler(1853-1921) 공역
- 출판사 : Seoul, The Trilingual Press(三文出版社).
- 출판년도 : 1895년

[출판 경위]

- 미북감리회 한국선교부는 1892년 27곡의 번역 찬송을 비롯하여 30장의 감리교 전용 찬송가를 서울 감리교출판사에서 『찬미가』라는 이름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운율과 관용어의 사용에 문제가 있어 선교부 연례회에서 그것의 개정을 요청하였고, 선교사 존스(George Heber Jones)와 로드와일러(Louisa C. Rothwieler)가 그것의 개정판으로 1895년 총 81장의 『찬미가』를 펴냈다.

[내용 및 특징]

- 총 81장으로 이루어진 1895년 이 개정판 『찬미가』에는 언더우드 찬송가에서 13곡, 베어드부인(Annie L. A. Baird)에게서 10곡, 노블 부인(Mrs. W. A. Noble)의 것 3곡, 존스 부인(Mrs. G. H. Jones) 1곡, 무명의 한국 여인의 것 1곡(53장)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선교사가 번역한 찬송가로 이 책의 영문 서문에서도 “한국 사람들 틈에서 그들 마음 그대로 솟구치는 가락으로 노래할, 그들 자신의 찬송가 작곡 작사자들이 나와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었다.”고 하여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3) 문헌자료

- 현영제, 『한국성서찬송가100년』, 기독교문사, 1987.
- 조숙자, 『「찬송가」(1908년)연구 자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음악연구원, 1995.
- 민경배, 『한국교회 찬송가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예술출판사, 2002.

4) 기타

- 일제강점기 연희전문학교 시절부터 도서관에서 보관하여 오던 것으로 보임.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제작 연도나 보존 상태로 보아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1892년에 발행된 초판본은 아니지만, 많은 곡을 개정 증보한 1895년 제판본이고, 미이미교회 즉 미북감리회에서 사용하던 대표적인 찬미가였다.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장로교에서 사용되었던 언더우드의 『찬양가』와 함께 당시 대표적인 찬송가였으므로 교파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충분히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6) 종합의견

- 제작 연도나 보존 상태, 그리고 이 유물의 중요성으로 보아 충분히 문화재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교수>

1) 현상

-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원이 보존하고 있는 <찬미가>(1895년 발간)는 - 121년이 지났음에도- 완벽히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이 책의 표지는 붉은 색 종이였다 못글씨로 ‘讚美歌’로 기록했다. 표지를 넘기는 영어로 Chan Mi Ka: A selection of Hymns for the Korean Church. published by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로 인쇄되었다. 책의 내용은 “편집자 서문Preface”, “찬미목록” 그리고 찬송가 가사, 마지막에 “Index”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2) 내용 및 특징

- <찬미가>는 기독교의 신앙 대상인 하나님(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모음집이다. 그 내용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부르는 찬송, 기독교인의 일상생활에서 예수의 인도하심을 기원하는 신앙고백, 기독교 신앙(교리)을 노래로 배우는 찬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서, <찬미가>는 19세기 말 당시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 신앙내용(교리)과 이들이 말미암아 발전하게 된 한글을 살펴볼 수 있다.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찬미가>는 초창기 한국 기독교(개신교)의 음악문화를 살펴보게 한다.
- <찬미가>는 19세기말 미국 선교사가 소개한 기독교(개신교)의 신앙내용을 알아 보게 한다.
- <찬미가>는 책 제본의 인쇄기술을 살펴보게 한다. 그런데, 19세기 말에는 선교사들이 일본 요코하마에 소재한 인쇄소에서 책을 만들었는데, 찬미가가 어느 인쇄소에서 제본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종합: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원이 보존하고 있는 <찬미가>는 보존상태가 완벽하다. <찬미가>는 서양 기독교 음악이 한국에 전래된 것이며, 서양의 악보와 악기 그리고 음악이론이 국내에 소개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한다.

4) 보존경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 인쇄술(서양, 중국, 한국의 인쇄술 비교)
- 국어발달연구: 19세말의 한글

5) 종합의견

-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원이 보존하고 있는 <찬미가>는 보존상태가 완벽하다. <찬



미가>는 서양 기독교 음악이 한국에 전래된 것이며, 서양의 악보와 악기 그리고 음악이론이 국내에 소개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한다.

## <○○○ 교수>

- 1) 현상
  - 표지(표장)
  - 속표지(원색, 고서적의 양식과 동일한 양식, 이하 같음)
  - 목차(가나다 순, 수록순이 아닌, 목차이하 판심제(版心題)로 “찬미가”라 기록되어 있고, 판심에 장차(張次)가 제일부터 사십사까지 기록되어 있음)
  - 악곡 (모두 81곡, 이상 세로쓰기)
  - Index(영문 가로쓰기, 판심제로 “찬미가”라 인쇄, 장차는 없음, 이하 같음)
  - Preface(편찬자 서문, 영문)
  - 영문 속표지 (이상 가로쓰기)
  - 표지부터 속지까지 낙질이 없고, 보존 상태 매우 좋음.
  - 사찰안정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나 일본에서 인쇄한 것임.
- 2) 내용 및 특징
  - 한국 개신교사에서 처음으로 예배곡집을 편찬한 주체는 감리교 한국선교회였다. 이 책의 서문에 의하면, 감리교는 미국에서 조성한 한국어전도회 기금으로 1892년에 처음으로 27곡의 노랫말을 수록한 『찬미가』라는 이름의 소재자를 간행했다. 이후 감리교는 장로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배곡집을 편찬하기로 합의하고 준비했으나, 장로교는 1894년에 『찬양가』라는 악보집을 단독으로 간행했다. 이에 감리교는 1895년 연례회에서 장로교와 구별되는 예배곡집을 별도로 편찬하기로 하고 1892년에 간행했던 소재자를 저본으로 하여 이 책을 출판했다.
- 3) 문헌자료
  - 문옥배, 『한국교회음악수용사』 서울: 예술, 2004(2판).
  - 문옥배, 『한국근대 교회음악 사료연구』 서울: 예술, 2005.
  - 조숙자 외, 『찬송가학』 서울: 장로교신학대학출판부, 1988.
  - 조숙자, 『한국개신교찬송가연구』 서울: 장로교신학대학출판부, 2003.
  - 홍정수, 『한국 교회음악 사료집』 제1권,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교교회음악연구원, 1992.
  - 홍정수, 『한국 교회음악 사료집』 제2권,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교교회음악연구원, 1993.
- 4) 기타
  - 현재 찬송가는 개신교 예배곡집의 범칭이다. 그러나 이 명칭은 조선 말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교파보다 선교사업 및 예배악곡 활용에서 먼저 성과를 거뒀던 두 교파, 즉 감리교와 장로교의 특정 예배곡집명에 불과했다. 한국근대음악사의 전개에서 기독교음악사의 궤적 중에는 다양한 교파의 개신교 예배곡집들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에는 본 유품 외에도 문화제로 지정할 만한 간행물이 더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유품명은 “찬송가”라는 특정 교파에 한정된 명칭은 피해야 할 것이다. 본 사료의 유품명은 전후로 간행된 개신교 노래책의 간행 주체, 간행 시기, 용도, 형식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있게 명명되어야 한다. 이에 본 사료의 명칭은 “**조선말기 감리교 예배곡집 가사판**”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책의 서문에 의하면 당시 교회 주변에서 불리던 여러 노래들 가운데 복음가와 예배의식에 필요한 노래들 중 부르기 좋은 노래 81곡을 선택하여 간행했다고 한다. 즉, 이 책은 예배에 필요한 노래를 “복음가”와 “의식가”로 범주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와 같은 개신교 기록물들에 의하면, 1899년 무렵까지 의식가는 완비되지 못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예배용 노래가 완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곡집에 필수로 수록해야 하는 노래의 범주를 구분했던 점은 개신교 노래책의 진보를 주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1892년 이전 즉, 한국에서 예배곡집이 간행되기 전에는 중국어 찬송가의 번역노래말이나<sup>2)</sup> 서양 찬송가의 번역 노래말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번역어가 원문보다 거칠어 가창 시 뜻이 통하지 않아 노래에 담긴 교리의 체득과 이해하기 곤란했다. 이 책의 편찬자 Geo, Heber Jones와 Louise, C. Rothweiler는 1892년에 감리교에서 편찬된 소재자 『찬미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편으로는 1894년에 간행된 장로교의 『찬양가』를 참고하여 당시로서는 최선의 대안으로서 이 책을 간행했다.
  - 다만, 이 책은 가장의 서양의 음계제로 된 음악보다는 노랫말의 전달을 중시했다. 감리교 선교사로서 이 책을 간행한 주요 인물 중 하나였던 Jones는 <Korean Repository>라는 정기간행물을 창간했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예배악곡 가창에서 4가지 음악적 문제, 즉 서양음악의 음정, 박자, 강세, 리듬형식에 취약하다고 보고하고 있고, 박자만 맞아도 충분하다고 이해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이 책의 편찬자들은 노랫말만으로 간행됨으로써 당시 한국 개신교 교회의 가장 현상을 적중하고자 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조선말 기독교 교회의 가장 현실을 가장 충실히 반영했다 할 것이다.
  - 편찬자들은 예배악곡의 영문 번역에 공을 들였는데, 예를들면 “God → 하느님”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영어 단어를 여호와, 주님 등 여러 용어로 번역하는 대신 주요 교회용어는 일관성 있는 번역어로 번역했다. 다만, 당시로서는 교리에 걸맞는 한국어 어휘에 선택에 있어서 감리교 선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 구성원을 초월하여 번역에 참여했다. 언더우드, 베어드 여사, 노블 여사, 존스 여사 등이 다수의 선교사들이 번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구전으로 전하는 번역노랫말과 한국인 여성 등도 노랫말 번역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기독교 음악사에서 예배용 노래의 번역의 문제를 처음으로 문제삼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1905년에 같은 이름의 다른 간행물이 있었다. 예를들면 남감리교파에 속했던 윤지호의 『찬미가』와 성공회의 『찬미가』가 그것인데, 이 둘은 이 책과 무관하다.)
  - 이 책은 노랫말을 적은 가사판만으로 간행되었고 약 10여년 간 8판까지 개정되며 널리 사용되었다. 가사판만으로 중판을 지속적으로 낸 경우는 이 사례가 유일하다. 다른 예배곡집은 드물기는 하지만 악보판을 간헐적으로 간행하기 때문이다. 이를 한국음악사의 가장 관행에 의해 해석해보면, 감리교는 선교 과정 중에 한국이라는 지역의 가장관행을 유연하게 수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들면 『찬미가』 제2판에는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학생들의 노랫말을 추가했다.<sup>4)</sup>

2) F. S. Miller, Early Korean Hymnology, *The Korean Mission Field* (1939, Sep.) Vol. XXXVI, No.9 p. 189.

3) Korean hymns—an observation *Korean Repository*, 1897, pp. 184-86.

이러한 흐름은 초판부터 번역자의 구성에서 일관성있게 확인되므로, 개신교 여러 계파 가운데 한국의 사정을 유연하게 수용한 첫 간행물로서 이 책이 주목된다.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이 책은 조선 말기 외국어 번역사에 참고할 만하다. 특히 시가(詩歌) 부분의 번역에 참고할만한 사료이다.

7) 종합의견

- 본 사료를 한국근대음악사의 문화재로 등록함이 가함.

4) <대한그리스도인 회보>, 1897. 3. 31.

안전번호 근대 2016-06-21

**21. 「찬송가」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찬송가」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찬송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4.28.)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판종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찬송가	1권	세로 15.1 × 가로 11.5(cm)	1908년	신활자본	종이 (양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3) 추진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5. 3~10월)
  - 개신교 유물 목록화(78건), 등록 기준(안) 마련 등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등록 조사 대상 선정('16.2.2.)
  - 목록화 78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0건 선정
-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16.4.28.)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문화재 등록 검토 회의('16.9.21.)
  - 검토의견 : 통합 찬송가로 대중성이 있음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4.28.)>

- ○ ○ ○ 위원
  - 1908년에 발행된 합동찬송가인 『찬송가』는 먼저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 차원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개신교 찬송가의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다. 이 『찬송가』는 이후 감리교의 『신명찬송가』(1931)와 장로교

의 『신편찬송가』(1935)로 분리되기 전까지 20여 년간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의 합동찬송가였다. 또 1983년에 발행된 『통일찬송가(unity Hymnal)』의 내용도 1/2이상이 이 『찬송가』에서 가져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이 하나의 찬미를 부를 수 있게 된 현행 찬송가의 모태가 되는 셈이다.

- 아울러 서양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한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합동찬송가인 1908년 발행의 초판본 『찬송가』는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 ○ 연구위원

- 한국 최초의 교파연합 찬송가일 뿐만 아니라 숭실대 박물관 소장본은 6만권을 출판한 초판본 중 한 권으로,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며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 ○ ○ 교수

- 개신교에서는 ‘찬송가’도 성경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 책은 우리나라 개신교의 찬송가로는 처음으로 교파연합으로 발간된 것이다. 그간 여러 교파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던 여러 찬송가들을 집대성하여 주제에 따라 구분 정리하는 한편, 부분적으로나마 찬송의 토착화를 위한 과감한 시도 역시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 또한 이 책의 가사가 문학적으로도 인정받아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와 깊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과약하게 된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 ○ 교수

- 1908년 간행된 예배곡집이 중관을 거듭하면서 “찬송가”를 개신교 예배악곡들의 범칭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찬송가」의 초판본은 한국개신교 한국가창사에서 예배곡집의 확장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 할 것이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문화재 등록 명칭 : 찬송가(UNION HYMNAL))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붙임 : 「찬송가」 조사보고서 1부.

**「찬송가」 조사보고서**

**1. 명 칭 :** 찬송가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3. 소 유 자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4. 조사자 의견**

<○ ○ ○ ○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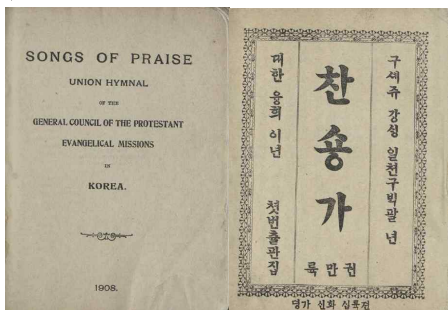
1) 현상

- 대체로 온전함.

2) 내용 및 특징

- 『찬송가』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합동찬송가로서 장로교의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인 안애리(Mrs. 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와 밀로아(閔老雅, F. S. Miller, 1866~1952)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의 방거(房巨, D. A. Bunker, 1853~1932) 선교사 등이 편집위원이 되어 만든 262편의 무곡조 찬송가이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합동찬송가인 이 『찬송가』는 1908년에 요코하마(橫濱)의 후쿠인(福音) 인쇄소에서 발행된 소형본(小形本)이다.

-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찬송가는 감리교 선교사인 존스(G. H. Jones)와 로드와 일러(L. C. Rothweiler)가 편찬하여 이보다 16년 전인 1892년에 감리교 선교부에서 발행한 『찬미가』(무곡조)이다. 이어 1894년에는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곡조가 있는 찬송가인 『찬양가』를 편찬 발행하였으나 장로교와 감리교의 공동 찬송가로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그 이듬해에는 감리교는 『찬미가』, 장로교는 『찬성시』를 따로 발행함으로써 이후 세 종류의 찬송가는 합동찬송가인 『찬송가』가 나오기 전까지 교파와 지역에 따라 각각 사용되었다. 이들 초기의 찬송가들은 모두 19세기 미국의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장로교회에서 널리 사용하던 찬송가 『The New Laudes Domini』를 원전으로 사용하였다.



<사진 1> 「찬송가」의 한글과 영문 표제지(Title page)

- 이후 합동찬송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의 빛이 한국에 임한 후에 감리회에서는 『찬미가』를 노래하고, 장로회에서는 『찬성시』와 『찬양가』를 불렀다. 양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한 곳에서 예배를 볼 기회를 만나면, 찬송하는 노래를 피차에 같이 부르지 못하여 주를 찬송하는데 서로 즐거움이 온전치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기도를 주시어 두 회의 노래를 합하여 한 책을 만들어 이름을 『찬송가』라 하였다. 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 아름다운 찬송이로다.”

- 드디어 1902년에 한국장로교공의회(韓國長老教公議會)가 “장로교에서는 『찬성시』를 공식 찬송가로 채택하고, 다른 교파의 찬송가 합동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한 뒤에 합동찬송가를 편성하기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양 교단이 선임한 편집 책임자는 한국어를 잘 하고 음악과 시문에도 조예가 깊은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인 안애리와 민로아 선교사 그리고 방거 선교사였다.
- 안애리(베어드 여사)와 민로아는 가사의 번역과 수정작업을 하였으며, 방거는 가사와 곡조의 악센트가 맞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큰 틀에서의 업무방침은 1931년에 발행된 『신당 찬송가』의 서문의 “1905년에 장로교와 감리교의 합동 운동이 시작되어…개정할 것은 개정하고…말은 존경어로 구조가 명확하며, 의사가 정당하고, 교리에 적절한 것만 쓰기로 한다.”는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안애리(베어드 여사)는 우리나라 개신교 찬송가의 형성과 초기 교회의 신앙형성에 가장 공헌이 많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 이 『찬송가』는 이전에 발행된 장로교의 『찬성시』와 감리교의 『찬미가』 그리고 언더우드의 『찬양가』를 통합하여 만든 것이나 대부분 『찬성시』에서 채택되었다. 이렇게 “한국교회 대세의 찬송가는 언더우드의 『찬양가』나 감리교의 『찬미가』가 대개는 그 난해성 때문에 제외되었고, 베어드부인의 흔적이 아로 새겨진 『찬성시』에서 줄기를 찾아, 그것이 『찬송가』로 이어지게”(이양호)된 것이다.
- 송실대 소장의 『찬송가』는 붉은 색의 천 표지에 『찬송가』라는 표제가 세로로 찍혀있다. 표지를 넘기면 이전 소장자인 「式笑」, 「吳漢根印」 등 두 개의 인장이 오른 쪽 아래 부분에 찍혀 있다. 표제지의 가운데에는 세로로 『찬송가』라는 서명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구세주 강성 일천구백팔 년”, 왼쪽에는 “대한 율회 이년 첫번 출판집”과 같이 이 책이 1908년에 발행된 초판본임을 알려주고 있다. 가운데 아래로는 이 책의 발행부수와 가격에 대해 “륙만원”, “당가 신화 신탁전”이라는 가로표기가 있다.
- 다음으로는 서문에 이어 「문태 목록」과 「찬송가 목록」이 있는데, 그 배열순서는 “아하가카”순 배열이다. 이 배열은 1925년에 발행된 제 4판부터 “가나다”순으로 바뀌게 된다. 이어 본문인 찬송가와 십계명 그리고 영문서명(『SONGS OF PRAISE』)과 발행주체(Union Hymnal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가 포함된 영문 표제지(Title page)

가 있다. 영문 표제지 뒷면에는 역시 영문으로 “일본 요코하마의 후쿠인 출판사에서 인쇄되었다.”는 영문이 있다. 다음에는 영문색인인 「TOPICAL INDEX」와 「INDEX」가 있는데 영문페이지는 모두 12페이지이다.

- 이 『찬송가』는 서문과 목차가 1-22페이지, 찬송가는 1-268페이지, 십계명은 271-274페이지, 영문색인 등은 모두 xii(12)페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실대 소장본은 269-270페이지에 해당되는 1장이 결락되어 있다. 이 『찬송가』는 곡조는 없으나 영문가사 첫줄과 곡조이름(Tune name) 그리고 그 곡조가 수록된 미국 찬송가명과 해당 장수를 표기해놓아 선교사들이 원래의 곡조를 찾아서 신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선교사의 한글 창작찬송은 32편인데, 이는 모두 장로교 찬송가인 『찬성시』에서 옮겨 놓은 것이다.

### 3) 문헌자료

- 문옥배, 『한국교회음악사:한국찬송가 100년사』, 예술, 2011.
- 오선영, “찬송가의 번역과 근대 초기 시가의 변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42집, 2009.
- 오소운, “한국 최초의 개신교 통일 찬송가 『찬송가』(1908년)연구”, 『한국 개신교 찬송가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이양호, “한국교회 찬송가의 역사”, 『기독교사상』 41(8), 1997.
- 조숙자, “한국 최초의 감리교 찬송가 찬미가 연구”, 『장신논단』 17집, 2001.
- 홍정수, “찬송가의 초기 정착과정”, 『장신논단』 11집, 1995.
- 정경자, “한국교회 찬송가 변천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음악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1908년에 발행된 합동찬송가인 『찬송가』는 먼저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 차원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개신교 찬송가의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다. 이 『찬송가』는 이후 감리교의 『신당찬송가』(1931)와 장로교의 『신원찬송가』(1935)로 분리되기 전까지 20여 년간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의 합동찬송가였다. 또 1983년에 발행된 『통일찬송가(unity Hymnal)』의 내용도 ⅓이상 이 『찬송가』에서 가져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이 하나의 찬미를 부를 수 있게 된 현행 찬송가의 모태가 되는 셈이다.
- 아울러 서양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한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합동찬송가인 1908년 발행의 초판본 『찬송가』는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종합의견

-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합동찬송가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 연구위원>

### 1) 현상

- 붉은 색 포의 양장한 것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 2) 내용 및 특징

- 『찬송가』, 15.1×11.5(cm), 274면(262편 가사 수록)
- 발행 : 조선예수교서회
- 인쇄 : 요코하마(横浜) : The Fukuin Printing Co. Ltd
- 발행년도 : 1908년

- [출판 경위] 이 찬송가는 내한하여 선교하던 개신교 교파들이 교파별로 따로 따로 사용하던 찬송가를 하나로 합동 편집하여 1908년에 출판한 최초의 교파연합 찬송가이다.
- 한국에 선교하던 미북장로회 선교부, 미남장로회 선교부, 호주장로회 선교부, 캐나다장로회 선교부, 미북감리회 선교부, 미남감리회 선교부는 1905년 9월 제한 개신교선교부연합공의회를 조직하고, 협동사업의 하나로 연합 찬송가집 편찬을 결의하였다. 그 후 공의회 산하에 찬송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로교의 베어드 부인(安愛理, Mrs. 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과 밀러(閔老雅, F. S. Miller, 1866-1952), 감리교의 벙커(D. A. Bunker, 1853~1932)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출판을 준비했다. 인쇄비는 장로교 감리교 양 교파에서 분담하고, 1908년 5월 이전에 편집이 끝나 일본에 요코하마에 있던 복음인쇄소(The Fukuin Printing Co. Ltd)에 원고를 넘겼으나 인쇄소 건물의 화재로 출판을 약간 지연되었지만, 그해 여름에 초판 6만권을 인쇄하여 보급하였다.
- [내용 및 특징]
  - 악보 없이 262곡의 가사만 수록했고, 가사 분문의 뒷면에 알파벳으로 찬송가 번호를 기록하고 영문 제목을 병기했다. 수록된 곡들은 장로교의 『찬성시』(1905)에서 142곡, 감리교의 『찬미가』(1905)에서 『찬성시』(1905)에 수록되지 않은 87곡의 가사를 수정하여 실었고, 미국 부흥회 노래집인 Gospel Hymns Complete(I. D. Sankey, J. McGranahan & G. C. Stebbins ed., 1894)에서 새롭게 번역하여 실은 것도 있다.
  - 본문 뒤에 십계명을 수록했고 그 뒤에 영문 속표지와 영문 목차를 수록했다. 표지는 천으로 되었다. 현대 찬송의 원본적 형태로, 오늘날 익숙한 곡조나 가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또 우리 고유의 가락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 찬송도 6장이 포함되어 있다.

3) 문헌자료

- 한영제, 『한국성서찬송가100년』, 기독교문사, 1987.
- 조숙자, 『「찬송가」(1908년)연구 자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음악연구원, 1995.
- 민경배, 『한국교회 찬송가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예술출판사, 2002.

4) 기타

- 김양선(金良善) 목사가 해방 전 북한 지역에서 수집하여 해방 직후 아내 한필려 여사가 월남할 때 옮겨와 한국전쟁 때 일시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에 옮겨져 보관되다가 1960년에 되찾아 1967년 숭실대학교 사학과의 교수 있을 때 기증함.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찬송가』(1908년)는 한국 최초의 교파연합 찬송가일뿐만 아니라 숭실대 박물관 소장본은 6만권을 출판한 초판본 중 한 권으로,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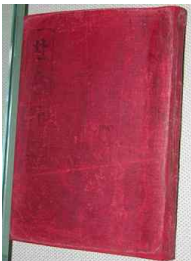
6) 종합의견

- 문화재 등록 가치 있음.

<○○○ 교수>

1) 현상

- 숭실본의 표지(하단 좌측)는 붉은 색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제목은 글



씨가 희미해졌으나 알아볼 수 있다. 속표지(하단 중앙) 역시 온전하며, 내부(하단 우측)도 양호한 편이다.



2) 내용 및 특징

- 『찬송가』의 원 제목은 『찬송가』(Songs of Praise Union Hymnal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of Korea)로,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출간한 찬송가이다.
- 1902년 이후 장로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찬성시』를 사용하면서, 『찬미가』를 사용하는 감리교 등, 교파간의 분화성을 띄고 있는 찬송가를 통일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통합공의회찬송가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장로교의 베어드 부인(安愛理, Mrs. Annie Laurie Adams Baird)과 밀러(閔老雅, F. S. Miller) 그리고 감리교의 벙커(D. A. Bunker)가 위원으로 활동하여 총 262장의 『찬송가』로 결실을 보게 되어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교사업에서 교파연합활동의 가능성이 열렸다.
- 이 찬송가는 처음 출판하던 해에만 6만부를 발행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이전의 성서 표지들과 달리 중앙부 제목 밑에 가로쓰기로 “륙만권”이라 표기되고 좌측 하단에 세로쓰기로 “첫번출판집”이라 기재되어 있다. 악보 없이 가사만 수록하고 가사 분문의 뒷면에 알파벳으로 찬송가의 번호를 기록하며 영문 제목을 함

께 기록하였다. 찬송가집의 본문 뒤에는 '십계명'을 수록하고 그 뒤에는 영문 속표지와 영문 목차를 수록하였다. 262곡의 찬송은 '찬송합과 예배합', '예수그리스도', '예수의 탄생하심' 등 그 내용을 20부분의 주제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는데,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곡조나 가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가사가 세련되어 오늘날 찬송의 원본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가락으로 부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단 찬송도 여섯 장이 있다. 이들 찬송은 인도자가 먼저 한 줄을 노래하면 회중이 그 말과 곡을 반복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가창 방식도 활용하여 친근감을 더 하였다.

### 3) 문헌자료

- 한영제 편, 『한국성서 찬송가 100년』 기독교문사 1992.
- 김성대, “한국개신교회 공인찬송가의 토착화” 『부산장신논총』 제1호(2001.12)
- 문옥배, 『한국찬송가 100년사』 예술, 2002.
- 문성모, “초기 찬송가에 관한 연구,” 『신학과 문화』 제 14집, 2005. 5.

### 4) 기타

- 개신교에서는 '찬송가'도 성경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 책은 우리나라 개신교의 찬송가로는 처음으로 교과연함으로 발간된 것이다. 그간 여러 교과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던 여러 찬송가들을 집대성하여 주제에 따라 구분 정리하는 한편, 부분적으로나마 찬송의 토착화를 위한 과감한 시도 역시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 또한 이 책의 가사가 문학적으로도 인정받아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와 깊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등록문화제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제 가치 있음

## <○○○ 교수>

### 1) 현상

- 표지, 내지, 속표지, 서문, 문제목록, 찬송가목록
- 노래 가사 (이상 서문(1쪽)부터 267쪽까지 총 262곡, 278쪽 공란, 279-80쪽 낙장)
- 십계명 (이상 한글 세로쓰기, 271쪽-274쪽)
- Index(영문)
- Topical Index
- 출판서지
- 영어표지 (이상 영문 가로쓰기, 로마자 페이지 표지부터 Index까지 총 12쪽)
- 보존 상태 좋지만 1장(2쪽)이 제거되어 있음 - 수록 내용의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 즉 악곡과 십계명의 경계에 있는 279쪽과 280쪽. 이후로 페이지는 이어지는데 해당 쪽은 낙장임. 이 두 페이지에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이 인쇄되었거나 공란으로서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제본될 때 제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2) 내용 및 특징

- 이 책은 가사본 초판으로 모두 262곡이 실려 있고 십계명도 첨부되어 있다. 일본 후쿠인 출판사에서 인쇄되었고, 찬송가위원회에 의해 편찬되었고 경성의 대한예수교서회에서 발행되었다. 이 책은 감리교와 장로교의 간행물들 즉, 『찬미가』, 『찬양가』, 『찬성시』를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초기 한국 개신교 예배곡집은 교과 간 차이뿐만 아니라 교과 내의 계과 간의 차이를 반영했다. 1892년 감리교에서 한국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예배곡집으로 사용할 소재를 간행한 이후 각 교과와 계과를 막론하고 다양한 예배곡집을 출간했다. 한국어 예배곡집은 예배에 필요한 노래는 물론이고 한글교육, 서양음악에 대한 교육에 기여했다.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감리교를 비롯하여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성결교 등이 앞다투어 예배곡집 간행했다.
- 여러 교과 가운데 감리교와 장로교는 일찍부터 예배곡집을 간행했지만, 각 교과 내의 계과 별로 서로 다른 예배곡집을 사용했다. 예를들면 대한제국시절까지 북감리교(혹은 美以美敎會)와 남감리교는 각각 다른 예배곡집을 사용하다가 『찬미가』 7판(1904)이 간행될때 비로소 같은 책을 사용했다. 그러나 1905년에는 남감리교에 속했던 윤치호의 『찬미가』를 간행했고 이 책이 재판되기도 했다. 한편, 장로교에서도 남장로교 이화지역에서는 『찬양가』(1895)를, 평양을 위시로 한 북장로교회에서는 『찬성시』(가사관, 1895)를 사용했는데 『찬성시』의 제9판은 악보집(1905)으로 간행될 만큼 확산되어 있었다.

### 3) 문헌자료

- 문옥배, 『한국 교회음악 수용사와 한국 찬송가 100년사』 서울: 예술, 2001.
- 문옥배, 『한국교회음악수용사』 서울: 예술, 2004(2판).
- 문옥배, 『한국근대 교회음악 사료연구』 서울: 예술, 2005.
- 조숙자 외, 『찬송가학』 서울: 장로교신학대학출판부, 1988.
- 조숙자, 『한국개신교찬송가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3.
- 홍정수, 『한국 교회음악 사료집』 제1권,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교교회음악연구원, 1992.
- 홍정수, 『한국 교회음악 사료집』 제2권,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교교회음악연구원, 1993.

### 4) 기타

- 한국근대음악사에서 기독교음악사의 궤적을 따라가면 다양한 계과의 개신교 예배곡집들이 등장한다. 현재 찬송가라는 용어는 개신교 예배곡집의 범칭으로 사용되지만 이 용어가 사용되던 초기에는 감리교와 장로교가 특정 시기에 함께 사용했던 특정 예배곡집을 한정하는 이름이었다. 실제로 초기 예배곡집의 서명(書名)은 그 자체로 특정 교파나 교과 내 계과를 상징했다. 따라서 본 유물의 예도 한국개신교사의 전개에 등장하는 주요 예배곡집이 더 있으므로 그것들을 특정 시기와 계과에 한정된 용어였던 "찬송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개신교 노래책을 유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 주제와 간행시기, 용도와 형식 등을 일관성 있게 명명해야 한다. 이에 본 사료의 명칭은 "대한제국기 연합(감리교·장로교) 예배곡집 가사관(초판)"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해방 전까지 개별 교과와 교과 내 계과 별로 예배곡집의 활용양상이 모두 달랐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일찍부터 예배곡집을 공동으로 제작하자는데 동의했다. 두 교과는 조선말기와 대한제국기,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합의한 바 있었다. 첫 번째는 두 교과가 1892년과 1894년 이전의 합의였고, 두 번째는 1905년에 대한복음주의 선교부 연합공의회에서 공동 노래책의 편찬을 결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본 합의는 결과물을 내는데까지 진행되지 못했고, 대한

제국기에 이룬 합의는 간행물로 완결되었다. 후자가 본 유물(1908년 간행)이다. 이 책은 장로교에 속했던 베어드 여사(Mrs. Baird)와 밀러(F. S. Miller), 북감리교회에 속했던 벙커(D. A. Bunker) 등이 참여하여 만든 연합본 예배곡집이기 때문에 기존에 감리교가 사용했던 예배곡집, 『찬미가』와 장로교의 『찬성시』의 표제곡들이 대량으로 수용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그대로 편집되었다.(문옥배 2004: 262-6) 따라서 한국 개신교 전파사에서 개과 간 통합이라는 문제가 노래 책에 관철된 사례로 이 책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 이 책은 1930년대 초부터 연합 예배곡집으로서 권위는 잃게 되었지만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있었다. 1931년에 감리교에서 간행한 「신경찬“송”가」(“ ” 필자, 이하 같음)와 장로교에서 출판한 「신원찬“송”가」는 「찬송가」에 수록된 노래들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서명(書名)에서도 찬“송”가라는 이름을 공유했다. 이는 곧 1908년 간행된 예배곡집이 중관을 거듭하면서 “찬송가”를 개신교 예배악곡들의 범칭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찬송가」의 조판은 한국개신교 한국가장사에서 예배곡집의 확장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 할 것이다.
- 6) 보존경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에서 1999년 소독 및 클리닝, 산성화 처리했음.
- 7) 종합의견
  - 본 사료를 한국근대음악사의 문화재로 등록함이 가함.

안건번호 근대 2016-06-22

## 22.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4.27.)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1점	전체 높이 : 8.6m, (제단화 높이 5.4m, 기단부분 높이 : 3.2m), 폭면 길이 : 약 8m	상단: 1927~ 1928년, 하단: 1938년	색대리석, 각석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15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 (3) 추진 경과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15. 3~10월)
  - 개신교 유물 78건 목록화, 등록 기준(안) 마련 등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등록 조사 대상 선정('16. 2. 2.)
  - 목록화 78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0건 선정
- 등록 검토 현장 조사 실시('16.4.27.)
- 근·현대문화유산 종교(개신교) 분야 문화재 등록 검토 회의('16.9.21.)
  - 검토의견 : 완성도 높은 현재까지 사용되는 모자이크 제단화임

###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4.27.)>

- ○ ○ ○ 위원
  - 모자이크는 조지 재크의 디자인에 따라 1927년에서 1938년에 걸쳐 제작되었다. 예수가 들고 있는 책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Ego Sum Lux Mund)'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중앙의 예수 아래에는 성모마리아를 중심으로 왼편으로 성사도요한과 성스테파노, 오른편으로 성 이사야 선지자와 성니콜라스가 묘사되어 있다. 조명에 의해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자이크벽화는 소박한 로마네스크성당에서 화려하고 아우라가 가득찬 성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서울 성공회 대성당의 모자이크 벽화는 우리나라에 성공회성당은 물론 교회건축에서 가장 완성도 높고 오래된 모자이크 벽화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
  - 특히 재료는 물론 유지관리도 매우 잘되어 원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 ○ ○ 전문위원
  - 매우 공을 들여 제작하여 아름답고 작품성이 높으며, 현재에도 이 성당의 제단화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로서는 동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제작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 ○ ○ ○ 교수
  -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자이크 제단화라는 점,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조지 재크의 작품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붙임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조사보고서 1부.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조사보고서

- 1. 명 칭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15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 3. 소유자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 4. 조사자 의견

<○○○ 위원>

- 1) 현상
  - 성공회 성당은 후건(웹스)의 만곡된 벽면에 조성된 벽화다. 성당의 모자이크벽화는 로마건축에 뿌리를 두고 있는 로마네스크건축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미술 장르라고 할 수 있다.
  - 성공회성당은 1922년 조마가(마크 트롤로프)주교의 의뢰로 건축가 아서덕슨이 설계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1926년에 회중성의 일부와 트랜셉이 지어지지 않은채 부분 준공되었다. 1926년 부분 준공 당시에는 웹스에 모자이크 벽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모자이크벽화가 완성된 것은 1936년이였다.
  - 1994년 성당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미완의 성당 복원을 추진하던 중 런던 교외의 Lexington도서관에서 보관되어 있던 원 도면이 발견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1996)
- 2) 내용 및 특징
  - 모자이크는 조지 재크의 디자인에 따라 1927년에서 1938년에 걸쳐 제작되었다. 예수가 들고 있는 책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Ego Sum Lux Mund)'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중앙의 예수 아래에는 성모마리아를 중심으로 왼편으로 성사도요한과 성스테파노, 오른편으로 성 이사야 선지자와 성니콜라스가 묘사되어 있다. 조명에 의해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자이크벽화는 소박한 로마네스크성당에서 화려하고 아우라가 가득찬 성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서울 성공회 대성당의 모자이크 벽화는 우리나라에 성공회성당은 물론 교회건축에서 가장 완성도 높고 오래된 모자이크 벽화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
  - 특히 재료는 물론 유지관리도 매우 잘 되어 원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4) 보존경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도 성공회성당에 의해 매우 잘 유지·관리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모자이크벽화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인 성공회성당의 가치와 함께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근대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공회성당은 낮시간에 주변의 직장인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어, 성공회서울대성당은 건축과 음악 그리고 성미술이 앙상블을 이루며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제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전문위원>

- 1) 현상
  - 본 모자이크는 본당의 정면 제단화로 조성되어 있다. 2단과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왼손에 성서를 들고서 오른손으로 손을 들어 축복을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이 들고 있는 성서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EGO SUM LUX MUNDI”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예수님 머리에는 둥근 후광이 있으며 좌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JC” 와 “XC”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 하단에는 가운데에 푸른 광도를 걸친 성모가 아기예수를 안고 앉아 있으며, 그 좌우에 4명의 성인이 표현되어 있는데, 각각의 인물에 이름과 함께 각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물들이 표현되어 있어, 각 성인들의 이름을 알 수 있다. 관람자가 모자이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맨 왼쪽에 그리스도교의 첫 순교자 성 스테파노(SCS STEPHANUS MAR), 이어서 복음서 저자 성 요한(SCS JOHANNES EVAN), 그리고 예언자 성 이사야(EXAIAS PROPHETA), 서울주교좌 성당의 수호성인 성 니콜라(SCS NICOLAS EPS)가 표현되어 있다.
  - 하단 아랫부분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모자이크화와 대리석 사이에 수평 띠를 두르고 고전적 라틴어 찬송인 찬양 천주송가(Te Deum)의 첫 구절이 새겨 넣었다.
- 2) 내용 및 특징
  -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의 모자이크는 서양의 비잔틴 모자이크 형식으로 조성된 제단화이다. 반원형 안에 축복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그리스도 이미지는 ‘판도라아트’라는 도상으로, 비잔틴 성당의 모자이크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 모자이크화의 설계를 맡은 조지 잭(George Jack, 1855-1932)은 미국인이었는데, 영국으로 이주하여 필립 웹(Philip Web, 1831-1915)의 런던공방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윌리엄 모리스 공방에서 가구 디자인을 하였으며 런던예술공예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영국 가톨릭 웨스트민스트 성당의 성 앤드류 채플 모자이크가 있다.
  -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작을 직접 맡았던 인물은 영국인 조시(Jorsy)로 알려져 있다. 매우 공을 들여 제작했으며 현재까지 원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원상대로 보존이 잘되어 있다.
- 3) 문헌자료
  - 『사진으로 본 대한성공회 백년』(상권: 1890-1964), 대한성공회출판부, 1991.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서울주교좌성당 제단화 모자이크화는 성당 건축 당시에 성당의 주문으로 제작되었는데 매우 공을 들여 제작하여 아름답고 작품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진취 훼손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이 성당의 제단화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
  - 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로서는 동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제작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등록문화제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 5) 보존경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이 모자이크화가 제작된 지 9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으나 아직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공인된 모자이크 전문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현재 서울주교좌대성당과 양이재(養怡齋) 건축물들과 함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물로 소개 할만하다.
- 6) 종합의견
  - 매우 공을 들여 제작하여 아름답고 작품성이 높으며, 현재에도 이 성당의 제단화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 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로서는 동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 제작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제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 교수>

- 1) 현상
  - 이 작품의 설계자 조지 잭(George Jack, 1855-1932)은 영국으로 이주하여 런던 공방에서 건축을 공부한 다음 윌리엄 모리스 공방에서 가구 디자인을 한 후 런던예술공예학교(L.C.C. Central School of Arts and Crafts)에서 교수로 재직했음. 대표 작품으로는 영국 가톨릭 웨스트민스트 성당의 성 앤드류 채플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의 작품이 국내에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
  - 현장에 방문하여 관찰한 결과 작품은 각석, 대리석/모자이크로 제작되었는데 작품상태가 양호하였음
- 2) 내용 및 특징
  - 본 모자이크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 첫째 층에는 한 손에 성서를 들고 축복을 내리고 있는 푸른 옷의 예수상이 있음. 예수가 들고 있는 성서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EGO SUM LUX MUNDI”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며, 예수상 좌우에 ‘JC’와 ‘XC’가 적혀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 중간층에는 다섯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왼쪽부터 그리스도교의 첫 순교자 성 스테파노(SCS STEPHANUS MAR), 복음서자 성 요한(SCS JOHAN-NES EVAN),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예수의 탄생과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미리 내다 본 예언자 성 이사야(EXAIAS PROPHETA), 서울주교좌 성당의 수호자인 성 니콜라(SCS NICOLAS EPS)이다. 각 인물의 표정과 손짓, 그리고 함께 그려진 물건과 동물들은 성서에서 유래함.
  - 이 제단화는 성당 건축시에 제작된 것으로, 제작시기와 작가가 알려진 작품. 매우 공을 들여 제작하여 작품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도 매우 좋음. 현재 성당 모자이크 제단화로서는 동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내적으로 이에 비견되는 모자이크 작품이 없는 만큼 문화재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윌리엄 모리스 공방에서 수학한 조지 잭(George Jack, 1855-1932)의 작품으로서 이 작품은 영국 가톨릭 웨스트민스트 성당의 성 앤드류 채플 모자이크와 함께 그의 대표작으로 평가됨, 그는 두 번씩이나 내한해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이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작품이후 모자이크화가 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한국 유일의 본격적인 모자이크 작품”(이연호)로 평가된다. 그리스도를 시리아형의 검고 깊은 모발로 그린 것이나 오른손

두 손가락을 모은 '판토 그라토'형의 포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준다. 이런 도상은 로마시대의 어린 양을 어깨에 맨 목동으로서의 그리스도 이미지와 비교하면 대조를 이룬다.

- 국내에서 보기 드문 '판토 그라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점과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자이크 제단화라는 점, 그리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조지 잭의 작품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사료됨,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대는 상태가 괜찮으나 모자이크 제단화가 제작된지 1백여년이 흐른 것이므로 향후 보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각석이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경우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작품관리에 보존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
- 교회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작품컨디션 리포트를 받아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지원이 되어야할지 정보교환이 요망됨

5) 종합의견

- 국내에서는 희귀한 모자이크 제단화로 작품상태가 양호하고 작품으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평가됨,

## 보 고 사 항

23. 사적 관련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 사적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서울 대한의원 (사적248)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장	<p><b>[내부 목재계단 보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1 (당해문화재)</li> <li>○ 허가내용 : 내부 목재계단 보수 - 1층 내부 목재계단 2개소 (동편10.51㎡, 서편10.51㎡)</li> <li>○허가기간: 2016.12.21~2017.02.28</li> <li>○허가조건 -교체 신설하고자 하는 목부재 범위는 부식(부후)에 의한 경우로 한정함 -교체되는 신부재는 교체 전 원형의 부재와 같은 수종으로 하며, 결구, 이음, 가공 마감기법 또한 교체 전 원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수 하도록 함 -추가로 새로이 보강되는 구조재(보, 기둥)는 기존 계단과의 의도적인 이음 또는 결구를 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여건에 따라 등보강재가 철거 되더라도 계단의 기존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역성이 담보되는 방법으로 보수하도록 함 -보수 사업 계획 상으로는 보강 기둥의 지점이 각 계단 당 각 1지점인 것으로 보이는 바,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을 것</li> </ul>	조건부 허가	'16.11.18

			<p>으로 판단되므로 2지점 이상이 확보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전문가(근대문화재 건축분야, 구조분야)로 구성된 자문단을 자체 편성하고 위 조건 및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사업 추진하도록 함</li> <li>-동 사업은 당해 문화재를 보수하는 유형이므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체(설계-문화재실측설계업, 시공-문화재보수업체)가 사업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등 적법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함</li> </ul>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사적253)	서울 중구	서울시 중구청장	<p><b>[행사용 경관조명 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15-1</li> <li>○허가내용 : 행사용 경관조명 시설 및 운용 - 조명 : 13EA (진원:무소음 자가발전기) - 스탠드 거치형 : 4EA - 그라운드자립형 : 9EA - 조명컨트롤 부스 : 캐노피 텐트 1EA</li> <li>○허가조건 - 사업 시행 주체는 정동야행 행사와 동 경관조명 시설 운용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구 러시아공사관 주변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li> <li>○허가기간 : 2016.10.28~2016.10.29</li> </ul>	조건부 허가	'16.10.20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상가 (등록622)	서울 중구	홍국생명보험(주)	<p><b>[등록문화재 외관 보수복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71-1</li> <li>○신고내용 : 문화재 외관 보수 - 외벽 보수·복원 · 페인트 마감, 시멘트미장 → 붉은벽돌 마감</li> </ul>	조건부 신고 접수	'16.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창조 원형복원</li> <li>· 스탠레스 커튼월, 벽돌조적, 판넬</li> <li>→ 오르내리장 등 원형복원</li> </ul> <p>○접수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의 구조적인 안정성 여부와 고증에 따른 원형복원 및 보수정비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확인과 자문을 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조 및 근대건축분야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후 자문을 들어 사업 시행하도록 함</li> </ul>		
--	--	--	---	--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7명, 원안접수 7명